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748-10

www.mogef.go.kr

2020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여성가족부

차 례

1 Chapter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

제1절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3
1. 기본계획의 의의 ····· 3
2. 주요 내용 ····· 4

제2절 2020년도 양성평등정책 주요 성과 ····· 11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11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12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13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14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15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18

제3절 성평등 관련 법령의 변화 ····· 20
1.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20
2.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 22
3.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23
4.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24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5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7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9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30
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32
1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 33
1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 33

2 Chapter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제1절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및 정책협력 체계 ····· 37
1.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 37
2.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 46
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53

제2절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 ····· 54
1. 성별영향평가 연혁 및 추진체계 ····· 54
2.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 56
3. 성인지 예산 추진실적 및 성과 ····· 59

제3절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 63
1. 여성단체 협력·지원 ····· 63
2.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 ····· 64

제4절 양성평등기금 운용 ····· 72
1. 기금 조성 및 자산 운용 ····· 72
2. 사업추진 현황 ····· 73
3. 2020년 기금사업의 특징 ····· 75

제5절 성평등 문화·의식 확산 ····· 76
1. 성평등 의식 교육 및 진흥사업 ····· 76
2. 양성평등주간 운영 ····· 83
3.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 ····· 85

제6절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88
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성과 ····· 88
2. 여성공무원 현황 ····· 91
3.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 99
4.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 101

3 Chapter 일·생활 균형 확산

제1절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 107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 107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 110

제2절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 113
1. 모부성보호 제도 강화 ····· 113
2. 임신·출산 여성 고용 촉진 지원 ····· 122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125

4 Chapter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제1절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 129
1.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경과 ····· 129
2. 주요 내용 ····· 130
3. 2020년도 시행계획 추진성과 ····· 131

제2절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및 경력개발 지원 ····· 133
1.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133
2. 여성의 역량개발 및 경력유지 지원 ····· 134

제3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 136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136
2.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140

제4절 분야별 여성의 창업·취업영역 및 여성기업 활동 확대 ···· 145
1. 여성기업 활동 및 창업 지원 ····· 145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 148
3. 여성농어업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 향상 촉진 ····· 152

제5절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 159
1. 일자리에서 성차별 관행 개선 ····· 159
2.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직장 내 성희롱 방지 ··· 161

5 Chapter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제1절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 165

1.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활성화 ····· 165
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 176
3.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 190

제2절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활동 강화 ····· 191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 191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 신고의무 ····· 192
3. 청소년 성보호 예방 활동 ····· 195

제3절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199

1.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 ····· 199
2. 성매매 예방 및 국민 의식 개선 ····· 202
3.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 203

제4절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실효성 강화 및 인식제고 ····· 208

1. 여성·아동 폭력예방 내실화 ····· 208
2.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및 교육 ····· 211
3.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 212

Chapter 6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

제1절 결혼이민자 지원 ····· 217

1.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 217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 225

제2절 여성장애인 지원 ····· 227

1.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227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228

제3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 230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결정 ····· 230
2. 생활안정 지원 강화 ····· 231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정책 만족도 ····· 234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등 수행 ····· 235

제4절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 240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립 지원 ····· 240
2. 한부모 자립 지원 ····· 245
3. 한부모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 247
4. 북한이탈여성 지원 ····· 249

제5절 여성의 건강·안전 지원 강화 ····· 253

1.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 253
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256

표 차 례

표 1-②-1 공공부문별 여성 대표성 추진실적(2019~2020년) ····· 13

표 2-①-1 성불평등지수(GII)의 영역과 지표 ····· 38
표 2-①-2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 39
표 2-①-3 성개발지수(GDI) 영역과 지표 ····· 40
표 2-①-4 우리나라의 성개발지수(GDI) 현황 ····· 41
표 2-①-5 성격차지수(GGI) 영역과 지표 ····· 42
표 2-①-6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 현황 ····· 43
표 2-①-7 OECD 국가 성격차지수 현황 ····· 43
표 2-①-8 국가성평등지수 부문별 지표 현황 ····· 44
표 2-①-9 2020년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주요 추진현황 ····· 48
표 2-①-10 2020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 52
표 2-①-11 2020년 시·도 국장회의 개최 현황 ····· 53
표 2-②-1 성별영향평가 연도별 추진 현황 ····· 56
표 2-②-2 202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세부 현황 ····· 56
표 2-②-3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2021.6월 기준, 2021년 중 지속 권고 예정) ····· 57
표 2-②-4 2020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위탁교육 중 직급별 참여 실적 ····· 58
표 2-②-5 2020년 성인지 교육 실시 현황 ····· 59
표 2-②-6 최근 4년간 성인지 예산 및 집행현황 ····· 61
표 2-②-7 2021년 국가 성인지 예산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 62
표 2-③-1 여성가족부-유엔여성기구 간 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 ····· 68
표 2-④-1 양성평등기금 조성현황 ····· 72
표 2-④-2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운용수익률 ····· 73
표 2-④-3 2020년 양성평등기금 주요사업실적 ····· 74
표 2-④-4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당기순이익 현황 ····· 75
표 2-⑤-1 2020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원 현황 ····· 77

표 2-⑤-2 2020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 77
표 2-⑤-3 2020년 교육별 집합교육사업 추진실적 ····· 79
표 2-⑤-4 역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현황 ····· 84
표 2-⑤-5 2020년 양성평등주간 유공자포상 현황 ····· 85
표 2-⑤-6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내역 종합 ····· 87
표 2-⑥-1 공공부문별 여성 대표성 추진실적(2019~2020년) ····· 88
표 2-⑥-2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 91
표 2-⑥-3 2020년 국가공무원 직종별 여성 현황 ····· 92
표 2-⑥-4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 93
표 2-⑥-5 중앙행정기관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 ····· 93
표 2-⑥-6 2020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 94
표 2-⑥-7 2020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추가합격자 현황 ····· 95
표 2-⑥-8 중앙행정기관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 96
표 2-⑥-9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 97
표 2-⑥-10 여성교장·교감 현황 ····· 97
표 2-⑥-11 4년제 일반대학의 여학생 비율 ····· 98
표 2-⑥-12 일반대학/대학원의 계열/과정별 여학생 비율 ····· 98
표 2-⑥-13 4년제 대학의 여교수 구성비 변화 ····· 99
표 2-⑥-14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 100
표 2-⑥-15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 101
표 2-⑥-16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 102
표 2-⑥-17 여성임원 증감현황 ····· 102

표 3-①-1 2020년 시설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아동 수 ····· 107
표 3-①-2 연도별 어린이집 지원예산 현황 ····· 108
표 3-①-3 보육료 지원대상 추이 ····· 109
표 3-①-4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112
표 3-②-1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현황 ····· 114
표 3-②-2 육아휴직제도 연도별 개정사항 ····· 115
표 3-②-3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 117
표 3-②-4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지급현황 ····· 117
표 3-②-5 육아휴직 등(대체인력) 지원금 지급현황 ····· 119
표 3-②-6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현황 ····· 120

표 3-②-7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기준 ····· 121
표 3-②-8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현황 ····· 121
표 3-②-9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제도개선 현황 ····· 123
표 3-②-10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개선 현황 ····· 124
표 3-②-11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지원 ····· 124
표 3-②-12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 지원 ····· 125

표 4-②-1 15~64세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현황(15~64세 기준) ····· 133
표 4-③-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 137
표 4-③-2 새일센터 연도별 운영실적 ····· 139
표 4-③-3 2020년 새일센터 취업자의 직종형태별 현황 ····· 139
표 4-③-4 2020년 새일센터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현황 ····· 139
표 4-③-5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종류 ····· 141
표 4-③-6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적 ····· 142
표 4-③-7 새일여성인턴 운영 실적 ····· 143
표 4-④-1 여성기업 현황 ····· 145
표 4-④-2 여성기업 업종별 현황 ····· 145
표 4-④-3 여성기업 고용 현황 ····· 146
표 4-④-4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 147
표 4-④-5 여성기업 R&D, 정책자금, 보증 지원 현황 ····· 147
표 4-④-6 과학기술 R&D 분야의 성별 연구원 수 추이 ····· 148
표 4-④-7 2019년도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현황(1) ····· 149
표 4-④-8 2019년도 연구수행주체별 여성연구원 현황(2) ····· 149
표 4-④-9 2019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정규직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현황 ····· 150
표 4-④-10 연도별 후계 여성농업인 수 ····· 152
표 4-④-11 농협 여성조합원 및 여성임원 비율 ····· 153
표 4-④-12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실적 ····· 153
표 4-④-13 결혼이민여성 대상 주요교육과정 및 참여인원 ····· 154
표 4-④-14 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실적 ····· 155
표 4-⑤-1 2020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적용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 비율 ····· 160
표 4-⑤-2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 161
표 4-⑤-3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적 ····· 162

표 5-①-1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 167
표 5-①-2 가정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 169
표 5-①-3 2016년 성폭력 근절 추진대책 ····· 171
표 5-①-4 2020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시설현황 ····· 177
표 5-①-5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현황 ····· 177
표 5-①-6 2020년 해바라기센터 운영현황 ····· 179
표 5-①-7 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전체 피해자) ····· 180
표 5-①-8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이용현황 ····· 180
표 5-①-9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지원 실적 ····· 181
표 5-①-10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 181
표 5-①-11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 182
표 5-①-12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 현황 ····· 182
표 5-①-13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현황 ····· 183
표 5-①-14 주거지원시설 운영 현황 ····· 185
표 5-①-15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 ····· 186
표 5-①-16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 ····· 187
표 5-①-17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현황 ····· 187
표 5-①-18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처리 건수 ····· 189
표 5-①-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적 ····· 190
표 5-②-1 성매매 피해청소년 기본교육 현황 ····· 195
표 5-②-2 성매매 피해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현황 ····· 195
표 5-②-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현황 ····· 196
표 5-③-1 「2020년 연례 인신매매실태보고서」('20.6월, 美 국무부) ····· 200
표 5-③-2 연도별 성매매방지법령 주요개정사항 ····· 201
표 5-③-3 2020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현황 ····· 204
표 5-③-4 2020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방법 및 상담건수 ····· 204
표 5-③-5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204
표 5-③-6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 현황 ····· 205
표 5-③-7 2020년 자활지원센터 설치현황 ····· 205
표 5-③-8 2020년 자활지원센터 운영실적 ····· 205
표 5-③-9 2020년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현황 ····· 207

표 6-①-1 2019년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 218
표 6-①-2 2020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 218
표 6-①-3 2020년 언어권별 통번역 전문인력 현황 ····· 219
표 6-①-4 통번역 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 ····· 220
표 6-①-5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연도별 상담실적(상담 방법) ····· 223
표 6-①-6 2020년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상담실적 ····· 223
표 6-①-7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24
표 6-①-8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지원 현황 ····· 225
표 6-①-9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지원 현황 ····· 226
표 6-①-10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지원 현황 ····· 226
표 6-①-11 이주여성 상담소 상담실적 ····· 226
표 6-②-1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추진실적 ····· 228
표 6-②-2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추진실적 ····· 229
표 6-③-1 최근 5년간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결정 현황 ····· 230
표 6-③-2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생존자 현황 ····· 231
표 6-③-3 최근 5년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현황(1인당) ····· 232
표 6-③-4 최근 5년간 간병비 지급 현황(1인당) ····· 233
표 6-③-5 최근 5년간 건강치료 지원 현황(1인당) ····· 233
표 6-③-6 최근 5년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연령별 현황 ····· 234
표 6-③-7 최근 5년간 여성가족부 지원 전반에 대한 만족도 ····· 234
표 6-④-1 이혼 건수, 조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 ····· 240
표 6-④-2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현황 ····· 240
표 6-④-3 2020년 정부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현황 ····· 241
표 6-④-4 연도별 아동양육비 등 지원 현황 ····· 242
표 6-④-5 연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 244
표 6-④-6 2020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246
표 6-④-7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 248
표 6-④-8 2020년 양육비 이행 실적 ····· 249
표 6-④-9 북한이탈여성 연도별 입국 현황 ····· 250
표 6-④-10 연도별 교육 운영 실적 ····· 251
표 6-④-11 연도별 동료상담원 양성 교육 현황 ····· 252
표 6-⑤-1 사업장 규모별 여성근로자 점유율 ····· 253
표 6-⑤-2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23개소) 설치 현황 ····· 254
표 6-⑤-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조정 ····· 257

그림차례

그림 2-①-1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 45
그림 2-①-2 분야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 46
그림 2-②-1 202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체계 ····· 55

그림 4-①-1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추진체계 ····· 130
그림 4-③-1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이용 흐름도 ····· 144

그림 5-①-1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 ····· 170

그림 6-①-1 2020년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 217
그림 6-②-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절차 ····· 228
그림 6-③-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 236
그림 6-③-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전시 ····· 236
그림 6-③-3 2020년 학생·청소년 작품 공모전 수상작 현황 ····· 238
그림 6-③-4 2020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민간단체 사업 지원 ····· 238
그림 6-④-1 양육비이행관리 서비스 지원 체계 ····· 248
그림 6-⑤-1 2020년 분만취약지 현황 ····· 256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

제1절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3
1. 기본계획의 의의 3
2. 주요 내용 4
제2절 2020년도 양성평등정책 주요 성과 11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1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12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3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14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5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8
제3절 성평등 관련 법령의 변화 20
1.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20
2.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22
3.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3
4.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24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5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7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9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30
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32
1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33
1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33

제 1 절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1. 기본계획의 의의

정부는 제1차(1998~2002년), 제2차(2003~2007년), 제3차(2008~2012년) 및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통해 호주제 폐지, 고용차별 금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여성폭력 방지, 경력단절여성 지원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등 성평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15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2015.7.1. 시행)됨에 따라,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정·보완하여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년)」을 수립하였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였다.

'17년에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년)이 종료됨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였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은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분야별 핵심정책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를 처음 포함하였다.

'20년에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른 2020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 주요 내용

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체계

비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목표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정책 과제	대과제(6개)	중과제(22개)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1.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나. 관련 부처 및 추진 과제(6대 대과제, 22개 중과제 및 70개 소과제)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과 제 명	추진기관
1-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1-1-[1]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가부, 방통위
1-1-[2]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여가부
1-1-[3] 성차별 개선 심의기반 마련	방통위, 인권위, 여가부
1-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1-2-[1]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교육부, 여가부
1-2-[2]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교육부
1-2-[3]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여가부, 교육부
1-2-[4]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교육부, 여가부
1-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1-3-[1]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여가부
1-3-[2]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	여가부, 문체부
1-3-[3] 여성 문화유산 계승과 보존	여가부
1-3-[4]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여가부
1-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1-4-[1]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문체부, 고용부
1-4-[2]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제작·활용 활성화	여가부
1-4-[3] 양성평등 교육 제공기관의 확대 및 역량 강화	여가부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과 제 명	추진기관
2-1.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2-1-[1] 다양한 분야의 여성일자리 확대	과기정통부, 산자부, 교육부, 농식품부, 해수부, 여가부
2-1-[2] 성별 직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고용부, 경찰청, 여가부
2-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2-2-[1] 고용 상 성차별 해소 추진기반 정비	고용부, 기재부, 여가부
2-2-[2] 고용 상 성차별 감독 및 구제 강화	고용부, 여가부
2-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2-3-[1] 성별임금격차 해소	고용부, 여가부
2-3-[2]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2-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2-4-[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고용부, 여가부, 과기정통부
2-4-[2]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	여가부, 고용부, 기재부, 중소벤처부, 과기정통부
2-4-[3]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인프라 확충	여가부, 중소벤처부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과 제 명	추진기관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3-1-[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여가부
3-1-[2]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 조치	행안부, 인사처, 기재부, 여가부, 각부처
3-1-[3]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서 적극적 조치 및 처우개선	국방부, 경찰청
3-1-[4] 교육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교육부
3-2. 민간기업 등 여성 대표성 제고	
3-2-[1]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여가부, 고용부
3-2-[2]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의 확대	여가부, 고용부, 기재부, 금융위
3-2-[3] 전문직 직능단체 등의 여성 지위 강화	여가부, 관계부처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3-3-[1] 차세대 여성 정치 리더 양성	여가부
3-3-[2] 여성 관리자 양성 지원	여가부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과 제 명	추진기관
4-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4-1-[1]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여가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4-1-[2] 돌봄자에 대한 지원 확대	여가부, 고용부, 국토부, 복지부
4-1-[3] 돌봄 공동체 활성화 및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여가부, 복지부, 고용부
4-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4-2-[1]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개선	고용부, 기재부
4-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고용부
4-2-[3] 법정 근로시간 준수	고용부
4-2-[4] 유연한 근무형태 및 근로자의 휴가 활성화	고용부, 문체부
4-2-[5] 남성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고용부, 여가부
4-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4-3-[1]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여가부
4-3-[2] 기업에 대한 일·생활 균형 지원 및 지도 강화	여가부, 고용부
4-3-[3] 일·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여가부, 고용부
4-3-[4]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	여가부, 교육부

5) 여성 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과 제 명	추진기관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5-1-1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인사처
5-1-2 여성폭력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경찰청, 법무부
5-1-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여가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고용부, 경찰청, 지자체
5-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5-2-1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대응 강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5-2-2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대응 강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5-2-3 조직 내 여성폭력 대응 강화	국방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5-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5-3-1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계·협업 강화	여가부, 보건부, 경찰청, 법무부
5-3-2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고용부
5-3-3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및 인식 제고	여가부, 검찰청, 법무부
5-3-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활성화	외교부, 여가부
5-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5-4-1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여가부, 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지자체
5-4-2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식약처
5-4-3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5-4-4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복지부, 여가부, 지자체
5-4-5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복지부, 국토부, 지자체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과 제 명	추진기관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6-1-1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조직적 기반 마련	여가부, 행안부, 각부처, 지자체
6-1-2 정부 부처 양성평등정책 책무성 강화	여가부, 국조실, 각부처
6-1-3 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인지적 통계 관리	여가부, 통계청
6-1-4 성인지적 정책 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성 제고	여가부, 기재부, 각부처
6-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6-2-1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여가부, 인사처, 행안부
6-2-2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 역량 강화	여가부
6-2-3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관리	여가부
6-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6-3-1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보장	여가부
6-3-2 다각적 협력체계를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여가부
6-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6-4-1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활성화	여가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6-4-2 국제협약 이행 내실화 및 협력사업 활성화	외교부, 여가부, 각부처

제 2 절

2020년도 양성평등정책 주요 성과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초·중등교육의 양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교과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였으며,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선도학교 운영(333교) 및 지역·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의 여학생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교원·비교원 대상 연수 등에 양성평등 역량 향상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대학의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고등교육분야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기반을 구축하였다.

대중매체에서의 양성평등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급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웹툰, 유튜브 섬네일 등의 뉴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청년이 주도하여 성평등 관점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버터나이프 크루) 운영으로 일, 성평등 교육, 주거, 가족 등의 의제를 청년들이 스스로 발굴하여 콘텐츠 제작과 캠페인 추진 등의 문화 개선 활동을 실천하는 소통과 참여의 장을 열었다.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자리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매칭해주는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전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특화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였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하여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완화하였다.

청년 여성·경력단절여성 등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 R&D 전문여성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20년 398개 과제)을 운영하여 경력단절 R&D 여성인력의 경력 유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20년 기준 158개소)하였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재직여성 대상 고충·노무 상담, 기업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17년 15개소에서 '19년 35개소로, '20년에는 60개소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19~'20년에는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한 '성평등 일자리, 차별없는 임금과 채용이 만듭니다!' 책자를 바탕으로 영상 및 카드뉴스 등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체결 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직, 교직, 군·경찰, 공공기관, 정부위원회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18~'22년)」을 수립('17.11)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2년('19~'20) 연속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12개 분야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고, 공공기관 임원(22.1%), 교장·교감(44.5%) 분야는 '19~'20년도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등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19년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이 20%를 상회한데 이어, '20년에는 지방직 과장급(20.8%)까지 최초로 20%를 넘어서는 등 중앙에서 지방으로 여성대표성 제고 추진성과가 확산되었다.

|표 1-②-1| 공공부문별 여성 대표성 추진실적(2019~2020년)

(단위 : %, 각연도 12.31일 기준)

부 문	2019년	2020년
고위공무원단	7.9	8.5
본부 과장급(4급 이상)	20.8	22.8
지방 과장급(5급 이상)	17.8	20.8
공공기관 임원	21.1	22.1
공공기관 관리자	25.1	26.4
지방공기업 관리자	9.1	10.6
국립대 교수	17.3	18.1
교장 교감	44.1	44.5
군인 간부	6.8	7.5
일반경찰	12.6	13.4
해양경찰	12.7	13.2
정부위원회	43.0	43.2

민간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 10개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성별균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 목표와 실천계획을 담은 기업과의 자율협약 체결을 시작(제1호 기업으로 롯데그룹과 체결)하였다. '20년 기준 총 48개 협약, 100개 기업(체결당시 기준)이 동참하였다.

여성인재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사회진출 확대로 경제성장 기반 마련 및 성평등 사회 구현 조성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기관 등과 협업하여 여성인재풀을 약 13만명으로 확충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분야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18~'22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였다. 여성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여성리더스 포럼을 개최하고,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정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2020년 1월, 질병·사고·노령 및 자녀양육을 위한 연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5일(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최대 10일, 한부모근로자 최대 20일), 1일당 5만원 이내로 지원하였다.

지역별 대체인력채용협의체(고용센터, 대체인력뱅크, 새일센터 등)를 운영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인원은 4,592명이다.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시행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부문이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무화 대상 781개 기관 중 769개 기관(98.5%)이 인증을 수여받았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국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375개사를 대상으로 9회 개최하였으며 459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친화인증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온라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9년에는 직장어린이집 42개소를 신규로 확충하였으며 설치비 무상지원, 컨설팅 등 사업장별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화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를 하는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20년 4월 기준 8,421개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였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아침·저녁·온종일 방과후 과정 돌봄을 통해 지역 내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였다.

아울러 온종일 돌봄 정책('18.4월)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을 매년 700실 확충('22년까지 5년간, 3500실) 중이며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협력하여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최초의 중장기 법정계획인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20.2월)하는 등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였다. 이와 함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실시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통계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을 위한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예비교원과 유학생 대상의 맞춤형 예방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호시설 1개소,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개소와 해바라기센터 1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점점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인력 확대('18년 9명 → '19년 16명 → '20년 17명) 등 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신속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긴급피난처에 한달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롭게 대두되는 신종 성범죄 피해자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 유형별 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 임시보호, 자립·자활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국비지원) : ('19) 32개소 → ('20) 34개소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 ('19) 335호 → ('20) 344호 국비지원 가정폭력상담소(통합상담소 포함) : ('18) 103개소 → ('19) 128개소 → ('20) 128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19~'20) : 9개소

저출산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산모·신생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본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하였고, 해산급여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및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확대를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20.10.20.). 또한 모니터링 전담인력 증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번역된

신청서를 제공하는 등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를 내실화하였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생활필수품인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하고 유해한 대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11세~18세)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또한 '19년부터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때에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20년에는 국내 대형 유통점, 편의점, 모바일 앱 등 접근성이 높은 구매처를 적극 확보하고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지원금액은 월 11,500원(연간 최대 13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5% 인상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바127)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4.11.)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제270조제1항(의사동의낙태죄)에 대한 입법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20.11.18.)을, 법무부에서는 형법 개정안('20.11.25.)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현재 계류상태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법공백상태에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여성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형법·모자보건법 법률 개정과 관련 없이 우선적 도입이 가능한 정책을 여성건강 보호 관점에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의 고용 불안, 돌봄 부담 누적 등 상반기에 크게 증가한 20·30대 여성의 자살률에 대응하여 '20·30대 여성 자살예방 지원방안'을 마련('20.11월)하였다.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미투운동 이후 부처가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계·직장 등 정책영역과 현장이 큰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설되었다('19.5.7). 양성평등전담부서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0년까지 총 13회의 협의체를 운영하였다.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훈령을 제정했으며('20.4.29)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표준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제·개정 요청하였다('20.9.9). 또한 양성평등정책 담당관과 실무자의 성인지 정책 및 성평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9월, 11월).

또한, 지역 간 성격차를 해소 및 성평등 수준 제고 필요성에 따라 2019년부터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를 '지역양성평등센터'로 확대·개편(4개소, 인천·경기·전남·경북)하여 지역 양성평등 환경 조성 및 양성평등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정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추진 및 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인력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성 주류화 제도 실행력을 제고하고,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기재부 훈령, '20.10월)하여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심의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성평등 기여도', '정책개선율'을 정부업무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사업 선정 시 합리적·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심의 최종견해 이행계획 수립('18.12월)에 따른 이행실적 민·관 합동 점검('20.12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18~'20) 민·관 합동 이행점검, 제3기 국가행동계획('21~'23)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국제협약 및 결의안 이행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이 되는 해였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성평등 및 여성·평화·안보 관련 정책성과를 홍보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출범 등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UN Women에 대한 기여금 지원, 인도네시아 여성 역량강화 지원, 몽골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여성 관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추진하여 개도국의 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였다.

제3절

성평등 관련 법령의 변화

1.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14.5.28. 공포)을 시행하였다. ’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15년에는 성평등지수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성희롱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 성평등 지수를 활용하고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개선 방안을 요청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외에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고등교육에서 성희롱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화하였다.

’16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시 임금차별을 받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장관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년에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하여 국가행동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발전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18년에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8년 초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과 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 남성을 관리직위에 균형 있게 임용하기 위한 관리직 목표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로 하여금 여성이 인사 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고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였다. ’18년 말에는 성인지 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체 공무원에게 의무화하였으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강화하였다. 이밖에 민간재단 형태로 운영되던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공(公)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1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인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여성 인권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심의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부여하여 각 지역의 정책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 실태를 알리고 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해당일에 성별 임금 통계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성별영향평가법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하고자 '11년 9월 제정되어 '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다양한 정책 개선을 이끌어 내고 있다.

'17년에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대상 기관을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고,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개선사항의 반영결과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내실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8년에는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업무담당자와 국민이 제도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89년 「모자복지법」 제정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였고, ’03년에 모자가정외에 부자가정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08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원대상 범위를 조손가족까지 확대하였고, 이후 개정을 통해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규정하는 등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여 확대하였다.

’16년 3월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이 시설을 폐지 혹은 운영 중단 시 입소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장의 입소자 권익 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16년 12월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였다.

’17년 12월에는 청소년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가정형편과 불규칙한 생활패턴 등으로 인해 건강 위협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18년 12월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혼모·부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산전·분만·산후 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등)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의료비 추가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20년 10월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11년에는 귀화 및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으로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13년에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다국어 상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권을 한층 더 보호하도록 하였다.

’15년에는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방문교육비용 차등 지원 근거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16년에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지정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였다.

’17년에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년에는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정보 제공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로써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리 제정('11.1.1. 시행)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13년에는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로 확대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예방교육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정부 위탁·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교육환경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대상)로 세분화하였다. 특히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14년에는 폭력예방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실적 점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 평가 반영 요구, 점검 결과 언론 공표 의무화 등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였다.

'15년에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하여 지정되는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며, '16년에는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등 예방조치를 의무화하여 조직 내 성폭력 방지를 강화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시 이용자의 권익보호 조치에 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

’17년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18년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나, 개인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행위자에 대해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년에는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자 이외에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미투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입법 실현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방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등 예방조치를 의무화하여 성폭력 예방 관련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여 근절을 도모하고, 피해자 보호체계 확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11년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가해자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권을 신설하였다.

’12년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입·조사권을 신설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건 초기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13년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하고 경찰관의 현장출입·조사권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14년에는 예방교육 실적 점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 평가 반영 요구, 점검 결과 언론 공표 의무화 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거나 자녀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할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신변 보호 및 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15년에는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피해자의 임시보호 기능을 추가하였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문화 확산을 위해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신설하였다.

’16년에는 가정폭력 관련 시설 중단·폐지 시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17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기본이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책무를 신설하였다.

또한 외국인·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근거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 금지원칙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였다.

'18년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하였고,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일시적인 중단·폐지신고 내용이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권한이 있음을 명시하였고,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최대 1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20년에는 그동안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한정되었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 입소를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입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14년에는 전면개정을 통하여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 추방주간 운영, 홍보영상 제작·송출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제고 및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보호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16년에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폐지 또는 폐쇄 시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의 대화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과 범죄단체가 개입된 성매매 등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토록 하였으며,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숙박업 등 성매매(알선)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출입하여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8년에는 성매매피해지를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하여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00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00.7.1. 시행)하고, ’09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10.1.1. 시행) 하였다.

’05년에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06.6.30. 시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09년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기존의 온라인을 통한 공개 외에도 아동·청소년 보호세대·기관 등에 우편으로 고지(’10.4.15. 시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우편고지는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이웃뿐만 아니라 경계를 같이하는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하였다.

’12년(’13.6.19. 시행)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한 자에게도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처벌을 강화하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공소시효 배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강간 살인죄의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음화반포 등의 일부 죄를 제외한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음주로 인해 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18년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위헌성 해소를 위해 전면적으로 제도를 개편(’18.7.17. 시행, ’18.9.14. 시행) 하였다. 취업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간 부과하던 기존과 달리,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의료인(2012년), 경비업·일반 PC방·청소년 노래연습장 등(2013년), 위탁교육기관 및 학습교사 사업장(2016년)에 이어 대학·학생상담지원시설·공공시설 등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19년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시행 ’19.7.16.)이 이루어졌다. 또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고,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하였다(개정 '19.11.26. 시행 '20.5.27.).

'20년에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20.5.19.개정 '20.11.20. 시행).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꾸며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20.6.2. 개정·시행).

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세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첫 번째 개정('18.3.27. 공포, '18.9.28. 시행)으로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 절차를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변경함으로써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두 번째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와 이행관리원에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세 번째 개정('20.6.9. 공포, '21.6.10. 시행)으로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양육비 채무자가 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18.12.24. 제정, '19.12.25. 시행)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0년 법에 규정된 정책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법에 따라 18개 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및 '20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사전연구, 여성폭력 통계지표 체계안 마련,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등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08.12.6. 시행)하였다.

'10년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개정('10.2.4. 시행)하였다.

’17년에는 경력단절 사유에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포함하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역할에 경력단절예방 지원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17.9.22. 시행)하였다.

’19년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을 개정(’20.5.27. 시행)하였다.

2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제1절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및 정책협력 체계 37
1.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37
2.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46
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3
제2절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 54
1. 성별영향평가 연혁 및 추진체계 54
2.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56
3. 성인지 예산 추진실적 및 성과 59
제3절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63
1. 여성단체 협력·지원 63
2.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 64
제4절 양성평등기금 운용 72
1. 기금 조성 및 자산 운용 72
2. 사업추진 현황 73
3. 2020년 기금사업의 특징 75
제5절 성평등 문화·의식 확산 76
1. 성평등 의식 교육 및 진흥사업 76
2. 양성평등주간 운영 83
3.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 85
제6절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88
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성과 88
2. 여성공무원 현황 91
3.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99
4.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101

제 1 절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및 정책협력 체계

1.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가. 주요 국제지수 현황

1) 성불평등지수(GII)

'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통하여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UN은 각 국의 성불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95년부터 여성권한척도(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와 남녀평등지수(GDI :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를 개발·발표해왔다. 이후 UNDP는 20주년을 맞이한 '10년도에, 그동안의 GEM, GDI 등 성불평등 측정 지수들이 선진국 위주, 도시 엘리트 중심의 강한 편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을 수용하여 성불평등지수(GII : Gender Inequality Index)를 도입·발표하였다.

성불평등지수(GII)는 기존의 GDI와 GEM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비판을 수용하여 개발한 지수로 여성에 대한 3개의 중요한 영역 즉,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권한(Empowerment), 노동참여(Labour market)의 3개 부문 총 5개 지표로 산출하고 있다.

| 표 2-①-1 | 성불평등지수(GII)의 영역과 지표

영역(차원)	지 표
생식건강	• 모성 사망비 *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 청소년 출산율 *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여성권한	• 여성의원비율
	•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
노동참여	• 경제활동참가율

’20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20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20, ’19년 기준)’에 따르면, 성불평등지수(GII)에서 우리나라는 총 점수 0.064점으로 세계 189개국 중 11위로 전년도 대비 1단계 하락하였다.

아시아 주요 국가의 순위는 싱가포르가 12위, 일본이 24위, 중국이 39위이며, 선두권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스위스가 1위,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공동 4위로 유럽 국가의 순위가 높았다.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 값이 높게 나타난 것은 생식 건강 영역의 수준이 높은 것이 주요 요인이며,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식건강 영역의 모성사망비는 11명, 청소년 출산율은 1.4명으로 이전과 동일하였고, 여성권한 영역에서는 여성의원 비율은 16.7%,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는 여성의 경우 80.4%로 이전 발표 대비 하락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52.9%, 남성 73.1%로 이전 조사 보다 남녀 격차는 0.3%p 감소하였다.

|표 2-①-2|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 산출된 점수는 0~1의 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성 불평등한 상태, 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

발표 연도	순위/ 대상	점수*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	11/189	0.064	11	1.4	16.7	80.4	95.5	52.9	73.1
’19	10/189	0.058	11	1.4	17.0	89.8	95.6	52.8	73.3
’18	10/189	0.063	11	1.6	17.0	89.8	95.6	52.2	73.2
’17	10/188	0.067	11	1.6	16.3	88.8	94.6	50.0	71.8
’15	23/155	0.125	27	2.2	16.3	77.0	89.1	50.1	72.1

※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 년도

건강, 교육 등 인간 개발에서의 성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지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정치나 경제 등 의사결정 분야에서의 성불평등 지표에서는 여전히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가 성평등 전략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정치·경제 권한 확대를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지속 추진하며,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지원 등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성개발지수(GDI)

성개발지수(GDI : Gender Development Index)는 UNDP에서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95년부터 ’09년까지 발표한

후 지표 비교의 적절성 문제 등으로 '10년 GII로 대체되어 발표하지 않다가 '14년도에 일부 지표와 산정방식을 수정하여 다시 발표하였다.

성개발지수(GDI)는 인간개발지수(HDI : Human Development Index)를 성별로 구분하여 남녀의 성취수준을 성비로 측정하는 지수로 건강, 교육, 경제의 총 3개 영역 4개 지표로 산출하고 있다.

|표 2-①-3| 성개발지수(GDI) 영역과 지표

영 역	지 표
건 강	• 출생시 기대여명
교 육	•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 • 기대 교육년수
경 제	• GNI에 기반한 1인당 추정소득

'20년도 성개발지수(GDI)에서 우리나라는 총 점수 0.936로 5개 그룹 중 3번째 그룹[1]에 해당하여 인간개발지수의 성별 격차는 비교적 큰 편이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출생 시 기대여명은 여성(86.0년)이 남성(79.9년) 보다 높으나 평균 교육 연수(여성 11.4년, 남성 12.9년)와 기대 교육 연수(여성 15.9년, 남성 17.0년)는 여성이 남성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정소득의 남녀 격차가 큰 것이 낮은 순위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11위/189개국)와 성개발지수(3그룹/5그룹)의 순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두 지수의 지표 구성과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성불평등지수(GII)는 5개 지표로 구성되어 성별 수준과 격차를 함께 고려하여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 반면, 성개발지수(GDI)는

1) UNDP는 2015년부터 점수 분포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발표함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점수	0.975 이상	0.950~0.975	0.925~0.950	0.900~0.925	0.900 미만

4개 지표로 구성되어 성별 격차로만 측정하기 때문에 두 가지 지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표 2-①-4| 우리나라의 성개발지수(GDI) 현황

발표 연도	그룹	HDI 성비	HDI 점수		건강한 삶		교육(지식)				적절한 표준 삶	
					출생 시 기대여명(세)		평균 교육년수(년)		기대 교육년수(년)		1인당 GNI (PPP$)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	3그룹	0.936	0.881	0.941	86.0	79.9	11.4	12.9	15.9	17.0	27,734	58,309
'19	3그룹	0.934	0.870	0.932	85.8	79.7	11.5	12.9	15.8	16.9	23.228	50.241
'18	3그룹	0.932	0.866	0.929	85.3	79.2	11.4	12.9	15.9	17.1	22.572	49.297

※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 년도

주요 국가의 '20년 성개발지수(GDI) 점수를 살펴보면, 라트비아가 1.036점, 리투아니아·카타르가 1.030점으로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몽골이 1.023점으로 가장 높고 중국(0.957점)과 한국(0.936점)은 낮은 편이었다.

3) 성격차지수(GGI)

성격차지수(GGI : Gender Gap Index)는 '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경제, 교육, 건강, 정치에 대한 성격차를 통해 국가별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성격차지수(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부여의 4개 영역과 14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2-①-5| 성격차지수(GGI) 영역과 지표

영 역	지 표
경제참여와 기회	• 경제활동참가율
	• 유사업무 임금수준
	• 추정소득
	• 관리직 비율
	• 전문직 비율
교육적 성취	• 문해율
	• 초등교육 취학률
	• 중등교육 취학률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건강과 생존	• 출생 성비
	• 건강기대수명
정치적 권한 부여	• 국회의원 비율
	• 장관 비율
	• 국가수장 재직기간

우리나라는 ’19년 총 점수 0.672점을 얻어 전체 153개국 중 108위를 기록하여 ’18년 보다 0.015점 상승하여 순위도 7단계 상승하였다. 세부 지표별로는 경제참여 및 기회부분은 ’18년 보다 점수는 0.006 상승하였으나 국가 순위는 3단계 하락하였으며, 교육적 성취 분야의 경우 점수는 0.973점으로 전년과 동일하나, 순위는 1단계 하락하였으며, 건강과 생존 분야 점수는 0.980점으로 순위는 86단계 상승하였으며, 정치적 권한 분야는 0.179점으로 13단계 상승하였다.

|표 2-①-6|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 현황

연 도	GGI(순위)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2019년	0.672(108위)	0.555(127위)	0.973(101위)	0.980(1위)	0.179(79위)
2018년	0.657(115위)	0.549(124위)	0.973(100위)	0.973(87위)	0.134(92위)
2017년	0.650(118위)	0.533(121위)	0.960(105위)	0.973(84위)	0.134(90위)
2016년	0.649(116위)	0.537(123위)	0.964(102위)	0.973(76위)	0.120(92위)
2015년	0.651(115위)	0.557(125위)	0.965(102위)	0.973(79위)	0.107(101위)
2014년	0.640(117위)	0.512(124위)	0.965(103위)	0.973(74위)	0.112(93위)

※ 출처 : WEF,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각 년도

성격차지수(GGI)는 성불평등지수(GII)와 달리 해당 국가의 수준(level)은 고려하지 않고 남녀 격차(gap)만 측정하므로 선진국가가 낮은 순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위국가는 아이슬란드 1위, 노르웨이 2위, 핀란드 3위로 OECD 국가들이 순위가 높으며,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이 16위로 가장 높고 중국이 106위, 일본이 121위로 한국과 함께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는 세계 하위권으로 우리의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표 2-①-7| OECD 국가 성격차지수 현황

연번	국가명	순위	점수	연번	국가명	순위	점수
1	아이슬란드	1	0.877	19	오스트리아	34	0.744
2	노르웨이	2	0.842	20	포르투갈	35	0.744
3	핀란드	3	0.832	21	슬로베니아	36	0.743
4	스웨덴	4	0.82	22	네덜란드	38	0.736
5	뉴질랜드	6	0.799	23	폴란드	40	0.736
6	아일랜드	7	0.798	24	호주	44	0.731
7	스페인	8	0.795	25	룩셈부르크	51	0.725
8	독일	10	0.787	26	미국	53	0.724
9	라트비아	11	0.785	27	칠레	57	0.723
10	덴마크	14	0.782	28	슬로바키아	63	0.718
11	프랑스	15	0.781	29	이스라엘	64	0.718
12	스위스	18	0.779	30	이탈리아	76	0.707
13	캐나다	19	0.772	31	체코	78	0.706
14	영국	21	0.767	32	그리스	84	0.701
15	멕시코	25	0.754	33	헝가리	105	0.677
16	에스토니아	26	0.751	34	한국	108	0.672
17	벨기에	27	0.75	35	일본	121	0.652
18	리투아니아	33	0.745	36	터키	130	0.635

나. 국가성평등지수

여성가족부는 '09년 국가 성평등 수준의 다각적인 파악과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가 성평등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10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조사·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가성평등지수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값으로 성평등한 사회 참여의 정도, 여성의 인권·복지 및 성평등 의식·문화 등으로 구성된 지표를 통해 산출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개선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영역에 대해 관계부처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남녀 격차를 측정기준으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등 8개 부문 25개 대표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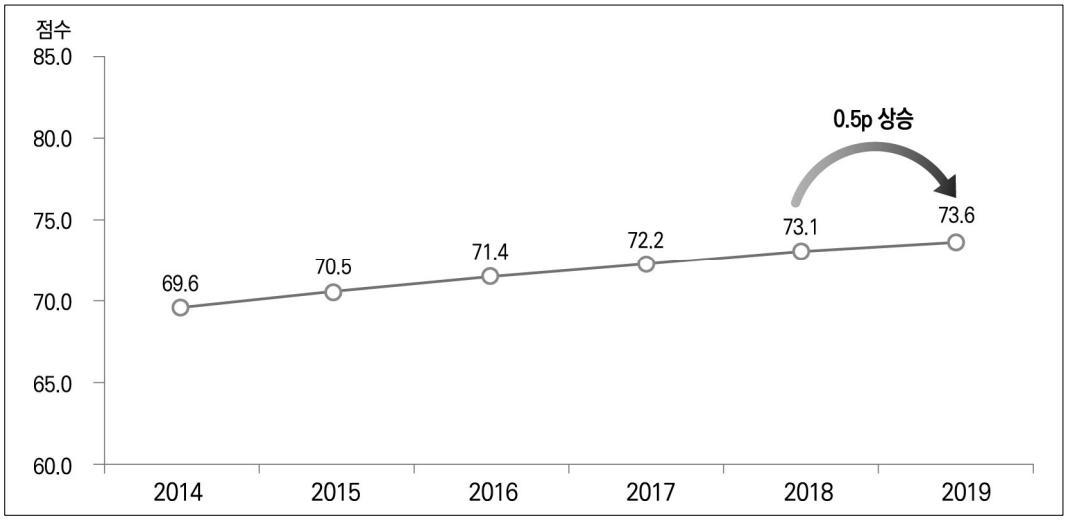
|표 2-①-8| 국가성평등지수 부문별 지표 현황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연수 격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교육훈련경험률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비 빈곤 인구 비율, 공적연금가입자 비율, 장애인고용률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의식,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가사 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비율
	문화·정보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 지표 값은 성비로 계산

’20년에 발표한 ’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 값은 73.6점으로 전년(73.1점) 대비 0.5점 상승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성평등 수준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단위 : 완전 성평등 = 100.0)



주 :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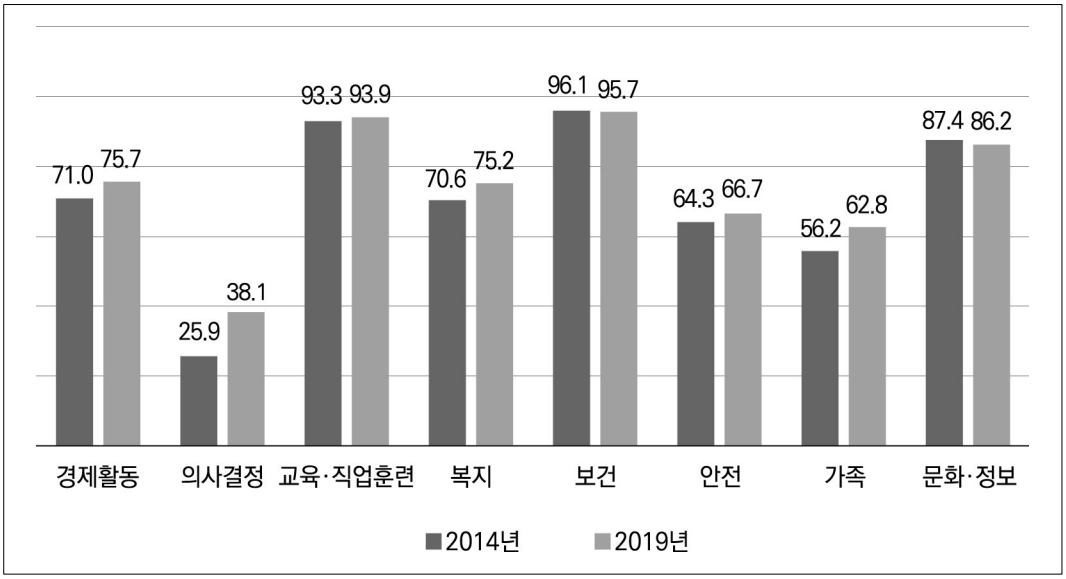
|그림 2-①-1|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 분야(95.7)이며 교육·직업훈련 분야(93.9), 문화·정보 분야(86.2), 경제활동 분야(75.7), 복지 분야(75.2), 안전 분야(66.7), 가족 분야(62.8), 의사결정 분야(31.1) 순이다.

2019년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의사결정 분야가 1.9점 증가하여 가장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지수의 시계열적 변동 원인 분석과 함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등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지속 활용할 계획이다.

(단위 : 완전 성평등=100.0)



|그림 2-①-2| 분야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2.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가.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확대 개편되어 이전 여성정책조정회의 내 5명에 불과하던 민간위원을 1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15년 7월 처음 개최된 양성평등위원회는 '20년까지 총 11회 개최되었고, '20년 8월말에 개최된 제11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20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및 'UN안보리 결의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 '20년 상반기 이행 점검 결과'를 논의하였다.

또한 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 현안에 대한 보다 전문성 있는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년 10월부터 양성평등위원회 산하에 양성평등정책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양성평등정책 분과위원회는 성인지 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분과와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차관이 주재하고 관계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나.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운영

'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기존 여성정책책임관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개편하고, 배치 범위도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정하였다.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의 경우도 기존의 4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 지정되어 운영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성평등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총 4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 지정되어 운용하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은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 대상 성인지 교육에 참여 하였다.

※ 양성평등정책책임관('20.10.21, '20.11.18~30), 전담전문인력('20.7.8~21, 7.23, 11.18~24, 11.26)

다.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추진실적 및 협의체 운영

미투 등 영역별 성희롱·성차별 문제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대응과 성평등 조직체계 구축 및 정책의 양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해 정책영역과 현장이 큰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가 신설('19.5.7)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전담부서가 제대로 안착하여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별 성인지 예결산 현황, 부처별 '19년 주요성과 및 '20년 중점추진과제 계획,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제정(안), 부처별 개선 우수사례 및 주요성과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전담부서는 정부 정책의 성주류화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을 두 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년 주요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또한, 부처별로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민간위원들과 고위공무원들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표 2-①-9| 2020년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주요 추진현황

부처명	주요 추진내용
교육부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1],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설치(13개)[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 의무화 및 전담 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센터 선정·운영[3], 교원 징계기준 강화[4] 1) '20년 370건 접수(총 555건 중 기타 185건 제외) : 초중등 192건, 대학 등 178건 2) 13개 교육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3) 전담기구 실태조사 실시, 예방교육자료 등 개발(7종), 직무연수(7회), 자문·컨설팅(110회) 4) 성범죄 처벌자의 교원 자격 취득 제한,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일정 기간 담임 배제 - 양성평등 교원임용 법·제도 개선[1], 학교 양성평등교육 강화[2] 1) 국·공립 대학 교원의 특정 성별이 3/4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20.1월), 국립대학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20.7월) 2) 초중등 양성평등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연구, 양성평등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안내서 및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수업 자료집(2종)개발,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 연수, 연구학교(4개교) 지정·운영 등
법무부	-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실시[1],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 운영[2], 법무부 양성평등 수준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실시[3]

부처명	주요 추진내용
	1) 실시간 온라인 교육,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소속기관 교육 등 총 86회, 4,075명 교육 실시 2)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 및 총 4회 회의 개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대책에 관한 권고」 보도자료 배포 3) 「법무부 양성평등 수준진단 및 실태조사」('20.4~'2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 내 양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정책적 제언 제시 -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개정·시행[1],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매뉴얼 발간[2] 1) (주요 개정사항) 피해자 등 조사시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신청인의 신청 취소절차 정비 등 2)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 기본 개념 정립, 사건발생시 구체적 대처 방안, Q&A 형태 사례 제시 등
국방부	- 「'20~'22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1년 시행계획 수립 - 주요정책, 사업과제 등 성별영향평가 시행(법령 75건, 사업 6건) 및 대상범위 확대 - 5개 분야 31개 지표에 대한 국방 성인지 통계 생산으로 국방 제 분야에 대한 성별비교 실시 - '20년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 결과 양성평등지수 88점으로, 군내 양성평등의식 지속 향상 -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방부 및 각 군 전문인력 보강[1] 1)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 해병대센터장 민간 전문인력 보직, 각 군 양성평등센터 인력 보강(7명), 성고충전문상담관('19년 44명 → '20년 48명) - 계층별·수준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1] 1) '20년 전 장병 성인지교육 이수율 95% 달성, 성인지교육 동영상 콘텐츠 및 사관학교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개발, 양성평등업무담당자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교육 시행(10회, 277명)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징계처리기준 마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령개정 추진
문화체육 관광부	- 문체부 양성평등정책 지원을 위한 훈령 제정(12월), 행정규칙 근거 위원 성별 균형을 위한 행정규칙 개정(84개) - 성평등 문화확산 포럼(인천, 대구 등 10개 지역) 및 국내외 젠더분야 전문가 참여하는 국제포럼(11.23. 온라인) 개최,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콘텐츠 시상(장관표창 등 총 13점) -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계약해지권 등 명문화(7개 분야 38종)[1],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운영('20.8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용역관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및 시정조치('20.11~) 1) 7개 분야 : 미술, 애니메이션, 공연예술, 만화, 대중문화, 출판, 이스포츠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분야 성평등 정책개발 및 역량강화[1] [2] [3] 1) 젠더거버넌스 강화 및 성인지적 정책개발을 위한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포럼' 운영 2) 보건복지부 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20.5.) 3) 성인지적 건강증진,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관련 정책연구 추진 -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성인지 관점 일괄점검 단계별 추진(1단계)[1] 1) 부내 고시·훈령··예규(394개) 중 성평등 관점의 개선이 필요한 규칙 198개 검토 완료(21년 3월~, 2단계 추진) - 소속(산하)기관(39개소)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실시(반기별 1회)

부처명	주요 추진내용
고용노동부	-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1], 민간 고용평등상담실(21개소) 운영[2], 고용부-산하기관(12개소) '성평등 조직문화 협의회' 개최(반기 1회) 1) 익명신고센터 운영실적('20) : (성희롱) 797건, (성차별) 364건 2)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실적('20) : (상담건수) 11,328건, (심리치유 프로그램) 120명, 809회, (사업장 교육) 280개소, 8,860명 - 「취업알선·직업훈련에서의 성별 직종분리현황 및 개선방안」 등 양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 「고용노동분야 홍보물 성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대검찰청	- 성평등한 검찰이 구현하는 공평타당한 법집행을 목표로 「'20~'21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1] 1) 정책 추진기반 강화, 성희롱·성폭력 근절, 성평등 친화적 형사절차 구축,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2개년 기본계획 -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1], 공소장 등 검찰 결정문 성별 표기 개선[2] 1) 270개 훈령·예규 점검 → 9개 훈령, 35개 예규 개정 권고('20.11월) 2) 검찰 결정문에 피해자 등의 성별 표기가 필요한 경우 성별을 모두 표기하도록 전국 청에 개선 권고('20.5월) -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지침 개정[1] 및 전국 65개 청 지침 정비[2], 상담원 매뉴얼 발간[3], 성희롱 등 고충상담 모바일앱 개발[4] 1) 성희롱 등 고충사건 처리절차 보완 및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 조치 개선('20.11월) 2) 개정 지침에 대한 표준안 해설서 전국 청 배포('20.12월) 3) 검찰 양성평등상담원(약 300명)의 업무 이해도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매뉴얼 발간 및 전국 청 배포('21.1월) 4) 검찰 구성원의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 접근성 강화를 위한 모바일앱 개발('20.7월) - 검찰 구성원의 성인지 의식 등 검찰 조직문화 진단, 양성평등 의식 확산 콘텐츠 제작[1] 1) 성희롱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물 '성희롱 예방가이드' 8회 발간 및 검찰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한 역할극 형태의 교육 및 홍보자료 '월간 양성평등' 3회 발간
경찰청	- 경찰 성평등정책 실행기반 확립[1] [2] 1) 경찰청 소속기관(시도경찰청 18, 부속기관 5) 양성평등정책 전담인력(총액인건비 임기제 6급) 임기 추가연장 완료('19.1월~'20.12월 → '21.1월~'22.12월) 2) '18. 4. 17.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발족, '20.12월까지 정기회의 11회, 임시회의 1회 개최 - 경찰 성평등정책 자율적 추진체계 구축[1] [2] 1) 중장기적 전망 하에 수립된 「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4)」 의거, '20년 시행계획 수립('20.3.26.) 및 시행(54개 과제 중 41개 완료, 13개 계속 추진 / 이행률 75.9%) 2) 경찰 성평등정책의 지속·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평등정책 수립·추진 및 성주류화 사업 등에 관한 근거로써, 「경찰청 성평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정('20.7.23.) - 경찰조직 전반에 성평등 가치 내재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1] [2] 1) 〈행정규칙〉 '19년도 중앙정부부처 최초 본부 소관 행정규칙 대상 성별영향평가에 이어서 '20년도는 소속기관 소관 행정규칙 총 417개 성별영향평가, 115개 개정('20.12월)

부처명	주요 추진내용
	2) 〈홍보물·콘텐츠〉 전국 경찰관서에서 제작되는 정책·콘텐츠 대상 성별영향평가 실시(1,738건 검토) 및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 디지털성범죄 대응 홍보물·언론자료 점검(491건 검토) - 경찰 성평등 교육체계 설계 및 저변 확대[1) 2) 3)] 1) 全 직원 대상 생애주기별·직급별 성평등 교육체계 설계 ▵성평등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확충 2) 경찰 맞춤형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표준교육안 제작·활용, 코로나19 상황 대비 사이버 강의 콘텐츠 제작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 교육 실시(성평등 교육 이수율 92.6%) 3) 내부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업, 경찰인재개발원 內「성평등 전문강사 신규 양성과정」 운영('20.8월) → 양성평등전문강사 11명 신규양성 -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유·무형 인프라 형성[1) 2)] 1) 〈여성근무자 역량강화〉 여성인재개발과정(경찰인재개발원 / 1회 17명) 및 외부기관 연계하여 역량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근무자 네트워크 구축〉 조직 내 소수인 여성근무자들의 공식소통창구로서 ▵본청 주관 전국 순회 신임 여성근무자 간담회(9회) ▵소속기관 주관 여성근무자 간담회 운영(124회) -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수립[1)] 1)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T/F」 구성, 실태 파악 및 기능별 과제 발굴하여 종합대책 수립('20.9월), 내부 이행점검 및 외부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자 책임제」 도입 → 조치 불이행時 직무고발 등 조치 ▸가해자 인사관리(가·피해자 분리 및 인사 추적관리, 승진·주요보직 제한) 강화 ▸채용단계에서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경찰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면접 강화 ▸「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분기별) 보고 의무화, 이행점검 지속

라.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여성가족부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분야인 여성, 청소년, 가족, 권익증진 분과 외에도 홍보 및 조직, 법률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혁신·적극행정전략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수립부터 사업 추진, 대국민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류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였다.

'20년에는 '실·국별 주요 현안 및 사업추진 방안' 등의 안건으로 제10기 정책자문위원회 정책분과 회의를 총 11회 개최하였다.

※ (임기) 제10기 : 2019. 11. 20. ~ 2020. 11.19.(92명)

| 표 2-①-10 | 2020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분과(개최일)	참 석	주요내용
혁신·적극행정분과회의 (2020. 3. 9~13.)	• 혁신·적극행정분과위원 11명	• '20년 여성가족부 정책방향 제언
혁신·적극행정분과회의 (2020. 6. 22~26.)	• 혁신·적극행정분과위원 17명	• 주요 추진 사안 논의 등
혁신·적극행정분과회의 (2020. 9. 21~25.)	• 혁신·적극행정분과위원 17명	• 주요 현안보고 및 토론 등
여성정책분과회의 (2020. 1. 9.)	• 여성정책분과위원 14명	• 여성정책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여성정책분과회의 (2020. 9. 22~24.)	• 여성정책분과위원 15명	• 주요업무 추진방안 등 자문
청소년정책분과회의 (2020. 1. 8.)	• 청소년정책분과위원 14명	• '20년 청소년정책 방향 논의
청소년정책분과회의 (2020. 8. 14~21.)	• 청소년정책분과위원 15명	• 현안보고 및 주요 추진사업 논의
가족정책분과회의 (2020. 1. 3.)	• 가족정책분과위원 11명	• '20년 가족정책 업무계획 보고 및 정책 자문
가족정책분과회의 (2020. 6. 26~30.)	• 가족정책분과위원 14명	• '20년 가족정책 추진현황 보고 및 관련 자문
권익증진정책분과회의 (2020. 1. 8.)	• 권익증진정책분과위원 12명	• '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권익증진정책분과회의 (2020. 6. 17~23.)	• 권익증진정책분과위원 16명	• 현안보고 및 주요 추진사업 논의

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각 시·도에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시·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2-①-11| 2020년 시·도 국장회의 개최 현황

개최일자/장소	참 석	주요내용
2020.6.15. (정부서울청사)	•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기획관, 여성정책국 과장 등 • 17개 시·도 여성·가족·청소년 담당 국장	•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협조사항,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 지역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강화, 지자체 소관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관리방안, 코로나19 이후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지자체 정책우수사례 공유
2020.7.31. (정부서울청사)	• 여성가족부 장관, 권익증진국장, 정책보좌관, 여성정책과장, 권익지원과장 등 • 17개 시·도 여성·가족·청소년 담당 국장	• 지자체 성희롱·성폭력사건 대응체계 관련 협조사항, 지자체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계획,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안), 지자체별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
2020.11.18. (정부서울청사)	• 여성가족부 장관, 권익증진국장, 정책보좌관, 여성정책과장, 권익지원과장 등 • 17개 시 · 도 여성·가족·청소년 담당 국장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제 2 절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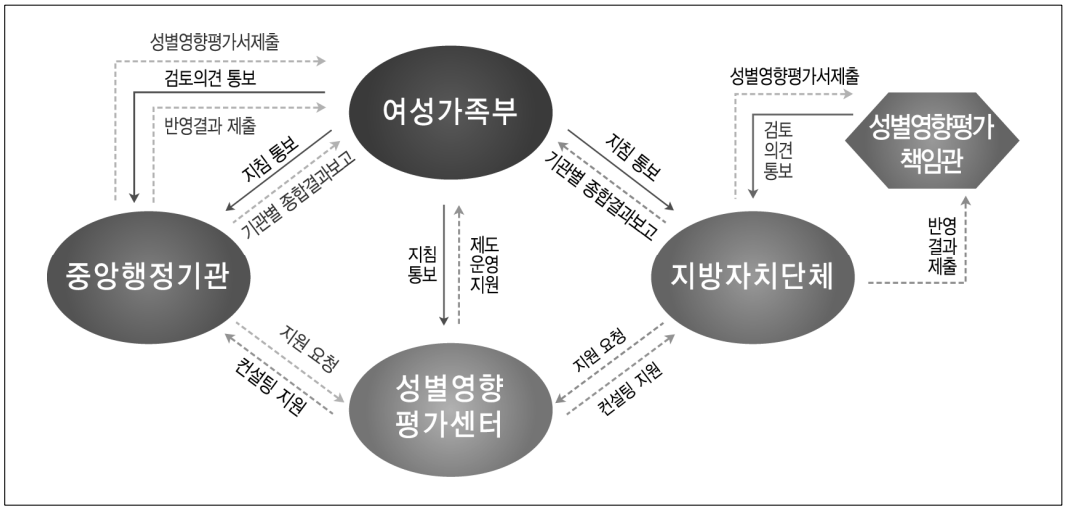
1. 성별영향평가 연혁 및 추진체계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1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12.3.16.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범위가 제·개정되는 모든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14년에는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공표하여 국민이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15년에는 제도 운영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권고 외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7년에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개선사항의 반영결과 제출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18년에는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 여성가족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정책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하였다. '19년부터는 과제 선정에서부터 정책환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해 개선권고 과제 이행률을 제고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내실화하였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제도 운영의 세부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① 각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서 작성·제출(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에게), ②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통보(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③ 검토의견서에서 '개선의견'을 받은 각 기관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④ 각 기관의 담당부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⑤ 여성가족부는 종합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한다.



|그림 2-②-1| 202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체계

2.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이 사업에서 제·개정 법령, 부처의 주요 사업과 중장기 계획으로 확대되었다.

’20년도에는 총 29,906건의 성별영향평가가 추진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는 총 2,332건으로 그 중 법령이 2,128건, 사업 204건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총 25,574건으로 그 중 법령이 19,934건, 계획 102건, 사업 7,538건의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다.

|표 2-②-1| 성별영향평가 연도별 추진 현황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4,468건	34,525건	33,195건	29,395건	29,906건
중앙	2,066건	1,646건	1,867건	1,921건	2,332건
지자체	31,792건	32,226건	30,699건	26,733건	26,789건
교육청	610건	653건	629건	741건	785건

|표 2-②-2| 202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세부 현황

2020년	중 앙	지자체(교육청 포함)	합 계
합계	2,332건	27,574건	29,906건
법령	2,128건	19,934건	22,062건
계획	-	102건	102건
사업	204건	7,538건	7,742건

한편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20년에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등 12개 과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관기관에 개선을 통보하게 된다.

표 2-②-3|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2021.6월 기준, 2021년 중 지속 권고 예정)

연번	정책명	정책개선(안) 주요내용	소관기관명
1	환경보건 종합계획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설계, 통계분석 및 결과활용 등 전단계에 걸친 성별차이 고려 및 성별 특성을 반영한생활용품 등 유해물질 관리 방안 포함 • 환경보건정책 추진체계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환경보건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통한 여성건강 대응역량 제고 방안 마련	환경부
2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내 근거 마련 • 연구개발사업 내용에 성인지 관점 확대 및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직문화 개선 등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별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 국가기술자격 여성취득 제고 방안 마련 및 여성의 진출이 용이한 신국가기술자격 종목 발굴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성별 격차 완화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4	국제결혼 지원사업	• 일회성이나 시혜성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지양하고 다문화 가정 정착지원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전환	해당 시도 및 시군구
5	노사관계 지원정책	• 성평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관련법 개정, 노사협의회 및 노사협의기구 구성·운영 시 성별 균형 규정 마련 • 노사관계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여성대표성·성평등 관련 교섭 사항 포함 등 정책개선안 마련	고용노동부
6	생활체감형 정책	• 지방자치단체 마스코트의 성차별 요소 점검 방안 마련 • 자동음성안내(ARS) 음성 목소리가 다양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로 서비스 되도록 개선안 마련 • 학교 교가·교훈의 성불평등 요소 점검 등	시도 및 시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도 교육청
7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 인공지능 산업의 성별 현황 관리 및 산업 내 성별 격차 완화 방안 마련 • 인공지능 기반 학문 분야 고등교육기관 교육과정에 윤리 과목 포함 등 인공지능 산업의 윤리성 및 성인지 관점 향상 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8	자살예방정책	• 성별·연령별 특성에 따른 자살행동 특징 및 대응을 위한 교육자료 및 매뉴얼 마련, 일반국민 대상 성별 내 연령대별, 직종별 등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성별 관점의 자살예방 개선안 마련	보건복지부
9	전문체육 분야 정책	• 스포츠 단체 임원 및 지도자 선발 시 성별 균형 참여 규정 마련 및 전문체육분야 성평등 인식 향상 강화 방안 등 제안	문화체육관광부

연번	정책명	정책개선(안) 주요내용	소관기관명
10	코로나19 대응 정책	• 코로나19 시기 일자리·돌봄·가정폭력분야 위기에 대해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보호 방안 확대, 감염병 위기 시 돌봄 서비스 및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마련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1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 학교폭력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예방·구제 방안 마련 및 사이버 폭력·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혐오에 대한 개선안 마련 등	교육부
12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 해양전문인력에 대한 성별 통계 조사·관리 및 해기사 교육 단계(학교, 관리직 승급교육 등)의 성평등 교육 강화 등 성평등한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방안 마련	해양수산부

한편 공무원들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및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교육을 적극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집합교육을 총 81회(5,921명)에 걸쳐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운영하였으며, 각 기관에서는 연중 별도의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20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 교육실적은 교육 유형별로 보면 비대면 교육* 총 24회(3,161명), 희망하는 기관에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교육은 총 8회(2,760명) 실시하였다.

* 코로나19로 기존 집합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표 2-②-4| **2020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위탁교육 중 직급별 참여 실적**

(단위 : 명)

구 분	전체	컨설턴트 등	일 반 직						특 정 직			
			소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경찰, 소방	교육, 연구직	기타
전 체	3,161	394	2,509	79	252	639	820	719	258	58	101	99
남 성	1,148	27	1,017	56	153	251	276	281	104	34	47	23
여 성	2,013	367	1,492	23	99	388	544	438	154	24	54	76

또한 양성평등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및 성인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연극형, 토크 콘서트, 사이버)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②-5| 2020년 성인지 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분	형식	개요 및 대상	내용	인원
1	젠더토크콘서트	중앙·지자체 공무원	음악, 미술, 문학, 대중문화 속의 양성평등	7,475
2	창의형 연극형 콘텐츠 교육	중앙·지자체 공무원	생활 속 성차별 사례	2,940
3	사이버 교육	중앙·지자체 공무원	양성평등·성주류화 패러다임 등	131,142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한편,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심층 분석을 거쳐 내실 있는 정책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처별 성평등 목표 사례 】

- **(교육부)** ①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②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언론, 미디어, 광고에서 양성평등 콘텐츠 확산
- **(고용노동부)** 일자리 진입과 경력 유지 과정에서 성차별 해소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 포함

3. 성인지 예산 추진실적 및 성과

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성평등한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키는 제도로,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10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10년 5월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11회계연도부터는 기금에 대해서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상사업 및 추진일정 등의 차이로 인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에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두 제도의 연계 기반을 마련하였고, ’15년 2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되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 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11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3년도 예산부터 모든 정부기관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20년에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기재부 훈령, ’20.10월 제정·’21.1월 시행)하여 ‘성인지 예·결산 상설 협의체’를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로 확대·개편하고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대상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였다.

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정부는 ’09년에 29개 중앙행정기관의 195개 사업 7.5조원 규모의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이래, ’17년에는 345개 사업 33.8조원 규모의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18년에는 261개 사업 25.4조원 규모의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20년에는 304개 사업 35.2조원 규모의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였다.

|표 2-②-6| 최근 4년간 성인지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수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사업수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사업수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사업수	예산액
예산	260	232,216	231,111	99.5	192	141,290	140,091	99.2	210	181,543	180,033	99.2	225	180,205
기금	85	124,149	120,704	97.2	69	134,098	131,022	97.7	74	170,538	166,016	97.3	79	172,649
합계	345	356,365	351,815	98.7	261	275,388	271,113	98.4	284	352,081	346,049	98.3	304	352,854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주요 특징은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계획서와의 연계를 위해 직접목적 사업의 경우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와 일치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양성평등담당관 신설에 따른 양성평등담당관의 성인지 예산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항목	2020년 성인지예산서		2021년 성인지예산서
성과 목표 설정	(직접목적사업) 사업의 고유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설정	⇨	(직접목적사업) 사업의 고유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설정 ***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와 동일하게 작성**
	(간접목적사업)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결산 등을 통해 제시된 성과목표 등 사업의 성평등 개선조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설정		(간접목적사업)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결산 등을 통해 제시된 성과목표 등 사업의 성평등 개선조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설정

| 표 2-②-7 | 2021년 국가 성인지 예산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업수	예산액
계	304	352,854
① 직접목적 사업	94	131,362
② 간접목적 사업	210	221,492

* **직접목적 사업**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는 등 성평등을 1차 목적으로 하는 사업(기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등)
* **간접목적 사업** :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사업 수행의 결과가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성별영향평가 후 개선사항이 도출된 사업 등)

’11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12년도에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하여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에 따라 ’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하였다. ’17년도부터는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대상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는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에 따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19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성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3절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1. 여성단체 협력·지원

여성정책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01년부터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을 실시하였다. 주요 여성정책 사안에 대해 민간단체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13년까지 추진되었던 공동협력사업은 사업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과의 정책연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4년부터 각 국(관)별로 예산을 분리 편성하였다.

'20년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은 2.95억원의 예산으로 88개 단체가 공모하여 15개 사업이 지원받았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①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8개 사업), ② 여성사회참여 확대(6개 사업), ③ 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1개 사업) 등 다양하게 지원되었다.

'20년도에는 사업 관리·운영 전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과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참여단체별 사업내용과 결과 등을 담은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사례집'도 제작하였다. 또한 사업 진행 및 성과를 민간단체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교육 및 워크숍 실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모사업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였다.

2.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

가. 국제회의 참가

’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APEC 여성경제회의(APEC Women and the Economy Forum) 등 주요 국제회의가 축소 및 비대면 개최로 전환되었으나, 국제기구 등에서 주최하는 화상회의 참여를 통해 우리 성평등 성과를 공유하고 성인지적 코로나19 대응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논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3차례 참석하여(4월, 6월, 9월) 코로나19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한 해법 등을 논의하였다. ’20.4.27.에 ‘코로나19와 젠더’를 주제로 개최된 화상회의는 유엔여성기구 총재를 비롯하여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금융공사(IFC) 및 각 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동 회의에 참석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여성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 ’20.6.9.에 ‘성인지적인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험’을 주제로 개최된 장관급 화상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국 국가들과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혁신적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성인지적인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였다. ’20.9.10.에는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에서의 성평등 증진’을 주제로 유엔여성기구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주최한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가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성인지적인 코로나19 대응 방안 및 재정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20.9.30.에는 APEC 21개 회원국 각료급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0 APEC 여성경제회의(화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0년 회의는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를 위한 지원 생태계 제고(Advancing Supportive Ecosystem for Women's Economic Empowerment)'라는 의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 수석대표(여성가족부 장관)는 동 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정 대상 생필품 긴급지원, 다문화 가족 대상 상담 및 자가격리 지침 통·번역 등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공유하였다.

'20.10.1.에는 제4차 세계여성회의 25주년 기념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가하였다. '성평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 실현 촉진'을 주제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볼칸 보즈키르(Volkan Bozkir) 유엔총회 의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와 각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위급 회의 발언을 통해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북경행동강령을 채택한 이후 우리 정부가 여성 대표성 제고 등 그간 이루어온 성과를 소개하고, 북경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년 믹타(MIKTA) 의장국으로서 터키 노동사회가족부와 함께 믹타(MIKTA) 5개국 여성·가족 담당 장관 화상회의를 공동 주최하였다. '20.10.8.에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선 여성'을 주제로 개최된 동 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장관들과 성인지적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소개하였다.

나. 여성 관련 국제협약 이행 평가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정부는 제8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정기보고서를 '15년 7월 대한민국

국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보고서에 대해 ’18년 2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심의가 진행되었다.

심의 후 ’18년 3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권고안을 포함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였으며, ’18년 12월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년 12월에는 동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21년 2월 점검결과를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였다.

2)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정부는「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이행을 위한 제1기 국가행동계획(’14~’17)과 제2기 국가행동계획(’18~’20)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행점검회의(연 2회) 개최를 통해 그 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하였다.

특히 ’20년에는 제2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재점검·보완하고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4월~11월)’, ‘공청회(11월)’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제3기 국가행동계획(’21~’23)은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구호·회복(Relief and Recovery), 이행점검(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5개 분야의 11개 목표,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분쟁예방, 평화, 활동, 국제개발협력 관련 종사자 여성·평화·안보 역량제고 △ 국방·외교·평화·통일·치안 분야에 여성참여 확대 및 거버넌스 확산 △ 군 관련 및 분쟁지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처벌강화 △ 북한이탈 여성 및 난민 여성 지원 △ 분쟁 관련 피해자 회복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3기 국가행동계획의 신규 이행 기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추가되어 총 10개 부처·기관이 국가행동계획 이행에 참여할 예정이며, 기존 민·관 합동 이행점검(연 2회) 방식을 기관별 자체 이행점검(연 1회, 민간전문가 참여), 민·관 합동 이행점검(연 1회)으로 변경하여 이행기관별 과제 담당자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다.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유엔여성기구(UN Women :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는 유엔 내 여성 이슈를 전담하는 유일한 기구로 '11년 1월 공식 출범하였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있어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모범국가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도적 역할 수행을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1년부터 매년 470만불 상당의 기여금을 동 기구에 제공하여 기여 순위 17위권을 유지하며 유엔 여성기구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유엔여성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12년) 및 부의장국('18년) 활동 등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11년 여성가족부와 유엔여성기구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유엔여성기구와 협의를 통해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성인지적 평화구축」 및 「성인지적 통계구축」, 「네팔 지진 피해여성 지원」, 「장애 여성·여아의 역량강화 지원」, 「여성·여아를 위한 안전도시 만들기」, 「스리랑카 장애여성을 위한 성인지적 고용정책」, 「라오스 여성폭력 마을조정단 연수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촌여성 역량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 「북경+25 준비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성인지적 재정정책 및 회복 지원」, 「아세안 여성·평화·안보 증진」, 「여성, 평화+사이버 안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의 성인지적 대응을 지원하고 아세안 지역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력파견을 통해 동 기관과의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표 2-③-1| 여성가족부 – 유엔여성기구 간 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

분 류	주 요 내 용
목 적	• 유엔여성기구와 동 기구의 활동 수행 지원 • 당사자 간 협력체계 규정 및 공동 협력 업무 촉진
협력분야	•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 확대 • 여성, 특히 가장 소외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확대 • 평화, 안보, 구호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리더십 증대 • 계획 및 예산 편성의 모든 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대응성 강화
협력유형	• 공동 관심 분야의 세미나, 워크숍 및 기술연수 합동 개최 • 대한민국은 법과 규정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유엔여성기구의 사업이나 다른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및 비지정 기여금을 공여하고, 유엔 여성기구는 기구의 재정규칙과 규정에 따라 기여금 수령 및 집행 •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인적 자원 교류 • 기타 당사자 간의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된 유형의 협력
효력발생	• 2011.12.14.(당사자 대표가 서명한 날)
효력종료	•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일방 당사자의 서면 통보(3개월 후)

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KOWIN)대회는 2021년으로 연기되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해외 12개 지역본부에서 재외 한인여성 간 연대·교류 강화 및 현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활성화를 위한 사업(18개)을 추진하였다.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차세대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현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역량강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하여 비대면 네트워킹 사업 및 현지 사회의 코로나19 극복 및 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마. 여성 관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1) 인도네시아 여성 역량강화 지원

개도국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개도국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베트남('11~'15년), 라오스('16~'19년)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아동보호부(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지역의 여성 대상 전자상거래, 봉제 등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재 및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한-인도네시아 공동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여성 역량강화 관련 정책 교류를 실시하였다.

2) 개도국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가 심각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여 개도국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경제적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개도국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13년~'18년 캄보디아에서 실시하였고, '19년~'23년 몽골에서 실시하고 있다.

'20년도에는 울란바토르(수도지역), 자민우드(국경지역), 우므느고비(광산지역)와 '19년 사전 조사를 통해 성매매 등 여성폭력이 많은 지역으로 조사 된 도르노고비, 도르노드(국경지역)가 추가되어 총 5개 지역의 학생, 학부모, 여성폭력 고위험 지역 마을주민, 취약계층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권, 젠더기반 폭력의 이해, 성착취 인신매매와 안전한 이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성착취 인신매매 예방교육(46회, 1,801명)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해여성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기술 교육(제빵, 재봉, 미용, 네일아트 등 10명)과 자립·자활 프로그램(46명) 등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몽골 현지 국민을 대상으로 몽골 내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5회, 언론, SNS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근절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몽골노동사회보호부, 몽골범죄예방조정위원회, 경찰청 등 몽골 정부, 언론 등 몽골 내 여론 주도층이 참여한 정책 워크숍(1회, '20.12월)을 개최하였다.

그 밖에 정책제안 논문 공모전을 통하여('20.6월~'20.7월) 성매매·성착취·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에 관해 연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제안 논문 공모전 논문집을 발간하여 SNS를 통한 업로드 및 정책워크숍에서 배포하였다.

우리 정부의 ODA사업 종료이후에도 몽골 내에서 독립적으로 피해자를 식별·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자 식별 및 보호 가이드라인 수립을 목표로 협의체(몽골노동사회보호부, 내무사법부, 경찰청, NGO 등)도 구성('19년)하여 '20년 수차례 회의를(12회) 통하여 「몽골 인신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 식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바.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맞이하여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이 출범하였다. 성평등 포럼은 '20년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성평등과 코로나19위기'를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정부기관, 시민사회, 일반시민, 학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기조연설에서는 기타 센 인도공공보건재단 석좌교수가 '글로벌 성평등 의제의 성과와 새로운 위협'을 주제로,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가 '한국 성평등 운동(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세션 1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과 새로운 세대'를 주제로 그간의 북경 행동강령의 성과와 의미,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세션 2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20주년과 새로운 세대'를 주제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국가행동계획 이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션 3은 '여성과 팬데믹 Ⅰ: 팬데믹과 여성의 삶', 세션 4는 '여성과 팬데믹 Ⅱ : 팬데믹 이후의 변화'를 주제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평등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의 성과를 포함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 성과 및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었으며,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제 4 절

양성평등기금 운용

1. 기금 조성 및 자산 운용

가. 기금 조성 등

’20년도에는 복권기금 전입금 4,037억원, 일반회계전입금 71억원, 이자 및 기타수익 106억원 등 총 4,214억원의 수입과, 사업비 및 기타경비로 4,175억원이 지출되어 ’20년도 말 현재 양성평등기금 조성액 누계는 약 278억원이다. 이는 전년 말 대비 38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 표 2-④-1 | 양성평등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조성내역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입	• 복권기금전입금	205,783	225,903	361,972	403,736
	• 일반회계전입금	-	10,300	47,233	7,064
	• 민간출연금	-	-	-	-
	• 운용수익	12,797	10,175	4,093	10,550
	소 계	218,580	246,378	413,298	421,350
지출	• 사업비 및 기타 기금관리비 등	214,017	238,141	414,314	417,518
순조성액		4,563	8,237	(1,016)	3,832
조성액 누계		16,727	24,964	23,948	27,780

※ 조성액 누계는 해당년도까지의 조성액으로 전년도 조성액 누계에서 해당년도 순 조성액을 합한 금액임

나. 자산 운용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하여 자산운용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연기금투자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8년 11월 양성평등기금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자산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20년도 자산운용수익률은 1.02%로 기준수익률(0.96%) 대비 0.06%p 초과수익을 달성하였으며 '19년도 자산운용수익률(1.73%) 보다 0.71%p 감소하였다.

|표 2-④-2|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운용수익률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운용수익률(%)	1.36	1.71	1.73	1.02

2. 사업추진 현황

가. 총괄

'20년에는 여성아동인권보호및가족지원 프로그램에 4,097억원을 지출하였다. 이는「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에 따른 복권기금 전입금 4,037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71억원을 재원으로 하였다. 그 외 복권기금 반납액 81억원 등을 포함한 '20년도 총 지출액은 4,178억원(여유자금예치금제외)이며 이는 전년도 지출액 4,142억원에 비해 36억원(0.87%)이 증가한 규모다.

나. 주요 사업내용

'20년에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2,615억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 41억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사업 66억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827억원을 투입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와 자녀 성장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 152억원,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13억원,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사업 314억원,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사업 59억원,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사업 6억원을 투입하여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서비스 확대 등 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④-3| 2020년 양성평등기금 주요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비고
합 계		406,200	410,894	409,671	-
기금관리비		5	5	3	-
사업비 총계		406,195	410,889	409,667	-
가족기능강화	소 계	351,313	356,007	355,186	-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54,412	261,476	261,426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4,100	4,100	4,094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6,602	6,602	6,597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85,512	83,142	82,729	-
	•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3년주기)	687	687	340	-
여성·아동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소 계	54,882	54,882	54,481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5,245	15,245	15,245	-
	•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1,329	1,329	1,326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31,508	31,508	31,393	-
	•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6,200	6,200	5,917	-
	•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600	600	600	-

3. 2020년 기금사업의 특징

’20년도 재정 운용 결과, 총 수익은 4,214억원이 발생한 반면 사업비 등 총 비용은 4,175억원이 발생하여 38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20년도 총 수익과 총 비용은 전년도 대비 각각 1.9%, 0.7% 증가하였으며, 수익은 ’20년도 복권기금 전입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19년도에 비해 16억원, 지출은 사업비가 10억원 증가한 것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2-④-4|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익	218,580	246,378	413,298	421,350
비용 (사업비 등)	214,017	238,141	414,314	417,518
당기순이익	4,563	8,237	(1,016)	3,832

제 5 절

성평등 문화·의식 확산

1. 성평등 의식 교육 및 진흥사업

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 및 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정책의 수립은 물론 이를 확산·정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성평등 교육을 수행·지원하고 있다.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주요연혁은 아래와 같다.

- 2003. 3.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 2003. 8~9. 중앙·지방공무원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행정안전부)
- 2004. 12. 교육훈련발전 유공 기관상 수상(중앙인사위원회)
- 2006.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특수법인 전환
- 2010. 7. 원격교육연수원 설립 승인(교육과학기술부)
- 2013. 1.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4. 6. 고양캠퍼스 개원

다. 운영현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이사(10명), 감사(1명) 및 원장, 3본부, 1실, 9부 2센터 1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정원 56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⑤-1| 2020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원 현황

(단위 : 명)

직급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총계
정원	1	2	7	11	14	21	56

'20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예산 현황을 보면 총 수입 예산 11,610백만원 중 정부출연금(일반회계)이 75.4%, 자체재원이 24.6%이며, 총 지출예산은 인건비 43.1%, 경상운영비 8.1%, 사업비 47.2%, 예비비 1.5%를 포함하여 11,610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표 2-⑤-2| 2020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11,610	계	11,610
정부출연금* (일반회계)	8,752	인건비	5,008
		경상운영비**	940
자체재원	2,858	사업비	5,483
		예비비	179

* 위탁금(320-02)「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제외

** '20년 추경감액(△42백만원, 경상운영비 5% 공통) 반영

라. 주요 사업실적

1) 집합교육사업 실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20년 교육실적을 보면 성인지 정책, 전문인력양성 등 2개 분야에서 자체교육 인원이 총 15,289명이었다. 교육별로는 성인지 정책 6,870명, 전문인력양성 8,419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419명(42.0%), 여성은 8,870명(58.0%)으로 여성 교육생이 남성 교육생에 비해 2,451명 더 많았다.

성인지 정책 교육인원은 6,870명(남성 3,855명(56.1%), 여성 3,015명(43.9%))으로, 이 중 3급 이상 및 4~9급 등 일반 공무원 5,526명, 군인 및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 810명, 별정·계약직 등 기타 공무원 99명,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 등 4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앙부처 공무원 및 정부정책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특화된 성인지 역량강화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과 기관별 성인지 역량에 기반한 조직문화 중심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정책형성·실행과정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성평등 의식 함양과 성인지 정책 기획·집행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전문인력양성 중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의 교육인원은 3,273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교육인원이 각각 343명(10.5%), 여성 2,930명(89.5%)으로 여성의 비율이 대부분인 특징을 보였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고, 교육 대상 및 주제별 특화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과정을 운영하는 등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전문인력양성 중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은 5,146명(남성 2,221명(43.2%), 여성 2,925명(56.8%))이 참여하였으며, 현장의 필요도를 반영한 교육 기획 및 운영, 단계별 고충처리 업무 매뉴얼 개선·배포 등으로 고충상담원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였다.

|표 2-⑤-3| 2020년 교육별 집합교육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 %)

구 분		교육 목표	교 육 실 적									달성률 (%)
			공무원			일반인			총 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성인지 정책		6,000	3,507	2,928	6,435	348	87	435	3,855	3,015	6,870	114.5
전문 인력 양성	전문강사 양성과정	3,260	101	512	613	242	2,418	2,660	343	2,930	3,273	100.4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4,000	935	1,264	2,199	1,286	1,661	2,947	2,221	2,925	5,146	128.7
합계		13,260	4,543	4,704	9,247	1,876	4,166	6,042	6,419	8,870	15,289	115.3

’20년도에는 목표 인원(13,260명)을 2,029명 초과한 총 15,289명을 교육하여 115.3%의 달성률을 보였다. 한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품질 및 효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결과지표인 ‘양성평등 인식변화 수준*’을 ’18년 개발 후 적용하여 ’20년에는 3점 만점에 1.87점의 결과를 보였다.

* **양성평등 인식 변화 수준**(점) : 교육생에 대한 양성평등 인식변화를 7점(-3점~+3점) 척도로 조사한 평균값

2) 사이버교육사업

사이버교육은 공공기관 종사자, 교원, 대학교직원, 공무원, 일반인 대상의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교육(114,321명)을 실시하였다.

교원 대상의 원격교육연수원은 성평등 및 폭력예방 연수(6,566명)를 추진하였고, 정규과정 이 외에 교원이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상시연수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원격연수 내실화를 위한 교원 성평등 원격연수 교육과정 로드맵 및 역량모델 개발로 체계적인 연수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환경변화에 맞게 다양한 원격연수 형태를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교육부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결과('20. 12월) "최고등급" 및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여, 대외적으로 원격연수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3) 모바일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

'20년 한 해 동안 개발된 신규 모바일 교육콘텐츠는 총 129건으로 강의 영상 외에도 카드뉴스, 애니메이션, 웹툰, 인포그래픽, 웹 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대학교 인권센터 및 공공기관 등의 교육 현장과 일상 속에서 활용되어 성평등의 폭넓은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비대면 교육 활성화에 대비한 모바일 플랫폼 '젠더온(genderon.kigepe.or.kr)의 서버 안정화와 기능 개선으로 온라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유튜브 등 SNS 동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콘텐츠 확산을 도모하였다. 또한 총 34개 기관('20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등 신규 네트워크 기관 확대)과 콘텐츠를 연중 공유·협력하였으며, 매월 이용자 대상 성평등 콘텐츠 뉴스 '젠더온레터'를 발송하고, 2020년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과 우수작 대상의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콘텐츠를 발굴, 시민 전문가를 지원하는 등 전 국민 대상의 콘텐츠 배포·확산을 추진하였다.

4) 양성평등교육 맥락적 구조화 및 다변화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대상의 일상 맥락에 기반 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양성평등교육 맥락적 구조화 및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 대상의 생애주기 및 직무현장별 특성에 맞춘 교육 내용 구성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용 콘텐츠 개발 등 교육 현장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형식 다변화 추진으로 콘텐츠 실효성과 공감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20년에는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초·중등 및 유치원까지 대상을 확장하여 교과연계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7종을 개발하고, 영화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성인기·직무현장별 교육 콘텐츠 7종 등 총 14종의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또한 초·중등 교사 시범연수 및 본원 전문강사 역량강화 과정 연계를 통해 콘텐츠를 보급하고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5) 양성평등학교 운영 지원

학교교육 내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실천 및 운영사례의 발굴·확산하고자 양성평등학교를 운영·지원하였다. ’20년에는 양성평등 연구학교 자체 운영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정 연구·중점학교와 연계하여 양성평등 교육 자료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컨설팅 등 학교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여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별 운영사례를 발굴하였다.

6)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

양성평등 가치를 담은 다양한 작품의 공모 및 활용을 통한 의식 확산을 위해 ‘제11회 2020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여성가족부·교육부·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의 후원을 받아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문학 작품 등을 공모해 총 1,235점을 접수하였고, 여성가족부 장관상 등 총 128점을 시상했다. 수상작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평등한 문화 감수성함양을 위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어 양성평등 교육 자료, 행사, 캠페인에 활용되었다.

7)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매체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교육 등 미디어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년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언론보도, 웹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였으며, 예능·오락, 시사보도 등의 방송 콘텐츠 및 인터넷기사, 유튜브 썸네일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아우르는 내용분석을 추진함으로써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였다.

2020년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언론보도 내용분석 결과, 성범죄를 선정적으로 소비하고 가해자를 비정상적 존재로 묘사하여 성범죄의 본질을 흐리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웹툰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흥미 소재로 가볍게 활용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한편 방송·온라인 콘텐츠 내용분석 결과, 예능·오락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에 대한 외모 평가가 문제로 지적되었고, 광고와 홈쇼핑에서는 여성을 전통적인 돌봄의 역할로 국한시키는 문제로 드러났다. 시사보도와 뉴스에서는 성비와 연령에서의 불균형이, 공영방송 유아동 프로그램에서는 캐릭터의 성격이나 행동, 외모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이 발견됐다. 온라인 기반 장르에서는 성적 대상화 문제가 알고리즘으로 지속 노출되고 일상적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미디어 콘텐츠가 소비되는 현 상황에서 대중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의 성평등 미디어 교육을 대면·비대면 동시 추진하였다. 전국 시도교육청 177개교 대상으로 원격 수업용 성인지 미디어 비평 영상 및 학습 자료를 지원하였으며, 대면 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대면 교육도 병행되었다. 또한 미디어 생산자인 방송·언론인 대상 교육이 신규 추진됨으로써 성평등 미디어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미디어 성인지감수성을 점검해보는 시민 대상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성평등 미디어 포럼을 주최함으로써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8)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지역 간 정보교류 및 공유 확대를 위한 공공네트워크인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는 국내 성평등 교육기관·여성정책 및 여성인력개발기관·평생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년 현재 17개 기관이 참여한 정기 및 실무 협의회 4회 개최를 통해 회원기관 간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운영하였다. 12개 기관이 참여한 공동협력사업은 지역·기관 별로 교육·행사·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며, 전국적인 사업으로 전개하여 상호 연대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회원기관 간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관련 프로그램과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정보 및 동향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국적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한편, 국외 양성평등정책 교육 및 교류협력 사업으로는 '19년 신설한 '아시아 젠더전문가 양성평등 및 협력(AGenT)'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축적된 전문 강사 훈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성평등 트레이너를 위한 성평등 교육 역량강화 사업으로 선진적인 교육 훈련을 위해 해외 전문가와 협력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계적 M&E(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질적 관리에도 힘썼다. 국외공무원 양성평등 정책 교육사업은 대상을 다각화 하여 UN등 국제기구의 글로벌 젠더프레임 워크에 대한 교육을 위해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성평등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국제 심포지엄(주제 : 디지털 성폭력 : 예방과 교육) 개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교육 방법론 및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국제 공조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였다.

2. 양성평등주간 운영

양성평등주간(9. 1.~9. 7.)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기간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근거로

지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15. 7월)에 따라 '96년부터 운영되던 여성주간이 '15년부터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되었고, '19년 여권통문의날(9.1.)이 제정되며 이를 함께 기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주간이 변경(7월 첫째주 → 9월 첫째주) 되었다.

가. 2020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20년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9.1.)은 '성평등을 향한 지금, 여기서의 한 발'을 슬로건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25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앞을 보며 미래로 한 발을 내딛는 의지를 담아 주제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기념행사를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양성평등 진흥 유공자 시상 등을 통해 일상에서 평등을 실현하는 노력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고취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표 2-⑤-4| 역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현황

구 분	2017년 양성평등주간	2018년 양성평등주간	2019년 양성평등주간	2020년 양성평등주간
일시	2017. 7. 7.(금)	2018. 7. 5.(목)	2019. 7. 4.(목)	2020.9.2.(수)
장소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주최 (주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참석인원	500여명	500여명	500여명	10여명*
주요인사	국무총리 및 수상자 등	국무총리 및 수상자 등	국무총리 및 수상자 등	장관 및 수상자 등
주제	함께하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평등을 일상으로	평등을 일상으로 - 함께 한 100년, 함께 할 100년	성평등을 향한 지금, 여기서의 한 발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행사규모 축소

나. 유공자 포상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에 대하여 훈장 3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42명 등 총 59명을 대상으로 시상하였다.

|표 2-⑤-5| 2020년 양성평등주간 유공자포상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표창
2020년 양성평등주간	59	3 (국민훈장 3)	2 (국민포장 2)	6	6	42

다. 양성평등주간 홍보

주제영상 및 슬로건 제작·배포와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별 기념행사 운영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하철 스크린 자막 광고 및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전개를 통해 양성평등주간에 대한 의미 확산과 가치를 공유하였다.

3.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

성평등 문화 확산에 공헌한 대중매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남녀평등상'이 '99년에 제정되었으며, '12년에는 상명이 '양성평등상'으로 변경되었다. '13년 보도부문을 신설한 후 '15년 '양성평등 미디어상'으로 상명을 바꾸어 '20년 22회를 맞이하였다.

가. 방송부문

방송부문은 '19년 10월 1일부터 '20년 9월 30일까지 방영된 지상파 및 유선 방송사(라디오 방송 포함) 등에서 제작 편성한 프로그램 중 성평등 문화 실천과 의식 제고에 기여한 작품에 시상하였다.

수상작은 각 방송사에서 출품한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학계 교수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 투표를 거쳐 최종 14편을 선정하였다. 대상(대통령상)은 〈KBS〉에서 출품한 다큐 인사이트 '다큐멘터리 개그우먼'이 수상하였고,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은 〈SBS스페셜〉 혀를 깨물다 - 74세 최말자의 역사적 여름, 〈KBS 1라디오〉 6.25전쟁 70주년 기념 특별기획 '나는 여자의용군입니다', 〈MBC충북〉 다큐멘터리 '아이엠비너스',〈KBS〉 시사직격 '누가 웰컴 투 비디오를 만들었나', 'N번방의 비극,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EBS〉 딩동댕 유치원-또또리 숲과 요정 친구들 이야기 숲 '만약에'-신데렐라 外, 〈KBS전주〉 뮤직휴먼 다큐멘터리 '할미넴', 〈KBS〉 드라마 스페셜 2019 '사교-땐스의 이해'등 7편이 수상하였다.

그 밖에 〈MBC경남〉 혜민정음, 〈JTBC〉 방구석 1열 '벡델데이 2020 특집 : 윤희에게, 우아한 거짓말', 〈KBS〉 시사기획 창 'N번방은 법을 먹고 자랐다', 〈EBS〉 세상을 잇는 다큐 잇it '가족사진', 〈SBS〉 8뉴스 '2020트랜스젠더 인권기획 연속보도',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등 6편이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다.

나. 보도부문

보도부문은 '19년 10월 1일부터 '20년 9월 30일까지 보도된 신문, 주간지 등 보도매체의 기사 중 성평등 문화 실천과 의식 제고에 기여한 작품에 시상하였다.

수상작은 각 언론사에서 출품한 보도물 가운데 학계 교수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 투표를 거쳐 최종 9편을 선정하였다. 대상(국무총리상)은 〈한겨레신문〉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연속보도가 차지하였고,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은 〈경향신문〉 가장 보통의 차별, 〈오마이뉴스〉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서울신문〉 '낙태죄 헌법 불합치 1년' 기획, 〈세계일보〉디지털 성범죄,

그들의 죗값이 수상하였다. 〈세계일보〉 미투, 그 이후의 삶, 〈경향신문〉 성교육, 이젠 젠더교육이다, 〈한국일보〉 新모던패밀리의 가족사진, 〈한겨레신문〉 이유리의 그림 속 여성 등 4편은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다.

|표 2-⑤-6|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내역 종합

연 도	방송 부문	보도 부문
22회 (2020년)	• 일시 : 12. 3. – 대상 : KBS 다큐 인사이트 다큐멘터리 개그우먼 – 최우수상 7편 – 우수상 6편	• 일시 : 12. 3. – 대상 : 한겨레신문사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연속보도 – 최우수상 4편 – 우수상 4편
21회 (2019년)	• 일시 : 12. 5. – 대상 : SBS 8뉴스 '마부작침' 성폭력 범죄 3부작 – 최우수상 7편 – 우수상 6편	• 일시 : 12. 5. – 대상 : 한겨레신문사 미투 용기가 만든 1년 – 최우수상 5편 – 우수상 4편
20회 (2018년)	• 일시 : 12. 4. – 대상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 최우수상 7편 – 우수상 6편	• 일시 : 12. 4. – 대상 : 경향신문 미투의 혁명, 혁명의 미투 – 최우수상 5편 – 우수상 4편
19회 (2017년)	• 일시 : 12. 18. – 대상 : SBS 스페셜 82년생 김지영-세상 절반의 이야기 – 최우수상 5편 – 우수상 5편	• 일시 : 12. 18. – 대상 : 한겨레 몰카, 디지털성범죄다 – 최우수상 5편 – 우수상 4편
18회 (2016년)	• 일시 : 12. 6. – 대상 : KBS 추적60분 불평등 육아의 경고, 2020 인구절벽 – 최우수상 3편 – 우수상 5편 – 장려상 7편	• 일시 : 12. 6. – 대상 : 국민일보 가족 안의 괴물, 가정폭력 – 최우수상 2편 – 우수상 3편 – 장려상 6편
17회 (2015년)	• 일시 : 12. 9. – 대상 : EBS뉴스 연중기획 엄마의 두 번째 출근 – 최우수상 3편 – 우수상 5편 – 장려상 7편	• 일시 : 12. 9. – 대상 : 서울신문 女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가 산다 – 최우수상 2편 – 우수상 3편 – 장려상 6편
16회 (2014년)	• 일시 : 12. 16. – 대상 : EBS스페셜 프로젝트 다문화 아빠학교 – 최우수상 3편 – 우수상 5편 – 장려상 7편	• 일시 : 12. 16. – 대상 : 서울신문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 최우수상 2편 – 우수상 3편 – 장려상 6편

제 6 절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성과

정부는 ’17년도에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국정과제 66)의 핵심 과제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18~’22년)」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17.11월)하였다. 동 계획에서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가 추진과제로 최초 포함되었으며, 각 부문별 ’22년까지 달성 목표를 확정하였다. 이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이행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 표 2-⑥-1 | 공공부문별 여성 대표성 추진실적**(2019~2020년)**

(단위 : %, 각연도 12.31일 기준)

부 문	2019년	2020년
고위공무원단	7.9	8.5
본부 과장급(4급 이상)	20.8	22.8
지방 과장급(5급 이상)	17.8	20.8
공공기관 임원	21.1	22.1
공공기관 관리자	25.1	26.4
지방공기업 관리자	9.1	10.6
국립대 교수	17.3	18.1
교장 교감	44.1	44.5
군인 간부	6.8	7.5
일반경찰	12.6	13.4
해양경찰	12.7	13.2
정부위원회	43.0	43.2

2020년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2년('19~'20) 연속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12개 전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등 여성 참여가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19년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이 20%를 상회한데 이어, 지방공기업 관리자(10.6%)는 2022년 목표(10.0%)까지, 지방과장급(20.8%)은 2021년 목표까지 조기에 달성하여 최초로 20%를 넘어서는 등 중앙에서 지방으로 여성대표성 제고 추진성과가 확산되었다.

아울러, 그간 여성의 진출이 저조하였던 군·경찰 분야에서도 '19년도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인사·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다수 이루어졌다. 우선,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정부부문에 균형인사를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균형인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균형인사 성과 공유대회('20.10.)'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확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여성·장애인·이공계·사회통합형 인재 등 균형인사 통계를 제시한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20.8)(중앙부처 → 지자체·공공기관 포함)하는 등 균형인사 확대 추진기반을 강화하였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인사 확대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19.6.18, '19.11.5)」,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19.6.18)」,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19.11.5)」 등 개정을 통해 광역(실·국장급)·기초(과장급 이상)에 여성공무원 1명 이상 임용과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여성 위촉위원 비율 40%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도화('20.1)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 고위·관리직 임용을 확대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6.18)에 따른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전면 시행('19.7.1)과 여성임원 1명 이상 임명 노력 등에 힘입어 여성임원이 대폭 확대되었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151개 공사·공단)으로 확대하고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19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20.1.29)으로 국·공립 대학 교원의 특정성별 4분의 3 초과금지 노력규정을 신설하였고,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20.7.30.)을 통해 국립대학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 하였다. 한편, 2020년에 처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별 여성교원 신규임용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수립('20.6월)하였으며, 교장·교감은 시·도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반기별 이행점검을 통해 여성 교장·교감 임용이 44.5%까지 증가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 개정('19.5.27)과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2년)」 수립 등을 통해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직위 등 주요 보직에 여성 군인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과 여군 상위계급 진출도 확대하는 한편,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2)」 수립('20.1월) 하는 등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과 상위계급 진출도 확대되었다.

경찰 분야에서는 관리직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주요 직위에 여성 임용을 확대하였고, 경찰 역사상 최초 여성 경찰대학장이 임명되는 등 여성경찰과 여성해양경찰의 관리직 진출이 늘어났다. 일반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남아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21년 입교)을 위한 체력기준을 정비하고,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정('20.2)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경찰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여성 경찰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다.

2. 여성공무원 현황

가. 전체 여성공무원 현황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년 말 현재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을 통틀어 여성공무원은 543,151명으로 전체 공무원 1,134,995명의 4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년 526,700명과 비교하여 볼 때 16,451명이 증가한 것이다.

|표 2-⑥-2|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9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인원	978,087 (+9,251)		1,060,632 (+14,145)	1,085,849 (+25,217)	1,113,873 (+28,024)	1,134,995 (+21,122)
여성	400,571 (+5,107)		488,387 (+15,381)	507,027 (+18,640)	526,700 (+19,673)	543,151 (+16,451)
비율	41.0		46.0	46.7	47.3	47.9

※ 출처 : 인사혁신처, 2020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나. 직종별 및 계급별 여성공무원

1)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 746,267명 중 여성은 357,170명으로 47.9%를 차지하고 있다. 직종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직이 173,727명 중에서 여성이 64,748명으로 37.3%, 특정직은 571,919명 중에서 292,224명으로 51.1%, 별정직은 489명 중 180명으로 36.8%를 차지하였다.

| 표 2-⑥-3 | 2020년 국가공무원 직종별 여성 현황

(2020.12.31. 기준, 단위 : 명, %)

구 분	현 원		
	전 체	여 성	여성비율(%)
합계	746,267	357,170	47.9%
정무직 계	132	18	13.6%
일반직 계	173,727	64,748	37.3%
고위공무원	1,087	70	6.4%
3급	825	110	13.3%
4급	6,332	1,284	20.3%
5급	15,855	4,147	26.2%
6급	34,137	11,381	33.3%
7급	44,131	20,646	46.8%
8급	22,757	10,853	47.7%
9급	13,007	6,022	46.3%
전문직	220	46	20.9%
연구직	5,875	2,556	43.5%
지도직	131	48	36.6%
우정직	23,138	4,319	18.7%
전문경력관	1,083	423	39.1%
시간선택제	1,585	1,322	83.4%
일반임기제	2,223	846	38.1%
전문임기제	957	349	36.5%
한시임기제	384	326	84.9%
특정직 계	571,919	292,224	51.1%
외 무	2,082	833	40.0%
경 찰	138,764	17,786	12.8%
소 방	57,611	5,614	9.7%
검 사	2,171	694	32.0%
교 육	371,291	267,297	72.0%
별정직 계	489	180	36.8%

※ 출처 : 인사혁신처, 2020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국가공무원 중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1,903명으로 전체의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19년 1,735명(전체의 18.0%)과 비교하여 볼 때 168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의 여성공무원도 132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표 2-⑥-4|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2020.12.31. 기준, 단위 :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 성	1,067	1,237	1,380	1,531	1,735	1,903
비 율	12.1	13.5	14.8	16.2	18.0	19.5

※ 출처 : 인사혁신처, 행정부 국가공무원 2020년 인사통계

※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 기준, 일반(연구·지도직, 일반임기제포함)·외무·별정직

|표 2-⑥-5| 중앙행정기관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

(2020.12.31. 기준, 단위 :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 성	71	86	97	102	122	132
비 율	4.7	5.7	6.5	6.7	7.9	8.5

※ 출처 : 인사혁신처, 행정부 국가공무원 2020년 인사통계

※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원 제외, 지자체 근무 국가공무원 포함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136,071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직(시간선택제 채용, 연구·지도직,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일반임기제 포함) 135,714명(99.7%), 특정직 227(0.2%), 별정직 121명, 정무직 9명 순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5급 상당 이상 여성공무원은 전체 24,834명 중 5,165명(전체 5급 상당 이상의 20.8%)으로 지난해 4,325명에서 840명 증가하였다. 7급 및 9급 신규 채용 시 '05년부터 여성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50.0%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

| 표 2-⑥-6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2020.12.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지방자치단체		
		전 체	여 성	비 율
계		292,182	136,071	46.6%
일반직	소 계	290,417	135,714	46.7%
	고위공무원	39	2	5.1%
	1급	8	-	0.0%
	2급	79	5	6.3%
	3급	406	29	7.1%
	4급	3,171	370	11.7%
	5급	18,677	4,079	21.8%
	6급	81,637	34,158	41.8%
	7급	80,503	39,120	48.6%
	8급	47,577	27,252	57.3%
	9급	40,528	22,550	55.6%
	연구관	681	174	25.6%
	연구사	3,242	1,650	50.9%
	지도관	459	124	27.0%
	지도사	3,944	1,699	43.1%
	전문경력관	797	617	77.4%
	전담직위	67	10	14.9%
	일반임기제	6,522	2,784	42.7%
	시간선택제	2,224	1,635	73.5%
특정직	소 계	946	227	24.0%
	교육직	799	207	25.9%
	자치경찰	147	20	13.6%
정무직		244	9	3.7%
별정직		575	121	21.0%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직공무원 포함

다.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및 육성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

'03년부터 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0% 미만일 때 하한 성적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 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인사혁신처 주관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행정안전부 주관 7·8·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선발단위에 적용된다(단,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25명으로, 5급 7명, 7급 11명, 9급 7명이다. 이중 여성은 5급 4명, 7급 11명, 9급 2명으로 총 17명이고 남성은 5급 3명, 7급 0명, 9급 5명으로 총 8명이다.

'20년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채용 중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285명으로 작년 227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8·9급 추가합격자 전체 282명 중 남성이 221명으로 78.4%, 여성이 61명으로 21.6%를 차지하는 등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추가합격 비율이 훨씬 높았다.

|표 2-⑥-7| 2020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추가합격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5급			7급			9급(지방 8·9급)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국가직	25 (100)	8 (32.0)	17 (68.0)	7 (100)	3 (42.9)	4 (57.1)	11 (100)	-	11 (100)	7 (100)	5 (71.4)	2 (28.6)
지방직	285 (100)	222 (77.9)	63 (22.1)	-	-	-	3 (100)	1 (33.3)	2 (66.7)	282 (100)	221 (78.4)	61 (21.6)

※ 출처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내부자료

2)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정부가 여성공무원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전체적인 여성공무원 비율은 높아졌으나, 여성관리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공직 내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1차 '07~'11, 2차 '12~'17)에 이어 2018년부터는 대상을 고위공무원단과 본부과장급으로 확대하여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2018~2022)」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본부과장급의 경우 '19년 20.8%로 당초 '20년 임용 목표비율 19.8%를 조기 달성하여 향후 3개년('20~'22년) 임용 목표비율을 도전적으로 재수립하였으며, '20년 또한 22.8%로 재수립된 '20년 임용 목표비율 21.0%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2-⑥-8| 중앙행정기관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단위 :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고위공무원단 목표	6.8	7.2	8.2	9.6	10.0
고위공무원단 실적	6.7	7.9	8.5	-	
본부과장급 목표	15.7	18.4	21.0	23.0	25.0
본부과장급 실적	17.5	20.8	22.8	-	

※ 출처 :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 또한 여성공무원이 성평등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 실·국장급에 임용되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아직까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당초 '22년까지의 20%였던 임용 목표비율을 22%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17~'22년)」을 변경하는 등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한편, 그간의 노력으로 '16년 말 12.6%였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년 말 기준 20.8%까지 확대되어 지난 5년 전에 비해 8.2%p 증가하였다.

|표 2-⑥-9|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단위 :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15.1	13.0	13.9	15.9	18.6
실적	12.6	13.9	15.6	17.8	20.8

라. 여성교원의 지위 향상

'20년 4월말 기준 여성교장·교감 비율은 전체의 45.0%(교장 40.4%, 교감 49.5%)로 나타나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추진에 따라 매년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율을 설정하고, 시·도 교육청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율 달성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표 2-⑥-10| 여성교장·교감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교 장			교 감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2013. 4.	9,499	1,671	17.6	9,586	3,517	36.7	19,085	5,188	27.2
2014. 4.	10,116	2,020	20.0	10,162	3,940	38.8	20,278	5,960	29.4
2015. 4.	9,590	2,378	24.8	9,602	4,195	43.7	19,192	6,573	34.2
2016. 4	9,641	2,768	28.7	9,616	4,436	46.1	19,257	7,204	37.4
2017. 4.	9,693	3,178	32.8	9,648	4,674	48.4	19,341	7,852	40.6
2018. 4.	9,723	3,516	36.2	9,672	4,772	49.3	19,395	8,288	42.7
2019. 4.	9,763	3,804	39.0	9,718	4,792	49.3	19,481	8,596	44.1
2020. 4.	9,904	4,004	40.4	9,839	4,871	49.5	19,743	8,875	45.0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 해당연도

’20년 기준으로 4년제 일반대학의 여학생 비율은 42.3%로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 대학보다 사립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다소 높다.

대학원 이상에서의 여성 비율은 석사과정의 여성 비율은 54.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박사과정의 여학생 비율은 42.3%, 박사취득자에서는 38.4%로 학력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졌다.

전임 교수를 기준으로 4년제 대학에서의 여성교원 비율은 ’19년 23.8%에서 0.8% 상승하여 ’20년 24.6%로 여성교원 비율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표 2-⑥-11| 4년제 일반대학의 여학생 비율

(단위 :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 체	비율	39.8	40.3	40.8	41.4	41.9	42.3
국·공립	비율	34.0	34.5	35.0	35.6	35.9	36.1
사 립	비율	41.6	42.1	42.6	43.2	43.7	44.1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 해당연도

|표 2-⑥-12| 일반대학/대학원의 계열/과정별 여학생 비율

(2020.4.1. 기준, 단위 : %)

구 분	전체	어문	인문	사회	이학	공학	농림	의학	약학	예술	체육	사범	가정	간호
4년제 대학	42.3	62.0	51.6	46.5	40.4	20.0	40.7	49.3	58.2	65.5	26.8	58.2	61.1	77.3
석사과정	54.1	76.9	53.1	47.2	45.9	22.0	42.7	60.1	58.9	71.5	43.8	76.4	76.8	95.0
박사과정	42.3	75.2	52.1	44.5	34.4	17.8	36.4	46.9	49.2	64.0	39.4	74.6	75.7	95.4
박사취득자	38.4	75.3	51.8	40.0	33.1	12.8	39.9	44.1	53.3	67.4	34.2	75.4	70.0	98.3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표 2-⑥-13| 4년제 대학의 여교수 구성비 변화

(해당연도 4.1.기준, 단위 :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 체	계	75,334	75,632	76,190	75,779	75,084	75,352
	여교수	16,651	17,012	17,392	17,691	17,895	18,515
	비 율	22.1	22.5	22.8	23.3	23.8	24.6
국·공립대학	계	20,251	19,773	19,895	20,001	20,091	20,241
	여교수	2,989	3,048	3,141	3,295	3,428	3,604
	비 율	14.8	15.4	15.8	16.5	17.1	17.8
사립대학	계	55,083	55,859	56,295	55,778	54,993	55,111
	여교수	13,662	13,964	14,251	14,396	14,467	14,911
	비 율	24.8	25.0	25.3	25.8	26.3	27.1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 해당연도(4년제 일반대학 + 교육대학 + 산업대학 + 방송통신대학)

3.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마련하였다(舊 여성발전기본법, '13년 개정).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이하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는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년 기준 조사부터 기초지자체 소관 위원회의 미달성 사유 심의를 광역지자체에 부여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 수, 위촉직 위원 수 등 규모 추정을 위한 선행 조사를 '14년에 실시하여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법률·법령에 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와 함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자치법규(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까지 관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개선권고 기준을 여성비율 20% 미만인 위원회에서 '18년도 실적 기준 조사부터 40% 미달성 위원회로 확대하였으며, '20년 실적 기준 조사부터 남성 위원 40% 미달성 위원회에도 개선권고를 함으로써 위원회 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20년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536개의 위촉직 위원 9,129명 중 여성은 3,607명으로 여성참여율은 43.2%이며, '19년도 여성참여율 43.0% 대비 0.2%p 증가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20년도 이행 상황 점검 후 성별참여 확대가 필요한 102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확대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20년도 기준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19년도 41.4% 대비 0.4%p 상승한 41.8%를 기록하였다.

|표 2-⑥-14|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위원회 수(개)	위촉직 위원 수(명)			여성참여율(%)
		전체인원	남 성	여 성	
2015년	437	7,634	5,001	2,633	34.5
2016년	442	7,725	4,920	2,805	37.8
2017년	436	7,901	4,873	3,028	40.2
2018년	503	9,060	5,512	3,548	41.9
2019년	516	8,700	5,178	3,522	43.0
2020년	536	9,129	5,522	3,607	43.2

※ 출처 : 여성가족부·중앙행정기관, 각 당해연도 12월말 기준

※ 여성참여율 :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값들의 평균(중앙부처는 2016년부터 지자체는 2017년부터 적용)

|표 2-⑥-15|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위원회 수(개)	위촉직 위원 수(명)			여성참여율(%)
		전체인원	남 성	여 성	
2015년	15,584	159,068	111,157	47,911	30.1
2016년	16,321	165,701	112,124	53,577	32.3
2017년	16,015	167,985	108,471	59,514	36.4
2018년	16,319	168,611	104,514	64,097	39.8
2019년	17,746	182,800	110,829	71,971	41.4
2020년	18,589	193,831	116,541	77,290	41.8

※ 출처 :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각 당해연도 12월말 기준

※ 여성참여율 :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값들의 평균(중앙부처는 2016년부터 지자체는 2017년부터 적용)

4.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으로 설립한 기관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공공 및 민간에서 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 '13년 5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이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고 2018년부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확대되었으며(300인 이상 기관, '19년 전체 기관), 시행계획서에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출토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였다.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비율은 '12년 32.35%에서 '20년 41.71%로, 여성관리자 비율은 '12년 11.01%에서 '20년 20.69%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표 2-⑥-16|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성근로자	36.42	37.31	38.27	38.55	39.92	41.71
여성관리자	15.94	16.44	16.47	17.28	18.79	20.69

※ 출처 :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현황자료. 작성 대상연도 익년말 기준 작성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나,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GII)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GI)에서는 낮게 나타나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16년(전년 실적 기준)부터 매출액(금융보험업의 경우 영업이익) 기준 500대 기업(상장법인 限)의 여성임원 현황을 분석해 매년 발표하였다. '19년에는 최초로 상장법인 전체(2,072개)를 대상으로 성별 임원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19.10). '20년 기준 상장법인(2,148개) 여성임원 수는 총 1,395명으로 여성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약 66.5%로 나타났다.

|표 2-⑥-17| 여성임원 증감현황

(단위 : 개, 명, %, %p)

구 분	연도	성별 임원 현황			여성 임원 선임 기업 현황		
		계	남	여	계	선임	비선임
상장법인 전체	'19	29,794	28,595	1,199	2,072	665	1,407
		(100)	(96.0)	(4.0)	(100)	(32.1)	(67.9)
	'20	30,797	29,402	1,395	2,148	720	1,428
		(100)	(95.5)	(4.5)	(100)	(33.5)	(66.5)
	증감	1,003	807	196	76	55	21
		(0.0)	(-0.5)	(0.5)	(0.0)	(1.4)	(-1.4)

※ 출처 : 여성가족부(2020, 상장법인의 성별임원현황, 2020년 1분기 기준)

OECD국가(29개)개국 중에서 8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유리천장지수 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임원 비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이에 민간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 10개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기업 스스로 성별균형적 인력운용 목표를 수립·이행하는 기업과의 자율협약을 시작하였고, '20년말 기준 자율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100개(체결당시 기준, 누적협약 48건)로, 기업별 임원 등 고위관리직 여성 확대, 여성인재육성 제도 강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약속하였다.

더불어 희망기업 대상 맞춤형 기업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성별균형 제고 노력을 지원하였다('20년 18개 기업 컨설팅 지원).

3

일·생활 균형 확산

제1절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107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107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110
제2절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113
1. 모부성보호 제도 강화 113
2. 임신·출산 여성 고용 촉진 지원 122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125

제 1 절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고자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보육료 지원

1)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데 비해 '20년 말 현재 전체 시설 중 차지하는 비중은 14%이고, 이용 아동 비율은 20.4%이다.

|표 3-①-1| 2020년 시설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아동 수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시설수	35,352	4,958	1,316	671	11,510	15,529	152	1,216
	(100.0)	(14.0)	(3.7)	(1.9)	(32.6)	(43.9)	(0.4)	(3.4)
아동수	1,244,396	253,251	78,322	34,066	578,196	230,444	3,716	66,401
	(100.0)	(20.4)	(6.3)	(2.7)	(46.5)	(18.5)	(0.3)	(5.3)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기존 신축 방식 이외 매입,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하였으며, 2020년 목표 550개소 대비 31개소 초과달성(5.6%↑)한 581개소를 확충하였다.

아울러 오래되고 협소한 어린이집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된 어린이집 894개소에 대한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차량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기능보강비 등 국고 기준 8,305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3-①-2| **연도별 어린이집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13,733	6,666	7,067	14,775	7,415	7,360	16,361	8,305	8,056
종사자 인건비	12,835	6,217	6,618	13,887	6,971	6,916	15,581	7,915	7,666
시설기능보강비	612	306	306	600	300	300	396	198	198
교재교구비	186	93	93	188	94	94	188	94	94
차량운영비	100	50	50	100	50	50	196	98	98

※ 국비는 예산(추경 및 예비비 포함), 지방비는 확정내시 기준

2) 보육료 지원

’12년 3월부터 만 0~2세 및 만 5세 아동에 대하여 소득 계층에 구분 없이 보육료를 전 계층에 지원한 데 이어, 만 3~4세 유아에 대해서도 누리과정 도입 확대에 따라 ’13년 3월부터는 소득 계층에 구분 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더불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장애아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적정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보육의 질 제고 및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지원체계를 개편(’20년 3월)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시간을 기본보육(09:00~16:00)과 연장보육(16:00~19:30)으로 나누고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년 12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86.7%가 운영하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1,224천명 중 501천명(전체 아동 중 40% 수준)이 연장보육을 이용하였다. '20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국비)은 3조 4,162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3-①-3| 보육료 지원대상 추이

구 분	2011년 3월	2012년 3월	2013년 3월~
만 0세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	全 계층	全 계층
만 1세		全 계층	
만 2세		全 계층	
만 3세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	
만 4세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	
만 5세		全 계층	

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운영되고 있다. 이에 과거에 비해 장시간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유아의 정서 발달 및 행복감 증진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20년 4월 시도제출자료 기준 4,863개의 국·공립 유치원과 3,577개의 사립 유치원 총 8,440개원 중 8,421개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전체 유치원 대비 99.8%)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 482천여명에게 방과후 과정비(약 3,835억원)를 지원하였다. 특히 방과후 과정 중 유아의 놀이와

휴식을 보장하는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20년 540개원)을 통해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추가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아침·저녁·온종일 돌봄 운영을 통해 지역 내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안전하게 돌봄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맞벌이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을 통한 양육기능이 약화되고 아동연령, 삶의 방식 등에 따라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시설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영아나 방과 후 홀로 집에 있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중장년 여성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13년도에는 「아이돌봄지원법」에 '서비스 우선 제공'과 '서비스 유형 다양화' 근거가 신설되어 취약계층 돌봄 지원 강화 및 수요자 맞춤형 돌봄 제공을 추진하였으며, '14년도에는 영아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한 가정 내 1:1 개별 양육을 활성화하고자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 연령을 0세에서 1세로 확대하였다. '17년에는 2세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연령이 확대됨과 더불어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출산·보육과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8년에는 예산 확보를 통해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크게 인상함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상향(각 5%p)하고, 시간제 정부지원시간을 확대(연 480시간 → 연 600시간)하였다.

그리고, ’19년에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정부지원비율을 최소 5%p 이상 상향하였으며, 시간제 정부지원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하여 이용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보미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수당을 신규로 지급하였다.

특히, ’19년 3월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 채용 절차에서의 검증 강화, 교육체계 개선,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내용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월에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20년 5월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과 아동학대를 행한 아이돌보미의 제재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적성·인성검사 도입, 이용자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실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1년→3년) 등을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하였다.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은 크게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되며, 그 밖에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는 종합형,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출장, 야근,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동행, 놀이 활동,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의 출산휴가 만료 후 직장 복귀 시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만 2세 이하 아동(생후 3~36개월 이하)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위생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가구는 ’17년 63,546가구(시간제 58,489가구, 영아종일제 5,057가구)에서 ’18년 64,591가구(시간제 60,053가구, 영아종일제 4,538가구), ’19년 70,485가구(시간제 66,783가구, 영아종일제 3,702가구)로 증가하였으나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9.663가구(시간제 56,525가구, 영아종일제 3,138가구)로 감소하였다.

|표 3-①-4|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시간당 9,890원)				영아종일제 (월197.8만원, 200시간 기준)	
		취학전		취학후		0~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407원 (85%)	1,483원 (15%)	7,418원 (75%)	2,472원 (25%)	158.2만원 (80%)	39.6만원 (20%)
나형	120% 이하	5,440원 (55%)	4,450원 (45%)	1,978원 (20%)	7,912원 (80%)	118.7만원 (60%)	79.1원 (40%)
다형	150% 이하	1,484원 (15%)	8,406원 (85%)	1,484원 (15%)	8,406원 (85%)	29.7만원 (15%)	168.1만원 (85%)
라형	150% 초과	-	9,890원	-	9,890원	-	197.8만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제보육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며 가정에서 영아(6~36개월 미만)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 시간제근로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정받은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이다.

2019년 490개의 시간제보육반을 운영하여 총 37만건, 133만시간의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20년 시간제보육반을 681개 반으로 확대하였으나,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이용되지 못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은 일시적으로 총14만건, 51만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제 2 절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1. 모부성보호 제도 강화

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제도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60일의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부여하였으나, '01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9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06년부터는 종전 행정해석으로 인정되던 유산·사산휴가를 법제화하여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간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여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12년부터는 임신 16주 이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5일에서 10일 간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14년에는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14.7.1. 시행)하였고,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의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다. 2016년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사업장을 300인 이상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2018년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019년에는 180만원, 2020년에는 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정부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포함)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90일분(다태아 120일), 그 외의 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30일분(다태아 45일)의 통상임금(상한액 월 200만원 한도)이 지급된다. 최근 저출산 기조로 '20년에는 71,943명에게 287,145백만원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수급자수는 2.9% 감소하였으나, 상한액 인상으로 지급액은 6.5% 증가하였다.

|표 3-②-1|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인 원	지 급 액	비 고
2014년	88,756	236,845	월 통상임금기준 (우선지원기업 90일, 대규모 기업 30일)
2015년	95,259	259,011	
2016년	90,469	248,034	
2017년	81,708	243,399	
2018년	77,062	249,330	
2019년	74,095	269,686	
2020년	71,943	287,145	

※ 출처 : 고용보험 DB

나.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시부터 도입되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몇 차례 제도 개선을 거쳐 '10년 2월 4일 법 개정으로 '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확대하였고, '14년 1월 14일부터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하였다.

|표 3-②-2| 육아휴직제도 연도별 개정사항

연 도	법률 개정 내용	비 고
1988년	• 만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자녀가 만 1세까지 육아휴직 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1995년	•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여성을 대신해서만 신청 가능)	
2001년	•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남녀 불문)	
2006년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08.1.1.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	
2010년	•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2014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급여를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150만원)로 지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2016년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지급 기간을 첫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2017년	•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 인상(150 → 200만원)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인상(통상임금의 40 → 80%, 상한액 100 → 150만원, 하한액 50 → 70만원)	
2018년	•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 • 육아휴직 거부가능사유 완화(근속기간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첫째 150, 둘째부터 200만원 → 모든 자녀 200만원)	
2019년	•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인상(통상임금의 40 → 50%, 상한액 100 → 120만원, 하한액 50 → 70만원)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200만원 → 250만원)	
2020년	•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1→2회)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최대 1년간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01년부터 정액제(월 20만원)로 지급하여 왔는데 지원수준 상향 조정 요구 등에 따라 '11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통상임금의 40%(최고 100만원)를 지급하였다. '17년 9월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위해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최고 150만원)를 지급하며, '19년 1월부터는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통상임금의 50%(최고 12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14년에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하였다. '16년에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였으며, '17년 7월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18년 5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 허용요건을 완화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7월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상한액을 모든 자녀 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가 2019년 1월부터는 2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20년에는 한부모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도입,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하였다.

육아휴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년에는 112,040명에게 1,215,500백만원을 지급하여 '19년 대비 수급자는 6.5%, 지원액은 13.9% 증가하였다.

|표 3-②-3|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인 원			지급액	비 고
	계	여 성	남 성		
2013년	69,616	67,323	2,293	420,248	월 통상 임금의 40% (50~100만원)
2014년	76,833	73,412	3,421	500,663	
2015년	87,339	82,467	4,872	619,666	
2016년	89,795	82,179	7,616	625,243	
2017년	90,123	78,080	12,043	680,430	•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 • 이후 9개월 : 월 통상임금의 40%(50~100만원)
2018년	99,199	81,537	17,662	839,083	
2019년	105,165	82,868	22,297	1,058,853	• 이후 9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70~120만원)
2020년	112,040	84,617	27,423	1,215,500	

※ 출처 : 고용보험 DB

|표 3-②-4|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인 원			지급액	비 고
	계	여 성	남 성		
2014년	91	9	82	134	월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150만원)
2015년	1,345	174	1,171	2,410	
2016년	2,703	307	2,396	9,761	
2017년	4,409	513	3,896	17,538	월 통상 임금의 100% (상한 : 첫째 150, 둘째이상 200만원)
2018년	6,606	869	5,737	29,983	월 통상 임금의 100% (상한 : 모든자녀 200만원 〈7월부터〉)
2019년	9,796	1,197	8,599	61,687	월 통상 임금의 100% (상한 : 250만원)
2020년	13,507	1,738	11,769	83,698	

※ 출처 : 고용보험 DB

’20년 평균 육아휴직일수는 여성 305일, 남성 209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96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년 27,423명으로 전년대비 23.0% 증가하였다.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휴직 및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을 활성화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에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20만원, 대규모기업에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장에서 최초부터 세번째까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에는 각각 ‘인센티브’로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또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단축 기간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30~80만원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 등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제도 도입 이후 육아휴직의 활성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년에는 17,073개 사업장 28,824명에 대해 89,697백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였다.

|표 3-②-5| 육아휴직 등(대체인력) 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구 분	인 원	총 지원금액	지원기준
2013년	육아휴직 등 장려금	23,495	42,118	월 20만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3,722	9,225	월 20~40만원
2014년	육아휴직 등 장려금	22,577	39,168	월 10~20만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5,039	13,627	월 30~60만원
2015년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31,977	51,445	월 5~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6,602	25,360	월 30~60만원
2016년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34,536	43,759	월 5~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7,133	31,529	월 30~60만원
2017년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37,499	41,243	월 30~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7,774	36,155	월 30~60만원
2018년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26,066	33,014	월 30~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6,344	31,857	월 30~60만원
2019년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20,194	35,782	월 30~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6,290	32,127	월 30~60만원
2020년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19,862	43,271	월 30~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8,920	44,705	월 30~80만원

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 주택 등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밀집 주거지역에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내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와 개·보수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매입·임차하거나 운영 중인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시설전환 시 4억원(공동 20억원 한도), 교육교구비 7천만원까지 무상 지원하고 있다. '20년은 시설비와 교재교구비로 120개 사업장에 28,21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3-②-6|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 도	융 자		무 상 지 원	
	사업장수	금 액	사업장수	금 액
2013년	11	3,253	103	23,134
2014년	4	1,308	93	23,676
2015년	5	1,096	114	28,709
2016년	5	1,681	144	36,904
2017년	-	-	153	40,538
2018년	2	350	122	36,125
2019년	4	828	134	48,974
2020년	2	270	120	28,211

※ 설치비 융자는 '20년도부터 신규지원 중단

또한 '12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건립비(증·개축 등) 및 설치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최고 20억원까지 무상지원하고, 교육교구 및 장비 구입비 등을 70백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12년 2개소, '13년 9개소, '14년 12개소, '15년 12개소, '16년 20개소, '17년 27개소, '18년 26개소, '19년 33개소, '20년 21개소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였다.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5인 이상 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유급 고용일수가 20일이 넘는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의 인건비를 월 6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20만원)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 추가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경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로 547개소(7,982건) 104,222명에게 70,00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는 125개소, 3,77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3-②-7|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기준

연 도	지원 기준	지원 대상
2014년	보육교사 등의 월 평균 근무시간	대규모 기업 월 80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20만
2016년		대규모 기업 월 60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20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표 3-②-8|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 도	사업장수	지원건수	금 액
2013년	299	3,745	34,592
2014년	334	4,476	45,769
2015년	367	4,925	52,376
2016년	437	6,508	55,435
2017년	481	7,393	60,624
2018년	512	7,739	65,517
2019년	519	7,719	67,770
2020년	547	7,982	70,004

아울러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12년 7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년 설치의무 사업장은 1,432개소로 이중 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수는 980개소, 위탁보육 사업장은 321개소로 의무 이행 사업장은 모두 1,301개소(90.9%)이고 미이행 사업장은 131개소(9.1%)이다.

’95년부터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공공 직장보육시설 24개소(안산, 창원, 서울 금천, 인천 서구, 대전, 대구, 동해, 광양, 천안, 청주, 부산, 수원, 정읍, 경주, 부천, 군포, 조치원, 울산, 진해, 포항, 인천 남동구, 제주, 군산, 고양)를 운영하고 있으며, ’09년부터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원을 통합·운영하고 있다. 공공 직장보육시설은 모두 12시간 종일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규모와 보육 수요에 따라 야간 보육, 방과 후 반 등도 운영하고 있다.

’18년부터는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육지원을 위해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시작하였고, ’18년 3개소, ’19년 10개소를 설치 지역으로 선정하여 ’21.5월 현재 8개소(서울강서(화곡동), 시흥, 계룡, 전주, 임실, 서울강서(등촌동), 화성, 울산북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22년까지 5개소(서울강서(곰달래), 서울마포, 영주, 광주, 연수)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2. 임신·출산 여성 고용 촉진 지원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및 업무 공백 등으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임신·출산이 고용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근로자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17년부터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의 간접노무비 지원을 월 3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에는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다.

근로자의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며, '14년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17년에는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년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에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표 3-②-9|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제도개선 현황

연 도	법률 개정 내용	비고
1995년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008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 지급 * 명칭 변경 : '육아휴직 장려금' → '육아휴직등 장려금'	
2011년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2015년	• 육아휴직 부여금의 경우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원 폐지 • 육아휴직 후 1개월에 대한 금액은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	
2017년	• 우선지원 대상 : 30만,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 '1호 인센티브'로 10만원 추가 지원	
2019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지원	
2020년	• 지급 방식 변경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등의 기간 중에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표 3-②-10|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개선 현황

연 도	법률 개정 내용	비고
2004년	•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한 사업주에게 추가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고용기간 : 90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006년	• 육아휴직 기간 중 채용 →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채용 • 60일 이상 채용 → 30일 이상 채용 ※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고용기간 : 90일→30일	
2014년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2015년	• 채용기간 확대(휴가·휴직 전 30일 이후→60일 이후)	
2017년	• 지원기간 확대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시작 전 2주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2018년	• 지원요건 완화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한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2019년	•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 확대 : 시작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시작전 최대 2주→2개월 지원 ※ 기업규모와 상관 없이 공통 적용	
2020년	• 지원요건 완화 :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금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인상(월 60→80만원) • 지급 방식 변경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중에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표 3-②-11|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지원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 도	사업장	인원(근로자)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
2012년	6,117	19,909	35,444	• 기업규모 무관 월 20만원
2013년	6,178	23,495	42,117	
2014년	6,875	22,577	39,168	•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 그 외 기업 15만원
2015년	8,479	31,977	51,445	•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 대규모 1,000인 이상 5만원, 1,000인 미만 10만원
2016년	9,145	34,536	43,756	
2017년	9,974	37,499	41,243	•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2018년	8,753	26,066	33,014	
2019년	9,305	20,194	35,785	•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
2020년	11,272	19,862	43,271	

※ 출처 : 고용보험 DB

|표 3-②-12|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 도	사업장	인원(근로자)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
2012년	2,145	3,257	7,968	•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 대규모기업 20만원
2013년	2,315	3,722	9,225	• 우선지원대상기업 40만원 • 대규모기업 20만원
2014년	3,052	5,039	13,627	•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 대규모기업 20만원
2015년	4,214	6,602	25,360	
2016년	4,474	7,133	31,529	
2017년	4,926	7,774	36,155	
2018년	4,098	6,344	31,850	
2019년	4,101	6,290	32,130	
2020년	5,764	8,920	44,705	•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 대규모기업 20만원

※ 출처 : 고용보험 DB

또한 유·사산 위험 기간인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9.25.부터, 300인 미만은 '16.3.25.부터 시행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등 사회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근로자 의식 변화로 인해,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삶터인 지역사회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우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08년 6월에 시행되어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지역사회 조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공표, 가족친화인증제 등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천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08년부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17년부터는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8년 실시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에서는 가족친화지수가 40.6점으로 나타나 '15년의 36.1점에 비해 4.5점이 상승하였다.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08년 14개사를 시작으로, '12년 253개사, '13년 522개사, '14년 956개사, '15년 1,363개사, '16년 1,828개사, '17년 2,802개사, '18년 3,328개사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총 4,340개사이며 이중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65.4%인 2,839개사를 차지하여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증 설명회 개최,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가족친화 네트워크 운영,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강화, 지역 가족친화 유관기관 협의회 확대,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운영, 인증 기업·기관 사후관리 내실화, 가족친화경영 성과 및 우수사례 확산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년에는 성평등한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의 육아아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아빠 육아생활 희.로.애.락 온라인 사진 갤러리(www.koreaswedendads.kr)를 운영하였다.

4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제1절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 129
1.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경과 129
2. 주요 내용 130
3. 2020년도 시행계획 추진성과 131
제2절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및 경력개발 지원 — 133
1.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133
2. 여성의 역량개발 및 경력유지 지원 134
제3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 136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36
2.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40
제4절 분야별 여성의 창업·취업영역 및 여성기업 활동 확대 — 145
1. 여성기업 활동 및 창업 지원 145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148
3. 여성농어업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 향상 촉진 152
제5절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 159
1. 일자리에서 성차별 관행 개선 159
2.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직장 내 성희롱 방지 161

제 1 절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1.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경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08.12.6. 시행)에 따라,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24)」(이하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양성평등위원회('20.2.12.)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10~'14) 기간 동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15~'19)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중심에서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 여성의 고용유지 측면까지 정책 범위를 넓혀 청년층 여성(15~24세)을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20~'24)은 「2019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과제 개발 회의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다.

2. 주요 내용

제3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공정·포용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과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5대 영역을 설정하고, 13개 중점과제, 102개 세부과제를 담았으며,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였다.

비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공정·포용 사회 구현**	
목표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	
정책 과제	**5대 영역 13개 중점과제**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강화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대책 내실화 능력개발 및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여성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 지원 강화
	돌봄 지원 체계 강화	맞벌이가구·취업모의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법제도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그림 4-①-1 |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추진체계

제2차 기본계획과 달리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을 신규영역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과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 지원 강화 정책 등을 포함하였다. 시간선택제, 근로시간 단축, 창업, 플랫폼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및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응 강화와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 중심으로 확충되어 온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 개선 추진을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도 제고 및 조직문화 컨설팅 등 경력단절예방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보완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에서도 생애주기별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여성 특성을 고려한 창업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

3. 2020년도 시행계획 추진성과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력단절위기를 겪는 재직여성을 위해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서비스 기관을 확대(35개소→60개소)한 결과,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수혜자 수는 '19년 4만명에서 '20년 4만 8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20년 4,340개사)하고 가족친화 인증 후 컨설팅도 확대('20년 314개사)하였다.

육아 부담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같은 자녀에 대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0.2.28. 시행),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3.31. 시행)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완화('20.2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30~40대 고학력 여성에게 과학기술, IT 분야 등 전문직 일자리 연계를 위한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확대 운영('20년 6개소)하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내 고부가가치 등 유망직종 훈련과정('20년 50개 과정) 및 포스트 코로나 신규 일자리 과정(39개)을 운영하였다.

새일센터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 지원기관 확대('20년 20개소), 새일센터 창업상담사 추가 배치('20년 40개소)를 통한 상담, 정보제공, 창업지원기관 연계 등 창업지원서비스 제공하여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맞춤형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고급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 인재 육성을 위해 여대학원생 87개 공학 연구팀(460명)을 지원하여 공학 분야 여대학원생 자기 주도 연구를 통한 연구 리더십을 함양하였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를 지속 지원하여 실업 여성의 훈련참여가 증가('20년 253천명)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20년 581개소) 및 종일보육 내실화(약 25,000명의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을 개선하였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온종일 돌봄 운영기관 확대(30개소 ⇧) 및 '진로체험형' 특성화 모델 전국 확대('19년 9개소 → '20년 전국 288개소) 등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였다.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20.11.20 시행)을 개정하여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1년 → 3년)하고, 아이돌보미의 급여 인상 등 처우개선,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및 주간·야간·방학 등 확대 운영('20년 331개소)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지원을 확대를 하였다.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151만명으로 감소(통계청, '20년 지역별 고용조사)하였지만,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유무에 따른 임금격차(월 35.6만원), 경력단절 전후 임금격차(월 27만원) 등 경제적 손실(여성가족부, '19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성별임금격차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제 2 절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및 경력개발 지원

1.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2019년까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도 완화되는 등 여성 고용의 긍정적 추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성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13만 7천 명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 고용률(15~64세)도 전년대비 1.1%p 감소하여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중 육아와 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는 16만 명 증가하였다.

|표 4-②-1| 15~64세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현황(15~64세 기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성	75.9%	75.9%	76.3%	75.9%	75.7%	74.8%
여성	55.7%	56.1%	56.9%	57.2%	57.8%	56.7%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렇게 코로나19가 여성에게 큰 고용충격을 가져온 이유는, 펜데믹에 의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교·휴원으로 자녀 돌봄공백이 발생하면서 여성에게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경력단절 위기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노동계, 경영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2020년 4/4분기부터는 '여성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매월 개최하여 여성 고용 위기 현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여성의 역량개발 및 경력유지 지원

가. 청년여성 멘토링 운영

여성은 사회 진출 후에도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력관리가 어려우며, 고위직·전문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취업여성들을 위한 역할모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02년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후배 여성(멘티)이 선배 여성(멘토)으로부터 직무 분야의 전문지식, 직업의식,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아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기회와 역할모델 제공을 위한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면 멘토링 필요성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16년부터는 온라인 멘토링을 폐지, 오프라인 멘토링으로 사업을 일원화하였다.

청년여성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와 멘티는 멘토의 경력, 멘토링 활동목표 등과 멘티의 관심분야,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룹(1:N)으로 매칭되며, '02년부터 '20년 말까지 총 12,603명의 멘티가 청년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청년여성 멘토링 운영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4개 분야(경영, 신산업, 공공·사회적경제, 문화·예술)로 세분화하여 멘토풀을 확대하고, 그룹 멘토링, 교차 멘토링(소속그룹 외 멘토와의 멘토링), 멘토링의 날(찾아가는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의 멘토링 제공으로 청년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나.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유능한 여성인재가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20년에는 4,272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하여 '13년 여성인재 아카데미 개소 이래 총 50,932명의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경력단계별 역량강화를 통한 미래여성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외에, 여성 및 남성 중간관리자, 고위관리자, 청년여성, 재직여성, 지역사회 여성 리더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특별히, '20년에는 성별통합과정인 성별균형 리더십 교육 및 정치적 주체로서의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여성 정치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교육대상을 확대하였다.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 수강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및 비대면 교육 구성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을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기관(9개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역여성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제3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수급 차질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이 중요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노동시장 진입과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08년 제정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이 접근하기 쉬우며 취업지원 사업경험이 있는 기존 교육훈련 기관, 여성회관 등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로 지정·운영하였으며, '20년까지 총 158개의 새일센터가 지정되어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해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등의 전공 및 경력,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4년에 유형별 새일센터(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지역산업맞춤형, 자립지원형) 10개소를 시범 운영하였고, '15년에는 센터 유형을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일반형으로 개편하였다.

’16년에는 광역센터 기능 개편을 추진하여, 광역센터가 기존에 수행하던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내 취업지원 기능을 인접 새일센터로 이관하고, 광역센터는 지역 내 새일센터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업추진체계를 조정하였다.

|표 4-③-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2020.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일반형센터	130	24	9	5	7	5	1	4	25	5	4	7	7	8	8	8	2	1
경력개발형센터	6	2	1	-	-	-	1	-	2	-	-	-	-	-	-	-	-	-
농어촌형센터	9	-	-	-	-	-	-	-	-	3	1	3	1	-	-	-	1	-
광역센터	13	1	1	-	1	-	1	-	2	1	1	1	1	1	1	1	-	-
총계	158	27	11	5	8	5	3	4	29	9	6	11	9	9	9	9	3	1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 직업 상담 및 집단 상담 : 개인별·단계별 맞춤형 직업·진로 상담, 취업의욕 상실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 직업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 및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 유망 직종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인턴십 지원 : 경력단절여성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경력단절여성등을 채용한 사업장, 인턴 대상 1인당 380만원 한도 지원
- 새일센터 창업 지원 : 창업상담사 배치(’20년 40개소) 및 예비창업자 발굴, 정보 제공, 초기 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 중기부 등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통한 자금·공간·패키지 등 연계 우대 지원
-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 :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경단기간, 일자리경험 등) 및 취업욕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20년 20개소)
 ※ 취약계층(저소득, 장기실업 등) 또는 사업 분야(과학기술, IT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상담에서 취업알선·복지서비스 연계까지 개인별 집중 사례관리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 구직자-구인처간 취업연계, 새일센터 구직등록여성 및 취업자,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등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환경개선, 취업강화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경력단절예방지원 : 경력단절예방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 개선 교육 및 직무컨설팅 등을 통한 직장문화개선,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새일센터는 구직 희망 여성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여성 일자리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경력단절여성등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새일센터를 확충('20년 기준 158개소)하였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력단절 사전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7년 8월부터 새일센터에 창업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였다.

창업수요가 큰 지역의 센터에 창업지원을 전담하는 창업전담인력 신규 배치('20년 40개소)하고 '창업지원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창업지원 체계 구축·운영('17. 8월~)하였고 창업교육훈련과정('20년 41개 과정) 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창업 지원으로 전년대비 창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17년 3월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일부개정하여 경력단절예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년 11월에 추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경제활동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재직여성 대상 고충·노무 상담, 기업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 사업을 '17년에 15개 새일센터에서 운영하였으며, '20년에는 60개소로 확대하였다.

또한 '18년에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0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를 개발하여 '19년부터 새일센터 10개소에서 시범운영하여 '20년에는 20개소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함께 재(再) 경력단절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여성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19년과 비슷한 수준인 177천명이었다.

|표 4-③-2| 새일센터 연도별 운영실적

(연도 말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용인원	469,891	483,802	540,396	552,198
취업인원	171,125	173,064	177,592	176,866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들이 주로 취업한 곳은 보건의료(22.7%), 사무·회계(16.7%), 제조·생산(12.1%) 순이며, 근로형태별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48.8%(시간제 포함 시 67.1%)를 차지하였다.

|표 4-③-3| 2020년 새일센터 취업자의 직종형태별 현황

(2020.12.31. 기준, 단위 : 건)

계	보건 의료	사무, 회계	제조. 생산	경비 등 서비스	사회, 복지	이미용, 숙박, 음식	건설, 기계	영업, 판매	교육, 연구	전기, 전자	기타
176,866 (100%)	40,131 (22.7%)	29,577 (16.7%)	21,457 (12.1%)	20,841 (11.8%)	18,416 (10.4%)	16,321 (9.2%)	5,819 (3.3%)	4,698 (2.7%)	4,499 (2.5%)	3,684 (2.1%)	11,423 (6.5%)

|표 4-③-4| 2020년 새일센터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현황

(2020.12.31. 기준, 단위 : 명)

취·창업 현황					
계	취 업				창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176,866 (100%)	86,312 (48.8%)	32,413 (18.3%)	35,948 (20.3%)	20,916 (11.8)	1,277 (0.7%)

2.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가. 경력단절여성 취업서비스 접근성 제고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부처, 민관 협업을 통한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등 종합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에 적극 참여하고, 협업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및 취업 성과를 제고하였다.

구 분	고용복지+센터 내 새일 참여 현황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고용복지+센터	10	40	70	98	98	98	98
새일센터가 참여하는 고용복지+센터	10	38	67	89	91	90	91

한편 기존의 시설종사자용 'e-새일시스템(saeil.mogef.go.kr)'을 대국민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로 전환('18년~)하여 직업교육훈련, 인턴 신청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워크넷 일자리를 연계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주요 내용〉

- (직업교육훈련·경력단절예방지원 신청)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예방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개편
 * (개편 전) 센터 방문신청 → (개편 후) 온라인 신청
- (인턴 온라인 접수) 인턴 채용정보(기준, 대상 등)는 항시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신청자를 오프라인과 병행하여 접수 및 심사
- (일자리정보 공개) 워크넷 일자리 정보 등을 공개하는 '취업정보' 코너 개설
- (구직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구직자의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정보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나. 직업교육훈련 및 새일여성인턴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로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훈련과 새일여성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다. 새일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는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생애 설계, 자신감 향상, 이미지 메이킹 등의 내용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직업훈련 등 개개인에게 적절한 취업지원서비스로 연계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09년 184개 과정 운영을 시작으로 '20년 658개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과정과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다. 특히 유망 직종으로 취업이 가능한 3D프린팅, 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자인전문가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을 확대(25 → 50개 과정)하였다.

또한 '17년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집단상담프로그램 매뉴얼을 보완·개편하였으며, 상담사 전수교육을 통해 '18년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표 4-③-5|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종류

적용대상	기존 프로그램(~'17년)	개정 프로그램('18년~)
경력단절 여성	• WIN : Women Into New·Career·Life • WIN+ : 직장적응프로그램 • Re-Win : 재복귀프로그램	• 새일스타트 : 경단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기본과정) • 새일플러스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심화과정)
결혼이민 여성	• WIND : Women Immigrant's New Direction	• WiCi : Women Immigrant's Career Identity

|표 4-③-6|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적

(2020.12.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교육 인원 (a)	수료 인원 (b)	수료율 (b/a)	취업 현황						
				소계 (c)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창업	취업률 (c/b)
2014년	15,094	14,115	93.5%	8,656	4,783	1,113	1,261	1,259	240	61.3%
2015년	16,690	15,613	93.5%	10,782	4,934	1,759	1,846	1,940	303	69.1%
2016년	14,066	13,238	94.1%	9,696	4,848	1,451	1,429	1,703	265	73.2%
2017년	15,753	14,788	93.9%	10,829	4,968	1,736	1,594	2,129	402	73.2%
2018년	14,796	14,060	95.0%	10,258	4,460	1,786	1,677	1,881	454	73.0%
2019년	14,544	13,924	95.7%	10,008	4,705	1,602	1,634	1,616	451	71.9%
2020년	11,024	10,525	95.5%	6,112	2,658	689	1,425	1,001	339	58.1%

※ '20년 직업훈련 실적 중 연간 취업률은 '21년 8월 말 경 파악 가능

한편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장 체험프로그램인 새일여성인턴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10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력단절여성등을 인턴(3개월)으로 채용한 기업체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이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업에게는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 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는 사전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계 대상 기업은 4대 보험을 가입한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근무조건 및 급여수준 등에 부합하는 기업 중에서 견실성과 인턴 고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새일여성인턴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의 20~50% 범위 내에서 인턴 연계가 제한된다.

또한 인턴 연계 시 취약계층 여성, 집단상담 이수자를 우선 연계하고, 새일여성인턴은 결혼이민여성인턴 연계를 포함하여 취약계층 여성을 30%이상 연계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새일여성인턴은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은 30시간) 전일제로 근무하며, 인턴을 연계 받은 기업은 3개월 간 월 8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인턴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 부담을 경감하였다.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 이상으로 전환되고 3개월 고용이 유지될 경우,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지원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표 4-③-7| 새일여성인턴 운영 실적

(2020.12.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새일여성인턴 연계 현황			인턴종료 후 취업현황	
	연계	인턴종료(b)	연계중	취업(a)	취업률(a/b)
2014년	6,083	3,825	1,205	3,556	93.0
2015년	6,959	5,613	672	5,311	94.6
2016년	6,579	5,397	681	5,154	95.5
2017년	7,201	5,959	746	5,785	97.1
2018년	7,410	5,859	1,033	5,618	95.9
2019년	7,351	6,063	809	5,853	96.5
2020년	6,945	5,812	628	5,658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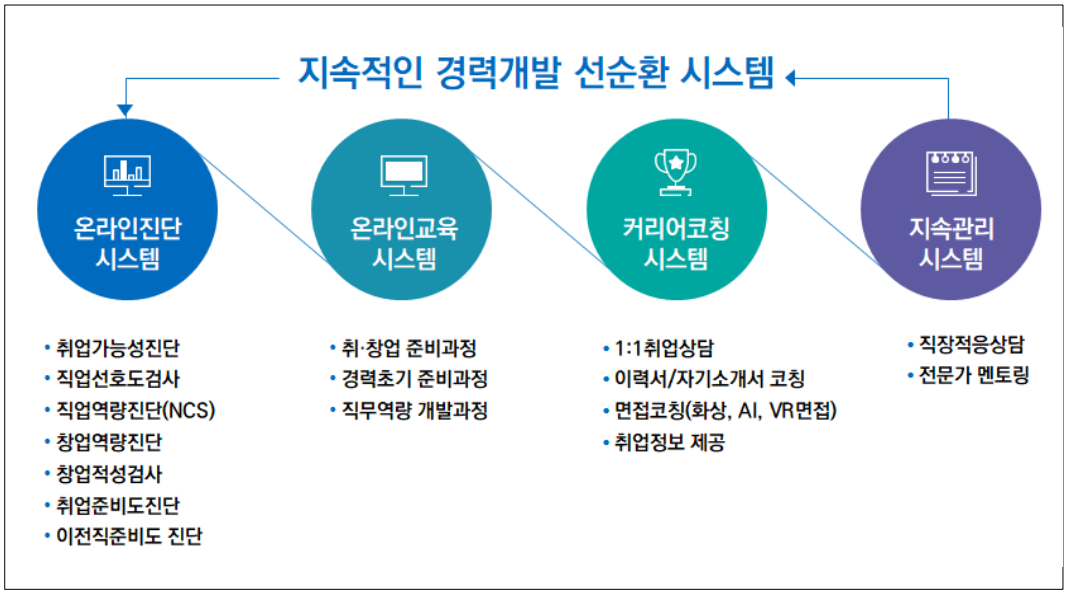
※ '14년부터 인턴 연계를 2회계연도에 걸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17년부터 새일여성인턴과 결혼이민여성인턴 통합

다. 온라인 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

새일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이 쉽지 않은 지역의 구직여성에 대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의 온라인 경력개발센터(www.dream.go.kr)을 활용하여 온라인 커리어 상담사(EM : Employee Mentor)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리어 상담사는 취업희망 여성에게 온라인으로 취업진단(취업가능성 진단, 직업역량 진단, 창업역량 진단 등), 취업상담(경력개발계획 수립,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고, 새일센터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하고 있다.

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는 '10년 3개 지역(서울, 경기, 경남)에서 시범 실시되었고, '16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여 운영되었다. '20년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1만 8천여명, 온라인교육을 이용한 인원은 36만 8천여명에 달한다.



|그림 4-③-1|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이용 흐름도

제 4 절

분야별 여성의 창업·취업영역 및 여성기업 활동 확대

1. 여성기업 활동 및 창업 지원

가. 여성기업 일반 현황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수는 '18년 기준 약 2,656천개로 전체 기업의 40.0%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27.5%, 숙박·음식업이 18.3%로 주로 경쟁포화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은 4.7%에 불과하다.

|표 4-④-1| 여성기업 현황

(단위 : 천개)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기업	5,894	6,085	6,301	6,644
여성기업	2,286	2,379	2,484	2,656
비율(%)	38.8	39.1	39.4	40.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표 4-④-2| 여성기업 업종별 현황

(단위 : 천개)

연 도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전체기업	794(12.0)	1,656(24.9)	348(5.2)	203(3.1)	569(8.6)
여성기업	485(18.3)	730(27.5)	188(7.1)	125(4.7)	125(4.7)
비율(%)	61.1	44.1	54.0	61.6	22.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 ()내는 전체사업체 중 비중(%)

또한 여성기업의 고용인원은 ’18년 기준 약 483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표 4-④-3**| **여성기업 고용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기업	19,259,827	19,635,071	20,094,913	20,591,641
여성기업	4,234,756	4,369,259	4,566,213	4,832,410
비율(%)	22.0	22.3	22.7	23.5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각 연도

나. 여성기업활동 지원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9년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창업, 판로, 수출,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1) 여성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

여성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창업보육공간(’20년 기준 총 226개실)과 함께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여성경제인 DESK(7개 센터)를 통한 분야별 전문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벤처창업 케어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여성인력들의 창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으며, 유망 여성 창업·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24년까지 1,20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 벤처펀드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 여성기업 판로 촉진

공공구매를 통한 여성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14년부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TV 홈쇼핑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여성기업들의 판로 다각화를 지원하고 있다.

|표 4-④-4|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조원)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전체	116.9	123.4	123.4	135.0	145.8
여성	8.3	9.9	10.6	11.9	12.5
비율(%)	7.1	8.0	8.6	8.8	8.6

※ 출처 :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www.smpp.go.kr)

이와 함께 여성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실무교육, 전문가 컨설팅, 해외전시회 등도 지원 중이다.

3) 여성기업 인력 지원

'17년부터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적시에 매칭 가능한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를 통해 여성기업의 전문인력 부족현상 해소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기업 CEO 등 여성경제인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국내·외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최고경영자 교육 과정,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과정, 세계여성경제인대회 등과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등도 지원하고 있다.

4) R&D, 금융 등 지원

여성기업들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여성전용 R&D 및 여성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R&D나 정책자금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 4-④-5| 여성기업 R&D, 정책자금, 보증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전체	여성기업	비율	전체	여성기업	비율
R&D	11,268	658	5.8	13,132	926	7.1
정책자금	43,580	4,830	11.1	62,900	7,621	12.1
보증	910,730	161,764	17.8	1,194,536	256,147	21.4

5) 실태조사, 조사연구 등

여성기업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 단위로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기업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여성기업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가.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19년 국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은 113,187명으로 전체 연구원(538,136명)의 21.0%를 차지하였다. 여성연구원 규모는 전년대비 8.1% 증가하였고, 여성연구원의 비율은 전년대비 0.6%p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여성 연구원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4-④-6| 과학기술 R&D 분야의 성별 연구원 수 추이

(단위 : 명, %)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연구원(명)		437,447	453,262	460,769	482,796	514,170	538,136
성별	남성(명)	356,543	367,913	370,154	385,754	409,442	424,949
	비율(%)	81.5	91.1	80.3	79.9	79.6	79.0
	여성(명)	80,904	85,652	90,615	97,042	104,728	113,187
	비율(%)	18.5	18.9	19.7	20.1	20.4	21.0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연구원은 주로 기업과 대학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전체 여성연구원(113,187명)의 57.9%(65,571명)는 기업체에서 종사하며, 32.4%(36,650명)는 대학에서, 9.7%(10,966명)는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④-7| 2019년도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현황(1)

(단위 : 명, %)

구 분	공공연구기관	대 학	기업체	합 계
여성연구원	10,966	36,650	65,571	113,187
분포 비율	9.7	32.4	57.9	100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연구수행주체별 여성연구원 비율은 대학이 33.1%로 가장 높았고, 공공연구기관 27.4%, 기업체 16.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수행주체별 여성 연구원 비율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는데, 대학은 1.1%p, 공공연구기관 0.5%p, 기업체는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④-8| 2019년도 연구수행주체별 여성연구원 현황(2)

(단위 : 명, %)

구 분		공공연구기관	대 학	기업체	합 계
전체	'18	37,404	108,529	368,237	514,170
	'19	40,069	110,619	387,448	538,136
여성 (비율)	'18	10,048 (26.9)	34,712 (32.0)	59,968 (16.3)	104,728 (20.4)
	'19	10,966 (27.4)	36,650 (33.1)	65,571 (16.9)	113,187 (21.0)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특히 '19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의 정규직 연구개발인력은 19,183명으로, 이중 여성은 2,832명(14.8%)으로 여성비중은 전년대비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정규직 여성연구개발인력 재직비율을 비교해 보면, 연구개발인력의 여성재직비율은 원급 28.2%, 선임급 16.4%, 책임급 이상 7.7%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원급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29.7%→28.2%, △1.5%p)하였으나, 선임급 연구원(15.8%→16.4%, 0.6%p)과 책임급 이상(6.3%→7.7%, 1.4%p) 직급의 여성 비율은 증가하였다.

|표 4-④-9| 2019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정규직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현황

(단위 : 명, %)

직급	책임급 이상 (과장연구관 이상)			선임급 (연구관)			원 급 (연구사)			기술직 (기술원)			합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8,925	685	7.7	6,141	1,008	16.4	2,041	576	28.2	2,076	563	27.1	19,183	2,832	14.8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9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

나.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현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동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천 계획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9년에는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9~'23) 수립하였으며, 매년마다 실적점검 및 시행계획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과기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4대 추진전략**

① 전략적 인력 유입·성장 촉진
② 혁신·글로벌 역량 제고
③ 경력개발·이음확대
④ 젠더혁신 체계 구축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써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승진)목표제」[2] 및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제도」를 운영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 경력이 지연·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복귀지원 강화를 위해 '12년부터 추진한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 사업」은 '20년 총 398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본 사업은 석·박사급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공사부설(연) 112개를 대상으로 매년 신규 채용할 여성과학기술인력 비율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제도로 최종 채용목표비율인 30%를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과 과학기술분야 산·학·연 연구기관 간 일자리 연계를 통해 경력단절된 여성연구자의 연구현장 복귀를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공적 경력 안착('20년 조사 경력유지율 81.1%)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 연구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와 글로벌 역량 증진을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과 여성과학기술인단체 간 국내외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상호교류·협력 및 소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다.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관련 정책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해 9개 지역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 촉진사업(R-WeSET사업)'을 추진, 지자체 및 인근 지역의 대학, 산업계 등과 연계한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활용을 위한 지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년도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촉진사업(R-WeSET사업) 통하여 총 27,073명의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으며 이에 대해 상당히 높은 만족도와 이공계에 대한 인식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공공연구기관과 이공계대학,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19년 기준 4,639개)을 대상으로 매년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과 처우에 대한 조사[3]를 실시하고 있다.

3) 조사문항 :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용 , 채용, 이·퇴직, 보직·승진, 연구개발 활동, 일·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등

3. 여성농어업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 향상 촉진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09.12.9.)하여 배우자 및 동일 세대원도 농업 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113만명이 되는 등 작년 대비 1.2%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16.3.24.)하여 경영주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인정하여 여성농업인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농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여성 농업경영주 수** : ('19) 466천명 → ('20) 491천명(증 5.4%)
※ **공동경영주**(여성) **등록 현황** : ('18) 24천명 → ('19) 32천명 → ('20) 41천명(증 28.1%)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여성 우대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20년에는 후계농업경영인력 2,797명 중 여성농업인을 514명(18.4%) 선발하였으며, 정책결정 과정과 생산자 조직에 여성의 참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의 기반이 강화되었다.

※ 농정관련 정부위원회 여성비율(농식품부) : ('20) 42.9%

|표 4-④-10| 연도별 후계 여성농업인 수

(단위 : 명,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후계농업인(전체)	1,861	1,886	1,807	1,815	2,565	2,598	2,797
후계농업인(여성)	336	351	384	355	493	479	514
여성비율	18.1	18.6	21.3	19.6	19.2	18.4	18.4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4-④-11| 농협 여성조합원 및 여성임원 비율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조합원	임원	조합원	임원	조합원	임원	조합원	임원	조합원	임원
여성비율	31.2	4.7	31.7	6.1	32.2	8.3	32.6	8.6	33.0	8.5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현황자료)

아울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시 여성농업인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 여성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 ('17) 52.7 → ('18) 53.4 → ('19) 54.5 → ('20) 56.1

나.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강화

여성농업인의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 12,409명(41.0%)이 참여하여 교육을 수료하였고, 여성농업인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특화교육과정 개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였다.

※ 전체 교육과정의 교육생 중 여성농업인 비율('20) : 41.0%

또한 매년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로 농작업 환경의 과학화와 자동화를 통해 영농을 효율화하고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표 4-④-12|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실적

(단위 : 종)

계	2012년 이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39	104	5	5	7	6	4	4	4	4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년에는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과수용 방제기, 자주식 들깨 탈곡기, 구군 정식기, 균형유지 일륜수레 등 4종을 추가 개발하였고,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수리능력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사업소 20개소를 추가(총 519개소) 설치하였다.

다. 농촌 지역개발 리더 및 결혼이민여성 후계인력 육성

농촌의 지역개발 등 여성농업인의 활동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농촌 지역의 마을리더 교육에 여성들의 참여가 활성화 되었다.

※ 마을리더과정 여성참여 비율('20) : 300 / 906(33.1%)

또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진전된 농촌사회에서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우수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계별 농업교육(1,229명) 및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569명)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우리 농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남편, 시부모 등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농촌정착지원과정(1,277명)을 운영하였다.

|표 4-④-13| 결혼이민여성 대상 주요교육과정 및 참여인원

(단위 : 명)

과 정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1,015	885	822	722	1,229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749	780	747	676	569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1,014	1,013	1,008	1,003	1,227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취약농가 등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년에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농지경작규모 5ha 미만)을 대상으로 영농도우미를 지원(14,094가구)하여 농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농업인 교육과정'에 참석한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앞장섰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및 장애인가구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 지역 경로당 등에 행복나눔이를 지원(18,961가구)하여 농촌의 취약계층이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④-14| 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계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33	9,342	14	7,840	19	1,502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지원액은 국비 지원액임

젊은 층의 보육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54개소)과 이동식 놀이교실(7개소), 농번기 아이돌봄방(23개소) 등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을 지원하였다.

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문화·교육활동 지원, 자녀의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학습 등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전국 4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비를 보조하여 여성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한기에 교양강좌 및 문화 활동, 농촌체험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마. 지자체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강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체계적인 인력육성·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19.6.)하였다. 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였고, 인력육성·보건·성평등 관련 정책추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원정책의 기반을 확대하였고,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활성화 및 농촌지역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 여성농업인 시상, 문화 활동 지원, 리더십 교육 등 여성농업인 단체들을 지원하였다.

※ **전담부서 설치 지자체** : (광역) 충남, 전남, 경남, 제주, (기초) 나주, 영월
전담인력 설치 지자체 : (광역) 강원, (기초) 아산, 부여

※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20) : 123개

바. 여성어업인 현황 및 제도개선

어촌 내 어가인구가 지속적 감소추세에 있고, 어촌 6차 산업화 추진으로 수산물 가공 및 판매, 어촌관광 등 여성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 부각 되고 있다. 이에 어촌사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여성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여성어업인 비중**(%) : ('80) 48.8 → ('90) 49.8 → ('00) 49.5 → ('15) 49.8 → ('18) 50.3 → ('19) 50.9 → ('20) 48.8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16년 10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4차('17~'21)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3개 전략 9개 과제)」을 수립하여 매년 여성어업인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년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19.2)하여 여성배우자도 어업경영체 경영주로 공동등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업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동경영주 제도를 활성화하고 유능한 여성인력 확보를 위해 어업인후계자 선정 시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를 평가기준에 포함시키고, 선정인원의 20%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 여성어업인 지위 향상 및 역량 강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18조 등에 따라 ’08년부터 여성어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년에 총 90백만원 예산을 지원하였다. 어촌사회를 선도할 여성인재 양성 및 어촌리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촌지역 개발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차세대 리더교육, 지역별 특화 교육 등을 통해 여성의 전문성 및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어업인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6년 12월에는 최초의 전국단위 여성어업인 사단법인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설립을 허가하여 여성어업인 스스로 어촌사회의 여성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성의 수산정책 수립 참여 확대 및 여성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18년부터 여성어업인 포럼을 최초 개최하여 여성어업인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어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정례회의화 조항 신설, 여성어업인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운영세칙을 개정하였다.

아.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어촌지역 취약어가 등 사고나 질병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유지하도록 ’15년부터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어가의 일·가정 양립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18년부터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년에 어업도우미는 225백만원, 가사도우미는 7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도 어업도우미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신·출산의 경우, 가사도우미 지원기간을 2배 확대하는 등 여성의 모성권 보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 직업성 질환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어업안전보건센터’를 총 3개소 운영하며 직업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질환·재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부터 직업 질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제 5 절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1. 일자리에서 성차별 관행 개선

여성인력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국가 및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적극적 조치(AA : affirmative actions)는 누적된 불평등을 시정하고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해당기관이 속한 평균치의 70% 미만인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지도하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3.12월)으로 AA 여성고용 기준을 동종 업종 평균 60%에서 70%로 확대하였으며,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조달계약 시 신인도 점수 0.5점 → 1.0점 확대 등),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 등 불이익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14.10월)으로 산업별 고용특성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여성고용 기준의 산정 기초가 되는 업종 분류를 종전 26개에서 30개로 세분화하였다. '14년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14. 1월)으로 AA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개정('14.12월)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 명단 공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였다. 2018년부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확대되었다('18년 300인 이상 기관, '19년 전체 기관 적용). 2019년에는 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모든 대상사업장에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격차 요인을 제출토록 하여 기업 스스로 임금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토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였다.

AA 대상은 2,486개사(공공 340개사, 지방공사·공단 151개사, 민간 1,995개사)이며, 연속 사업장의 2020년 여성 근로자 비율은 38.73%, 관리자 비율은 22.29%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에 비해 각각 7.96%p, 12.07%p 증가했다. 다만, '19년부터 새롭게 대상 사업장으로 추가되어 여성 고용 현황을 제출한 사업장(300인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155개소, 300인 미만 지방공사·공단 107개소)은 기존의 대상 사업장보다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이 현저히 낮아 향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9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회 연속하여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 52개소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표 4-⑤-1| 2020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적용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 비율

여성근로자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	1,000인 이상 사업장	1,000인 미만 사업장	전년 대비	평균	1,000인 이상 사업장	1,000인 미만 사업장	전년 대비
38.73%	38.57%	38.84%	0.32%p	22.29%	22.38%	22.24%	1.16%p

또한, 고용평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모든 조항이 '19.1월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2.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직장 내 성희롱 방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이외의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이르기까지 고용 과정에서 성(性)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 또는 형사 처벌에 이르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성차별 금지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종 예방 및 지도·점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년도에는 총 12,000건의 온·오프라인 모집·채용 광고를 모니터링 하여 성차별 여부를 지도·점검한 결과 총 6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경고 494건, 시정 182건, 사법처리 1건을 조치하였다.

|표 4-⑤-2|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건)

연 도	모니터링 건수	위반 건수	조치건수		
			사법처리	경고	시정
2015년	5,207	454	-	351	103
2016년	8,615	1,052	2	858	192
2017년	7,096	534	-	468	66
2018년	6,615	284	-	212	72
2019년	11,000	561	-	441	120
2020년	12,000	677	1	494	182

또한 여성의 이직률이 높거나 모성보호제도 활용률이 낮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별적 고용관행을 지도·점검한 결과 총 400개소 점검 결과 368개소 1,268건의 법위반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다.

|표 4-⑤-3|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건수)

연도	점검사업장 수	위반사업장 수	위반 건수
2015년	506	394	1,150
2016년	535	436	1,162
2017년	555	492	1,698
2018년	659	555	2,129
2019년	700	683	3,085
2020년	400	368	1,268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18.5월부터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 하고,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비밀누설 금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시행해 오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 근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해자에게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성희롱 피해는 사후적으로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어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여 왔다. 그 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이해가 높아졌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이 낮은 반면 성희롱 발생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풀을 구성하여 성희롱 발생 개연성은 높지만 여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에 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년도에는 439개 사업장에 10,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성희롱 예방 홍보 리플릿,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영세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5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제1절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 165
1.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활성화 165
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176
3.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190

제2절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활동 강화 — 191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191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 신고의무 192
3. 청소년 성보호 예방 활동 195

제3절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199
1.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 199
2. 성매매 예방 및 국민 의식 개선 202
3.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203

제4절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실효성 강화 및 인식제고 — 208
1. 여성·아동 폭력예방 내실화 208
2.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및 교육 211
3.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212

제 1 절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1.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활성화

가.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제도개선 추진

’13년 6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되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와 함께 처벌이 강화됨과 동시에 예방교육 대상 확대 등 예방 측면이 강화되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조력인, 증인지원관 등 형사절차 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는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14년에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실시 및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 공표 의무화 등 예방교육 부실기관에 대한 이행 실효성 강화 수단을 마련하였다. ’16년에는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등 예방조치를 의무화하여 조직 내 성폭력 방지를 강화하였다. 특히 성폭력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함으로써 성폭력 예방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내 자체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화하여 성폭력 예방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17년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비용(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젠더폭력 관련 포괄적·근본적 법 마련을 위한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를 통해 개별법 상 존재하던 여성폭력방지 관련 법령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법체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유형의 젠더폭력을 예방·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하였다.

’18년에는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의 근거와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미투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입법 실현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방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등 예방조치를 의무화하여 성폭력 예방 관련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년에는 다양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여성가족부·주무부처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조직 내 성희롱 방지조치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자 이외에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5-①-1|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법 명	주 요 내 용
형법	• 성폭력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성인 남성 포함)
	• 친고죄 조항 삭제
	• 구강성교 등 유사강간죄 신설
	•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외 '동거하는 친족' 포함
	• 장애인,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
	• 공중화장실 등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 친고죄 조항 삭제
	• 음주·약물로 인한 감경 임의적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확대 ※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전체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
	•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 ※ 2013.6.19.부터 양성, 2013.12.19.부터 수사·재판과정 참여
	• 법원에 증인지원시설, 증인지원관 설치·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민간기업 사용자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 보호시설'을 추가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규정
	•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
	• 시정명령 대상에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상담소, 보호시설 추가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등 예방조치 의무화
	• 성폭력 범죄 신고 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 의무화
	•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대상 확대 및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강화
양성평등 기본법	• 성희롱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 '부실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부실기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 제출하도록 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보고 대상을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주무부처로 확대 등

’97년 가정폭력 예방·처벌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다. 특히 ’11년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긴급 임시 조치권’을 신설하였고, ’12년에는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권’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13년에는 가정폭력 예방 의무교육 대상기관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하여 가정폭력 예방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 출동을 의무화 하고 경찰관의 현장출입·조사권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개입을 강화하였다.

’14년에는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거나 자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할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신변보호 및 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15년에는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피해자의 임시보호 기능을 추가하였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문화 확산을 위해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신설하였다.

’16년에는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등 예방조치를 의무화하여 조직 내 성폭력 방지를 강화하였으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시 이용자의 권익보호 조치에 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

’17년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퇴소 후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18년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연장하였다.

|표 5-①-2| 가정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법 률	제 도	내 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보호명령 등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 등의 보호조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피해자의 법원 출석 및 자녀면접교섭권 행사 등 필요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긴급임시조치권	•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 실시 •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장출입·조사	•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하여 폭력 피해상태,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조사 가능
	예방교육 강화	• 가정폭력 예방 의무대상기관을 기존 각급 학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경찰출동 의무화	•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관 출동 의무화
	현장출입·조사권 강화	• 경찰관의 현장출입·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보호비용 지급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폭력피해자 및 동반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비용(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지원을 강화
	보호기간 연장	•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연장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 지원 강화

'20년에는 그동안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한정되었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 입소를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입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나. 성폭력·가정폭력 대책 추진

정부는 '07년 제주 초등생 성폭력 살인사건, '12년 고정석 사건 등 사회적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사건 발생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과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왔다.

그럼에도 ’13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들이 바라는 여성정책이란’ 설문 조사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국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정과제로 나타났고, 정부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13년 6월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	관련 법률 시행(6. 19.)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6. 21.)
신속한 대응	-	• 112 시스템 스마트화 • 경찰서내에 성폭력 전담수사대 신설(~2015)
예방교육 실질화	•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콘텐츠 개발 • 성인권 교과서 개발(2015) · 보급 • 공무원 임용 · 승진 교육 과정에 여성폭력 관련 교육 의무화(2014 상반기)
재범 방지	• 신상정보 공개범위 확대	• 모바일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구축 (2014 시행)
	•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공유 • 전자발찌 부착대상 확대	• 긴급경보 시 보호관찰관 · 경찰관 동시 출동 •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2016) •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치료보호제도 도입 추진(2014~)
처벌 강화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강화 • 공소시효 배제 확대 • (성인)강간 객체 확대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집행유예 배제 •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 강화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피해자 지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진술조력인/증인지원관 제도 도입 • 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 • 피해자 의료 · 법률 지원 확대 •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통합지원센터 배치
안전한 환경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형량 강화	• 돌봄서비스 연계 • CCTV · 통합관제센터 확대 • 온라인음란물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 • 유해물 감시 강화

|그림 5-①-1|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재범방지 등 예방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들로 구성되었다. '14년에는 상기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1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차례의 이행점검 회의를 통해 대책 이행 현황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군인, 교원,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이 이슈화되고, 가해자에 대한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식 행태가 지적되면서 '15년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 공직사회 성폭력 근절을 집중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공직사회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보다 엄중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16년에는 몰래카메라 이용·촬영, 랜덤채팅앱 이용 성매매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포함한 '1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 회의를 통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표 5-①-3| 2016년 성폭력 근절 추진대책

'16년 성폭력 근절 추진대책	세부 내용
• '4대악 근절 대책' 2016년 추진계획(1.28)	성폭력,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지속 이행점검
•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6.1)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동기없는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환경 개선, 처벌 강화, 재범방지 대책 마련 등에 초점
•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6.22)	안전시설 확보나 성폭력 예방이 미흡할 수 있는 도서벽지에 초점
•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 대책'(6.22)	여성폭력 근절의 근본 해결을 위해 성차별적 의식 개선 등 포함 종합 접근

또한 강남역 살인 사건, 도서벽지 성폭력 사건 등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즉각 대응하여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 대책」등 별도 대책을 추진하였다.

안전시설 확보나 성폭력 예방이 미흡할 수 있는 도서벽지에 초점을 맞춘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도서벽지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교원 등) 대상 스마트 워치 보급, 경찰인력 미배치 도서지역에 비상벨 설치, 안전 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등 안전한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차별적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적 접근이 반영된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 대책」을 통해 방송·언론 심의기준 강화, 성폭력 등 사건 보도 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언론인 세미나 개최 등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과제로 추진하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17년에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인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월)을 수립하였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이행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대책과 관련한 6개 입법과제*에 대한 개정을 완료하였다.

※ 성폭력방지법('18.3.13. 공포, '18.9.14. 시행), 공중위생관리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성폭력처벌법('18.12.18. 공포, '18.12.18. 시행), 전기통신사업법('18.12.24. 공포, '19.6.25. 시행), 정보통신망법('18.12.24. 공포, '19.3.25. 시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19.4.23. 공포, '19.4.23. 시행)

이어 '20년에는 n번방 '텔레그램 사건' 등 다양화·조직화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20.4월)을 마련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추진하였다.

※ 청소년성보호법('20.6.2. 공포·시행), 성폭력처벌법('20.5.19. 공포·시행), 형법('20.5.19. 공포·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6.9. 공포, '20.12.10. 시행), 정보통신망법('20.6.9. 공포, '20.12.10. 시행) 등

또한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 방지 종합 대책」('13.6월)을 발표하였다. '16년에는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및 아동학대 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였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족가치 확산을 위해 '16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임신 출산기·영유아기·중고생·대학생·군 장병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가정의 날(5월 15일)'이 있는 주(週)를 '부모교육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취약가정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8년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가정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보완해야 할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수립·발표('18.11월)하였다. 이 대책에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신속한 격리를 위하여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행범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 출동 경찰관이 즉시 체포하도록 하는 등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등 임시조치 집행력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9년에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피해자 지원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상담소를 확대하고 상담소·보호시설 상담 인력(194명)도 증원하였다.

※ 국비지원 상담소 확대 ('18) 103개소 → ('19) 128개소(↑25개소)) → ('20) 128개소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시 주거지원 및 필요물품 구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신규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주택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기반 확충을 위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9개소를 신설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였다.

'20년에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추가되었고, 응급조치에 현행범인의 체포, 피해자보호명령에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가 추가되는 등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었다.

다.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19년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007년*부터 3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성폭력 피해 및 대응 실태, 법·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19년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7,200명(2016년)에서 10,000명으로 확대하였다.

* 제3차 실태조사(2013년)부터 국가승인통계 승인

특히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를 분리하고, 우리사회의 성폭력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은 9.6%('16년 11.0%)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불법촬영 피해율은 0.5%, 유포 피해율은 0.2%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 위험이 지난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의 변화'(41.1%)를 이유로 꼽았으며, 반면, 성폭력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56.5%)라고 답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는지 조사한 결과(여성 응답자 기준), 강간의 경우 86.8%, 불법촬영 60.6%,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58.1%, 성희롱 47.0%가 고통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11호)로 2004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성역할 인식 및 경험,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 아동폭력 가해 경험, 가족원폭력 피해 경험(만 65세 미만), 노인폭력 피해 경험(만 65세 이상),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등이며 가정폭력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19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16년 실태조사에 비해 표본수를 늘려(6,000명 → 9,000명) 통계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실태조사 결과의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16년도 조사 틀을 유지하되 '16년 이후 가정폭력 양상을 반영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보완하였다.

조사결과, 지난 1년 동안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3%로 2016년 12.1%에 비해 1.8%p 감소하였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8.1%('16년 10.5%), 성적 폭력 3.4%('16년 2.3%), 신체적 폭력 2.1%('16년 3.3%), 경제적 폭력 1.2%('16년 2.4%) 순이었다. 남성이 지난 1년 동안 배우자로

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6.2%로 2016년 8.6%에 비해 2.4%p 감소하였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5.8%('16년 7.7%), 신체적 폭력 0.9%('16년 1.6%), 성적 폭력 0.1%('16년 0.3%)로 조사됐다. 경제적 폭력은 2016년과 동일하게 0.8%로 나타났다.

가족원폭력과 관련하여, 만 65세 미만 국민이 지난 1년간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모나 형제자매, 친척 등 가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4.7%로 조사됐다.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국민이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로부터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과 방임 중 하나라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8%로 2016년 7.3%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아동폭력 조사결과,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지난 1년간 아동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여성 32.0%, 남성 22.7%)로, 2016년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율(전체 27.6%, 여성 32.1%, 남성 22.4%)과 비슷한 수치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1.5%로 '16년(77.6%)에 비해 높아졌다.

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가.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번호 「1366」을 사용하여 365일·24시간 운영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 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전국에 1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 자녀를 365일 24시간 임시보호하기 위해 18개 센터에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다.

|표 5-①-4| 2020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시설현황

(단위 : 개소)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	2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366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기상담, 긴급 피난조치, 전문상담기관·의료·법률·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5-①-5|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스토킹[1]	디지털 성범죄[1]	기타[2]
’15	274,226	159,081	16,239	3,046	2,096	-	-	93,764
’16	266,901	164,937	16,526	2,647	4,138	-	-	78,653
’17	289,032	180,326	21,470	3,405	8,291	-	-	75,540
’18	352,269	189,057	27,683	3,890	13,289	-	-	118,350
’19	353,947	206,885	20,771	4,146	12,935	1,294	3,692	104,224
’20	316,618	180,111	19,795	3,712	10,265	1,175	6,223	95,377

1)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 ’19.1.1.부터 단독 상담유형으로 추출(~’18.12.31. 성폭력 유형에 포함)

2) 기타 : 가족문제, 심리·정서, 기관 정보 단순문의 등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해바라기센터)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3가지 유형이 있다. '04년 6월, 국내 최초로 아동성폭력 전담기구인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연세의료원)가 설치된 후 '05년 8월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학교 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 서울 경찰병원에 설치되었다. '10년에는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 통합된 모델인 해바라기여성·아동 센터를 부산에 최초 설치하였다. '13년에는 원스톱지원센터가 경기 서부(한도병원, 현재 단원병원), 인천 북부(인천성모병원), 부산(부산의료원) 등 3곳에 신규 설치되고, 수원의 경기원스톱지원센터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전환되었다. '14년에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경기북서부(고양 명지병원)에 신규 설치되고, 대전 원스톱지원센터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전환되었다. '15년에는 서울북부(삼육서울병원), 경북서부(김천제일병원)의 2곳에 신규 설치되었고 '16년에는 서울중부(국립중앙의료원) 1개소가 신규 설치되었다. '17년에는 전북서부(원광대병원) 1개소가 신규 개소되었다. '18년에는 강원남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개소가 신규 개소되었고, '19년에는 전남(영광기독병원)1개소가 신규 개소되었다. '20년에는 경기중부(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1개소가 신규 개소되어, '20년 말 기준 40개소의 해바라기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15년부터 다양한 명칭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하였고,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대상의 동행 서비스 지원범위를 '치료' 동행에서 '치료·수사·교육·문화 등 동행'으로 확대하였다.

※ 해바라기아동센터 → 해바라기센터(아동), 원스톱지원센터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해바라기센터(통합)

특히 '15년에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최초로 상담, 의료, 법률구조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5-①-6| 2020년 해바라기센터 운영현황

구 분	해바라기센터(아동형) (7)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16)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7)
서울(6)	연세의료원	경찰병원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삼육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부산(2)		부산의료원	부산대병원
대구(2)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인천(3)	가천대 길병원	인천의료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광주(2)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대전(1)			충남대병원
울산(1)			울산병원
경기(6)	분당차병원	의정부의료원	아주대병원(거점)
		단원병원	명지병원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강원(3)			강원대병원
			강릉동인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2)	건국대 충주병원	청주의료원	
충남(1)		단국대병원	
전북(3)	전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전남(2)		성가를로병원	영광기독병원
경북(3)		안동의료원	포항성모병원
		김천제일병원	
경남(2)		마산의료원	경상대병원
제주(1)			한라병원

'20년 전국 해바라기센터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전체 서비스 지원 건수는 380,141건, 총 센터 이용 피해자 수는 23,806명이다. 1인당 서비스 지원 건수는 15.9건 전년 15.5건 대비 0.9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①-7| 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전체 피해자)

구분 / 연도	피해 유형(명)					지원 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심리	동행 서비스	사회적 지원 등
2016년	26,878	19,134	5,135	151	2,458	313,523	102,880	73,051	57,441	30,858	4,722	44,571
2017년	27,225	19,423	4,817	171	2,814	361,457	114,927	87,213	56,380	34,619	5,119	63,199
2018년	27,450	20,449	4,147	182	2,672	398,690	125,347	100,929	58,227	35,866	5,902	72,419
2019년	26,585	19,456	4,058	197	2,874	413,177	125,459	112,659	62,120	34,787	5,221	72,931
2020년	23,806	17,207	3,782	203	2,614	380,141	116,758	101,193	57,734	32,712	4,557	67,187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표 5-①-8|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이용현황

연도	성별	성폭력피해자 접수(명)				
		합계	13세 미만	19세 미만	19세 이상	미상
2016년	남	1,057	491	212	119	235
	여	17,987	2,749	4,038	8,538	2,662
	모름	90	10	5	0	75
	전체	19,134	3,250	4,255	8,657	2,972
2017년	남	1,117	617	223	118	159
	여	18,152	2,917	4,240	8,913	2,082
	모름	154	15	8	2	129
	전체	19,423	3,549	4,471	9,033	2,370
2018년	남	1,187	569	247	186	185
	여	19,046	2,953	4,309	9,319	2,465
	모름	216	16	11	4	185
	전체	20,449	3,538	4,567	9,509	2,835
2019년	남	1,166	603	234	177	152
	여	18,112	3,191	3,833	8,743	2,345
	모름	178	7	7	6	158
	전체	19,456	3,801	4,074	8,926	2,655
2020년	남	927	438	185	194	110
	여	16,107	2,684	3,405	7,859	2,159
	모름	173	6	5	6	156
	전체	17,207	3,128	3,595	8,059	2,425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표 5-①-9|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지원 실적

연 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실적(건)						
	합 계	상 담	의 료	수사법률	심 리	동행서비스	사회적지원 등
2016년	269,164	83,659	64,441	46,911	30,363	4,458	39,362
2017년	310,687	93,486	77,752	45,435	34,130	4,860	55,024
2018년	350,466	105,585	92,383	48,042	35,178	5,670	63,608
2019년	361,951	105,513	104,746	48,260	34,003	5,055	64,374
2020년	333,691	98,570	95,484	43,275	32,185	4,446	59,731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1) 가정폭력 발생 및 상담 현황

'20년 상반기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의 전체 상담 건수는 181,066건이며, 이 중 가정폭력 상담은 103,763건이다.

|표 5-①-10|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단위 : 개소, 건)

연 도	가정폭력상담소 수	상 담 실 적		
		계	가정폭력	기 타
2013년	196	260,452	125,694	134,758
2014년	201	291,244	143,190	148,054
2015년	203	296,104	164,250	131,854
2016년	205	303,745	178,533	125,212
2017년	208	317,936	171,975	145,961
2018년	203	394,192	219,459	174,733
2019년	208	421,916	238,601	183,315
2020년 상반기	215	181,066	103,763	77,303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①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20년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범죄 건수는 44,194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하였으며, 검거인원은 52,128명이었다.

|표 5-①-11|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단위 : 건, 명)

연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인원
			구속	불구속	
2015년	40,828	47,543	602	46,941	15,714
2016년	45,619	53,511	503	53,008	19,834
2017년	38,583	45,264	384	44,880	15,979
2018년	41,905	43,576	355	43,221	14,689
2019년	50,277	59,472	490	58,982	21,228
2020년	44,194	52,128	335	51,793	19,310

※ 출처 : 경찰청

2) 성폭력 상담 현황

’20년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상담은 258,410건이며 이 중 성폭력 관련 상담은 153,221건이었다. 전년 대비 전체 상담 건수는 6.4%(17,712건) 감소하였으며, 성폭력 상담 건수는 3.3%(4,910건) 증가하였다.

|표 5-①-12|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 현황

(단위 : 개소, 건)

연 도	성폭력상담소 수	상 담 실 적		
		계	성 폭 력	기 타
2015년	159	158,188	98,729	59,459
2016년	167	158,029	101,028	57,001
2017년	167	180,572	111,123	69,449
2018년	170	241,343	154,378	86,965
2019년	168	276,122	148,311	127,811
2020년	169	258,410	153,221	105,189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3)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심신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 외에도 보호시설로의 연계, 의료, 법률구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년말 현재 국비를 지원받는 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가 128개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30개소 포함), 성폭력상담소가 104개소로 총 232개소이다. 또한 '16년부터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18년부터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숙식 제공, 심신 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 자립 및 자활 지원 등을 통해 조속한 회복을 돕고 있으며, 정부 지원 시설은 99개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5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4개소)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자립지원을 위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 치료, 학업 및 자활지원 등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특별지원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설의 퇴소자가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5개소도 운영 중이다.

|표 5-①-13|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상담소	계	183	187	187	202	232	232
	가정폭력	83 (10)	83 (10)	83 (10)	98 (30)	128 (30)	128 (30)
	성폭력	100	104	104	104	104	104
지원 보호시설	계	100	97	96	96	97	99
	가정폭력	70	67	66	65	65	65
	성폭력	30	30	30	31	32	34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개소수임

또한 취약계층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20년 말 현재 장애인 상담소는 27개소(성폭력피해상담소 23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통합상담소 3개소), 장애인 보호시설은 12개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교통비 및 종사자 인건비(상담소 1명, 보호시설 2명)를 추가 지원하는 등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한편 피해자 보호시설 여건상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는 보호 시설에 입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0세 이상 남아 동반 피해자가 쉽게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 시설을 ’11년 8개소 선정하였고, 지속 확충하여 ’20년 현재 총 21개소를 운영하여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08년부터 성폭력·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주거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이는 보호시설 퇴소와 동시에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에 처한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공간의 지원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임대주택 지원으로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하여 피해여성들을 보호·지원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피해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완전한 자립에 이르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일련의 지원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피해여성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으로, 임대주택 1호당 2~3가구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3인 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단독가구로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관리비 및 전기료·수도료 등 개별 고지되는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고, 필요시 2년 간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역별로 구성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 10호당 「자립상담원」 1명을 배치하고 있다. 자립상담원은 일선행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의료와 소송 지원,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등 피해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0년 현재 임대주택 344호에 341가구, 783명('20.6월 기준)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표 5-①-14| 주거지원시설 운영 현황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공급물량	165호	203호	246호	275호	294호	314호	335호	344호

마. 성폭력·가정폭력 재발방지 사업

1)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10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제도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와 「성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 분석 및 매뉴얼 개발 연구」에 이어 '11년에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기존매뉴얼의 취약부분 보완 및 정책입안과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해자의 교정·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8년도까지 여성가족부가 운영했던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19년도부터 범죄 가해자 교정업무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로 이관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19년도에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중 법무부의 보호관찰소 관할 ‘수강명령’ 보호처분,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법무부로 이관되었고, 여성가족부는 법원의 상담위탁 대상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수자 수는 8,746명(성폭력 1,804명, 가정폭력 6,942명)이다.

|표 5-①-15|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7,973	9,466	10,790	11,006	11,486	10,184	8,746
성폭력	1,350	1,297	1,449	1,662	1,465	2,306	1,804
가정폭력	6,623	8,169	9,341	9,344	10,021	7,878	6,942

※ 출처 : 성폭력(법무부 2021 교정통계연보 기준) / 가정폭력(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에서는 ’06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심신 회복 등을 위한 정서·심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 시 동반한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표 5-①-16|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명, 건)

연도별	계		피해자		동반아동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2013년	4,498	12,962	3,057	9,719	1,441	3,243
2014년	4,089	11,814	2,910	9,133	1,179	2,681
2015년	3,808	14,367	2,696	10,970	1,112	3,397
2016년	4,925	17,044	3,468	13,447	1,457	3,597
2017년	4,709	12,799	3,362	9,829	1,347	2,970
2018년	4,126	15,511	2,981	12,412	1,145	3,099
2019년	4,326	14,363	3,160	11,454	1,166	2,909
2020년 상반기	1,324	4,048	1,078	3,242	246	806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표 5-①-17|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현황

(단위 : 명, 건)

연도별	계		피해자		동반아동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2013년	4,498	12,962	3,057	9,719	1,441	3,243
2014년	4,089	11,814	2,910	9,133	1,179	2,681
2015년	3,808	14,367	2,696	10,970	1,112	3,397
2016년	4,925	17,044	3,468	13,447	1,457	3,597
2017년	4,709	12,799	3,362	9,829	1,347	2,970
2018년	4,126	15,511	2,981	12,412	1,145	3,099
2019년	4,326	14,363	3,160	11,454	1,166	2,909
2020년 상반기	1,324	4,048	1,078	3,242	246	806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또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시·군·구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11년부터는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8년부터는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18.1.1. 이후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도 인권 보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시설 입소 중 피해자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 진료비(1인당 50만원 내)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사례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급적정성 검토의견을 첨부(외상치료 비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외)하여 지원토록 하는 등 의료비 지원 절차를 개선하였다.

3)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확대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스스로 방어·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03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가사 사건 등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시작으로 '20년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10년도부터는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으로 구조대상을 확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20년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처리건수는 10,514건이다.

|표 5-①-18|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처리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6,687	6,909	8,758	8,851	8,500	10,110	10,514
성폭력	715	859	705	885	1,134	1,477	1,585
가정폭력	5,972	6,050	8,053	7,966	7,366	8,633	8,929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8.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양상은 기존 강간 등의 성폭력과 다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피해자 지원기관이 필요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의 경우 유포된 불법촬영물이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18년 4월 30일에 개소하여 피해자에게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년에는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등 운영을 강화하였다. '20년까지 삭제지원 282,722건을 포함하여 총 305,996건의 지원을 했다.

|표 5-①-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적

('18.4.30~'20.12.31, 누적건수)

지원건수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 지원
305,996	21,974	282,722	1,148	152

3.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변형된 형태의 다양한 폭력이 사회문제로 가시화됨에 따라 관련 부처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젠더폭력 방지 TF' 운영, 스토킹처벌법 입법 추진을 위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 운영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하여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고, 종합적인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4.20) 및 시행(21.10.21)

또한, 문화·체육계 등 분야별로 확산된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민관협의체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이슈·현안을 논의하고 추진과제에 대해서 점검 및 독려하였으며,

* 교육부 등 15개 중앙부처 및 사회단체, 전문가 18명으로 구성(위원장 여가부장관)되어 '18년 3월부터 8차례 개최('18년 4차례, '19년 4차례 개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25.) 이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민관협의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20.2월)하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교육부 등 15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위원장 여가부장관)되어 '20년 3차례 개최

제 2 절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활동 강화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성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유치원, 학교 등에 고지하는 제도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하여 성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앱을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성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였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국민들이 여름철 피서지, 놀이터나 공원 등 생활 주변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고지로 인해 지역사회 불안감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정책 수요자가 숙지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대응 및 행동요령을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안내를 신상정보 고지정보서를 함께 발송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상담·지원 기관(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SOS국민안심서비스, 여성안전귀가지원서비스 등 성범죄 예방 및 안전 관련 유용한 정보를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년 11월부터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모바일고지)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모바일고지를 우선 발송하여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우편고지함으로써 우편고지에 소요되는 예산도 크게 절감하였다.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 신고의무

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6.6.30. 시행)에 따라 유치원·학교·학원·교습소·청소년보호재활센터·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쉼터·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체육시설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08년 2월부터 성매매피해상담소·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10년 1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년 4월부터 개인과외교습자, '12년 8월부터 의료기관(의료인만 해당)·가정방문 학습지교사, '13년 6월부터 경비업법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청소년활동기획업소·청소년게임제공업소·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등이 추가되었다. '16년 11월에 취업(예정)자가 다수일 경우 일괄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 본인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하였다. 또한, 인터넷으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 ://crims.police.go.kr)을 구축(경찰청)하여 '15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6년에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17년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18.7.17. 시행) 됨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성범죄자는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18년 7월부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와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기관·시설이 추가 되었으며, ’18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되었다.

’19.11월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국제학교가 추가되었다(’20.5.27. 시행).

취업제한기간은 최초 도입 당시에는 5년이었으나 ’08년 2월 4일부터 10년으로 확대되었고, 적용 대상 성범죄는 제도 도입 시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10년 4월 15일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법 시행으로 ’18년 7월부터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 이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있으며, 종전(’18.7.16. 이전)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1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인·허가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21.1.1. 시행)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업무 등 3개 업무 19개 기관의 57개 국가 위임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자치사무로 전환되었다.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와 취업자(또는 사실상 노무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즉시 해임하거나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으로는 유치원, 학교(초·중·고, 대학),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체육단체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	9,972	13,436	15,550	19,021	19,612	19,929	9,003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및 대면 교육 어려움으로 교육 참여자 수 감소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3. 청소년 성보호 예방 활동

가. 성매매 피해청소년 보호 및 지원강화

청소년기의 성매매는 잘못된 성의식을 갖게 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00년 7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시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하지 않고 선도·보호하게 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교육,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중앙센터 1개소와 지역교육센터 10개소를 지정하여 교육(기본교육, 심화교육) 프로그램과 의료·법률·학업·자립·자활 등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사례관리를 통해 성매매로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원활한 복귀를 지원을 하였다.

표 5-②-1| 성매매 피해청소년 기본교육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교육인원	369	377	397	336	319	155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표 5-②-2| 성매매 피해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현황

(단위 : 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담 및 사례관리인원	1,055	1,274	1,285	1,610	1,688	1,962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5.19, 시행 '20.11.20)으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전국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500시간 이내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교육이 병과 되며 보호관찰소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등의 집행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일부 위탁하여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재범방지교육을 통해 성범죄자의 피해자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왜곡된 성인식 등을 바로 잡아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표 5-②-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교육실적	85집단 (918명)	88집단 (852명)	88집단 (969명)	88집단 (1,002명)	88집단 (1,018명)	88집단 (1,039명)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상으로 그 경로가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익명의 불특정 다수 간의 대화가 가능한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청소년 성매매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채팅사이트·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성매매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채팅상담과 온라인상 청소년 성매매 예방 홍보를 실시하여 쉼터 연계 및 교육프로그램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상담인원 : ('17) 3,970명 → ('18) 4,063명 → ('19) 4,284명 → ('20) 3,611명

특히 '20년에는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성매매 권유·유인 정보 954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내부 신고 384건, 수사신고 79건을 실시하여 청소년 성매매 방지에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포상금)에 따라 '12년 3월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발견이 힘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개선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14년 1월에는 신청인이 사건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는 방식에서, 여성가족부가 사건 결과를 확인하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후 포상금 지급 신청 건수는 대폭 증가하며 간소화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 ('12~'13) 포상금 신청 건 수(0건) → ('14~'20) 포상금 신청 건 수(157건)

나.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20년 기준 전국 58개소(16개 시·도)를 운영 중인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전문교육기관(고정형/이동형)으로,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설치 현황(전체) : ('07) 21개소 → ('13) 50개소 → ('14) 54개소 → ('20) 58개소

특히 '11년도부터는 이동형성문화센터를 운영하여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기타 안전인프라가 부족한 고위험 노출지역 중심으로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설치 현황(이동형) : ('11) 1개소 → ('13) 7개소 → ('16) 10개소 → ('20) 11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학부모 대상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의 참여인원은 '20년 1,031천명이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94.5점으로 목표치 92.5점을 상회하는 등 체험형 성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인원** : ('18) 2,297천명 → ('19) 2,475천명 → ('20) 1,031천명*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및 대면 교육 어려움으로 교육 참여자 수 감소

※ **만 족 도** : ('18) 93점 → ('19) 94점 → ('20) 94.5점

또한, '20년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노후화된 교구와 교재의 교체를 지원하였고, 교육 접근성 및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기타 성범죄 노출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제3절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

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분과 운영

정부는 '03년 6월 성매매방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자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듬해 4월에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정례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 설치되어 있던 「성매매방지기획단」을 '04년 11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으로 전환하고, '10년 5월 국무조정실에서 여성부로 이관하였다.

추진점검단 회의는 '04년 12월 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9년 12월 제56차 회의 까지 예방, 보호, 집행 등 3대 분야별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각 부처의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20년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19.12월 시행)을 계기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분과로 개편하여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20년 9월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성매매 분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하고,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패러다임 전환하는 계기를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종합지원 체계’ 구축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방지분과 주요 논의과제 》

- **(법·제도 개선)** 아동·청소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단계에서 처벌 규정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하는 방식의 수사기법 입법화(여가부)
-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 온라인공간 불건전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조치 및 모니터링 강화(방통위)
-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랜덤채팅앱에 본인인증, 신고 기능 등 안전한 채팅을 위한 기술적 조치 유도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하여 청소년 접근을 제한(여가부)
- **(피해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는 ‘성착취’로 개념을 전환하는 등 피해자로서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여가부)
- **(단속·수사 강화)** 성매매 플랫폼 변화에 맞춰 맞춤형 단속·수사(대검찰청, 경찰청)
 - 유흥업소(유흥주점, 마사지업소 등), 리얼돌 체험방 등 관련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및 학교 주변 등 신·변종업소 집중 단속

정부의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다각적인 추진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아 ’05년 모범사례로 선정된 이후 ’20년 말까지 1등급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표 5-③-1| 「2020년 연례 인신매매실태보고서」('20.6월, 美 국무부)

구분	1등급(Tier 1)	2등급(Tier 2)	주의 2등급 (Tier 2 Watch List)	3등급(Tier 3)
주요 국가 (2020)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바레인,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필리핀, 포르투갈, 대만, 영국, 미국 등	일본, 알바니아, 앙골라,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콩고, 코스타리카, 모로코, 모잠비크 네팔, 우루과이 등	아르메니아, 아루바, 부탄, 보스니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루마니아, 세네갈,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간다, 베트남 등	북한,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버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레소토,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남수단 등

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

성매매방지 피해자 지원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성매매방지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5-③-2| 연도별 성매매방지법령 주요개정사항

연 도	개 정 내 용
2010년	•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평가 규정 신설(법) • 지원시설 등 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 규정 신설(법)
2012년	• 유흥종사자를 두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성매매와 관련된 채무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항과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업무 및 연락처 등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법)
2013년	• 사회적 낙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시설 이용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 학교 등에 제출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서식 개정(규칙)
2014년	• 성매매예방교육 사후점검 강화, 성매매추방주간, 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보호비용 지원 등 전면개정(법·시행령·시행규칙)
2015년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2016년	• 상담소등 폐지·폐쇄 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화(법) •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 및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구 게시 의무화(법) •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근거 마련(법) • 상담소등 휴지·폐지 또는 폐쇄 시 해당 시설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권익보호조치 규정, 상담소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상담원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교육과목 조정 및 이수시간 축소(시행규칙)
2017년	•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에 탄력적 대응과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성매매 실태조사 항목의 포괄적 조정(시행규칙)
2018년	•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함(법) • 성매매경고문구를 게시해야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됨을 명시(법)

2. 성매매 예방 및 국민 의식 개선

가. 성매매 예방교육 확대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성매매 관련 법 집행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과 함께 건전한 성의식 형성이 근원적 요소이며, 이를 위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08년도에는 교육실시 의무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하였다.

나. 성매매 방지 국민 의식 개선

'20년 제6회 성매매 추방주간(9.19.~9.25.)을 맞이하여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 참여 이벤트 등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성매매방지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익광고 영상 및 포스터·리플릿 등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였다. 국민들이 성매매방지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국민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일상에서 성매매방지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다.

'20년 성매매추방주간 개요

○ (법적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홍보기간) '20. 9 ~ 10월(2개월간) * 성매매추방주간 : 매년 9.19~25(1주간)

○ (주최/주관)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추진방향) 국민의 인식 제고를 중점으로, 성매매 근절에는 일상에서의 우리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핵심 메시지* 홍보

* 슬로건('20년) :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

○ (주요내용) 정책토론회(9.23), 공익CF제작·송출(20·40초), 대국민캠페인

포스터	리플릿



3.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20년에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시설운영비(사무실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25만원(연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지자체 승인으로 집행가능하고, 청소년지원시설의 치료·회복 프로그램 비율을 상향(60% 이내 → 지자체 승인으로 60% 이상) 조정하였다.

또한, 자활지원센터 참여자지원금을 인상(시간당 6,470원 → 7,030원) 하고,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도 인턴십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성매매 피해자 상담, 긴급구조 활동, 의료·법률지원 및 지원시설에의 연계 기능을 하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30개소가 운영되었고,

’20년 기준 64,177건의 상담을 수행하였다.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숙식, 상담, 의료·법률서비스, 직업교육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40개소가 운영되었다. ’20년 기준 지원시설 및 그룹홈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하며 보호와 자립·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성매매 피해자는 1,011명이었다. 자활 기반을 갖춘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주거를 제공하며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 12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성매매피해자는 ’20년 기준 63명이었다.

|표 5-③-3| 2020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	6	2	2	1	1	1	1	4	1	1	1	1	3	1	3	1

※ 출처 :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표 5-③-4| 2020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방법 및 상담건수

(단위 : 건)

계	내방·방문	음성통화	온라인	기 타
64,177	18,881	31,518	12,822	956

※ 출처 :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표 5-③-5|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반	24	5	3	2	1	1	1	1	2	1	1	1	1	1	1	1	1
청소년	15	5	2	1	-	1	1	-	-	-	-	-	-	1	1	3	-
외국인	1	-	-	-	-	-	-	-	1	-	-	-	-	-	-	-	-
그룹홈	12	3	2	1	-	1	-	-	1	-	-	1	1	-	-	2	-

※ 출처 :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표 5-③-6|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 현황

(단위 : 명)

소 계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그룹홈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011	569	316	63	63

※ 출처 :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전국 12개소의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성매매에서 벗어나 전업을 준비하는 탈성매매 여성이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탈성매매 여성은 사회적·정서적·경제적인 지지 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 신분 노출의 두려움 등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활지원센터에서는 공동작업장 및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탈성매매 여성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보호된 일자리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탈성매매 의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사회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5-③-7| 2020년 자활지원센터 설치현황

(단위 : 개소)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	1	1	1	1	1	1	-	3	-	-	-	1	1	-	-	1

※ 출처: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표 5-③-8| 2020년 자활지원센터 운영실적

(단위 : 명, 건)

지원인원 (실인원)	자활참여자지원사업		적성검사·취업·기술훈련		지원성과	
	참여인원 (연인원)	지원건수	참여인원 (연인원)	지원건수	취업인원	진학인원
922	500	2,900	2,923	27,288	499	34

※ 출처 :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이처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는 성매매 피해자의 구조 및 보호 강화와 함께 효율적인 자활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체계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추진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04년 처음 시작되었다. 구조지원사업은 성매매 피해 상담 후 피해자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있다.

동 지원 사업은 성매매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진학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년에는 의료지원 16,427건, 법률지원 17,327건, 직업훈련 및 진학교육 15,196 등을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지원하였다.

(단위 : 건)

연 도	계	의 료	법 률	직업훈련·진학교육
2016년	53,199	17,624	16,326	19,249*
2017년	52,672	17,271	15,389	20,012
2018년	53,334	17,004	16,625	19,705
2019년	55,558	18,955	17,435	19,168
2020년	48,950	16,427	17,327	15,196

※ '16년도 직업훈련은 지원 회기 수, 진학교육은 지원 개월 수로 기준 통일
※ 출처 : 2020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다.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04년 성매매 여성의 탈업소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된 집결지 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은 자활지원사업을 거쳐 '11년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18년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으로 재편되어 시행되고 있다.

'04년 11월 부산(완월동)과 인천(숭의동)의 2개 집결지에서 시작하여, '20년에는 15개 집결지에서 상담 및 의료·법률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5-③-9| 2020년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현황

(단위 : 개소, '20.12.31.기준)

지 역	집결지명	상담소명	열린터 운영	비 고
계	15개 지역	15개소	10개소	
서울	영등포 역전	다시함께상담센터	○	
	천호동	소냐의 집	○	
	성북구	여성인권센터 보다	○	'18 신규
부산	완월동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해운대 609번지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	
대구	자갈마당	힘내	-	
인천	숭의동	희희낙낙	○	
광주	대인동	언니네	-	
대전	중앙동	느티나무	-	'18 신규
경기	수원 매산로	어깨동무	-	
	성남 중동	경원사회복지회 with us	-	
	파주 대능리 용주골	여성인권센터 쉬고	○	
전북	전주 선미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	
경북	포항 중앙대학	새날	○	
경남	마산 신포동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활동가들은 집결지 여성들의 인권 보호와 이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아웃리치와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년 현장 활동가들은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24,495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1,710건의 의료지원과 1,479건의 법률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1,441건의 직업훈련과정을 지원하였다.

제 4 절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실효성 강화 및 인식제고

1. 여성·아동 폭력예방 내실화

가. 공공기관 폭력예방 의무교육 강화

여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편으로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1999년 「(구)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초로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 순차적으로 의무화 교육으로 도입되었다. 교육 대상 또한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폭력예방교육을 받는 기관은 총 6만 여개 기관에 이른다.

예방교육 대상기관은 교육이수실적을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또한 실적점검 결과 교육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특별교육, 언론공표, 개선계획서 제출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99.8%로 거의 모든 기관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기관장 교육 참여율은 99.8%, 전체 직원 참여율은 89.6%로 폭력예방 의무교육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나.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콘텐츠 개발·보급

’13년 이후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강사에 의한 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아동·여성의 안전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역량 있는 전문강사를 확대 양성하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에 의거,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20년(4,022명) 전문강사 활동 인원이 ’14년(1,910명) 대비 2.1배 이상 증가하였다. 성평등 관점을 바탕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등 폭력예방교육의 전문적 수행이 가능한 통합교육 전문강사도 확대 양성하여 ’20년(715명)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활동 인원이 ’14년(81명) 대비 8.8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밖에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51명(’18~’20년 양성)의 문화예술계 기반 전문강사를 배출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강사의 역량을 검증하고 강화하기 위해 강의에 대한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동료강사 모니터링 등을 실시(254회)하였으며, 보수교육(12회), 전문강사 이슈포럼(1회) 개최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백래시 등 최근 사회 현안을 공유하고 폭력예방교육의 새로운 접근과 선제적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교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대상이 국가 및 지자체 등 기관에 소속된 자(’99)에서 중·고등학교 학생(’04), 원아 및 보육원생(’12)까지 확대됨에 따라, 효과적인 교육 및 교육내실화를 위해 대상별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대상별, 내용별, 생애주기별, 기관별(대학, 산업직군 등), 형태별(교수안, 교재, PPT,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특히, ’20년에는 유아, 초등학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생애주기별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직급·직종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위직·종사자 대상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20년 12월 기준으로 개발, 발굴, 지원된 폭력예방교육 추천콘텐츠는 250종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http://shp.mogef.go.kr)을 통해 공개 제공되고 있다.

다.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한 성교육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13년 초등학교 고학년 성 인권 교재를 개발한데 이어, ’15년에는 유아, 초등저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용 총 5종의 성 인권 교육 교재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성 인권 교재의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연구학교(중학교 2, 고등학교 2)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은 ’12년 4개 시·도(경기, 충남, 전북, 경북)에서 시범 실시된 이후, ’16년부터는 8개 시·도(서울, 부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자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12년 4개 시·도(인천, 대전, 경기, 경남)로 시작하여, ’15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년 기준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참여인원은 14,466명,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참여인원은 2,853명으로,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성 인권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2.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및 교육

가.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및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

’19년 17,556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을 집계한 결과 교육 실시율 99.8%, 직원 참여율 89.6%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고 기관별 고충전담창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의 고충상담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고충상담원 교육을 받고 있다. 고충상담원 교육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상담·조언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등 다양한 역할 수행하는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실천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개발·보급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관점의 전문적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14년)」을 개발·배포, 민간사업장·공공부문·대학교의 세 가지 유형별로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자의 역할을 제시한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매뉴얼」('15년)을 개발하여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 등 1,400여개 기관에 보급하였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협조를 통하여 피해자·업무담당자·관련자·관리자 등의 입장에서 성희롱 신고, 피해자 보호, 사건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17년 1월 보급하였다.

특히 ’18년 ‘미투운동’ 확산으로 그간 은폐되었던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범정부적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가 강력히

요구되었다. 이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국가기관 등에 제작·배포하였다.

다.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직장 내 여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건처리 절차 등을 최초로 규정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하였다.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준비된 것이며,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유형을 제시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2차 피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등 유의사항도 포함되어 기관에서 실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3.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가. 제1회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통합하여 「제1회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였다.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에서는 '사라지는 성폭력, 살아나는 인권존중'을 주제로 하여 여성폭력추방주간 포스터 공유, 퀴즈 이벤트 등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 정책 토론회, 아동·여성폭력방지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하여 여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였다.

나. 가정폭력 예방 홍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안내서」('12년), 「가정폭력 현장사례집 및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지원 안내 리플렛」('13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안내 국정만화」('14년), 「보라데이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15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집」('16년) 등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영상 송출 등 가정폭력 예방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14년 8월부터는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라데이'로 지정하여 '가정폭력 =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각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다. '15년에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신설하였다. '16년에는 제1회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계기로 전국에서 가정폭력 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가정폭력 예방 홍보 영상 송출 및 라디오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가정폭력 방지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17년에는 전국에서 가정폭력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가정폭력 예방 홍보 영상 송출 및 라디오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18년에는 폭언, 경제적 억압 등 정서적 폭력도 가정폭력임을 강조하는 인식개선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가정폭력을 주제로 하는 토크콘서트, 특별전시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19년에는 가정폭력 예방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1366 홍보투어', 가정폭력 예방 길거리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다.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내용을 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카카오 모멘트, 지하철 및

버스 광고판에 송출하였다. 아울러, 라디오 홍보 및 셀럽 영상 캠페인, 가정폭력 유형 및 신고방법에 대한 온라인 이벤트 등을 전개하여 대국민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다.

6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

제1절 결혼이민자 지원 217
1.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217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225
제2절 여성장애인 지원 227
1.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227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28
제3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230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결정 230
2. 생활안정 지원 강화 231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정책 만족도 234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등 수행 235
제4절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240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립 지원 240
2. 한부모 자립 지원 245
3. 한부모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247
4. 북한이탈여성 지원 249
제5절 여성의 건강·안전 지원 강화 253
1.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253
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256

제 1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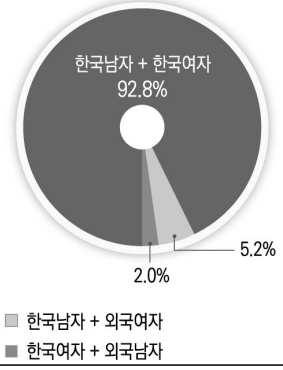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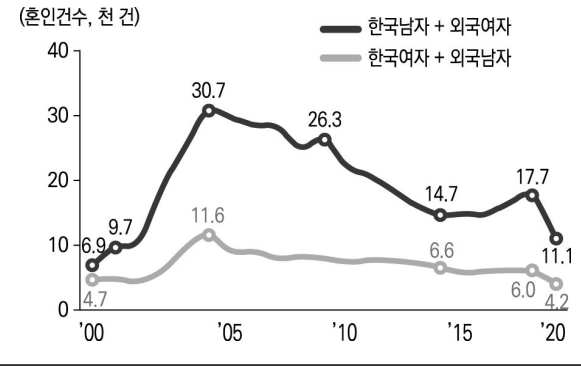
결혼이민자 지원

1.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가. 다문화가족 규모와 전망

다문화가족은 전체 35만 가구(가구원 106만명)로 전체 가구대비 1.7%(가구원 2.1%)를 차지하며, 결혼이민자의 수는 17만명, 귀화자가 18만명 수준이다. 국제결혼 감소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신규유입의 감소로 전체 결혼이민자·귀화자 집단에서 중·장기 정착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 10년 이상 장기 정착비율 : '12년 34% → '15년 48% → '18년 60.6%

총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 2020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추이, 1999~2020
	

※ 출처 : 통계청, 「2020년 혼인·이혼통계」

|그림 6-①-1| 2020년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결혼이민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19년 11월 현재 결혼이민자(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귀화자)는 36만명에 달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결혼 이민자가 79.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신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다.

|표 6-①-1| 2019년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국적	합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미국	기타
합계	359,610	123,967	68,064	80,773	19,834	12,247	8,575	3,905	5,312	8,041	28,892

※ 출처 : 행정안전부, 2020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19. 11월 기준)

나.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사업 현황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확대

’00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 정보 제공,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에 필요한 상담 등의 서비스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기반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 지체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06년 21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당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이후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20년 기준 전국 228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6-①-2| 2020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28	25	14	8	9	5	5	5	1	31	18	12	15	14	22	23	19	2

※ 지방비 운영 센터 7개소 포함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어 정기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및 언어소통 지원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언어문제[4]를 꼽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어 습득은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동시에 가족생활, 사회활동 등 한국생활 전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한국어 교육이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습득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센터 이용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년 한 해 동안 전국 231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533,011명의 결혼이민자 등이 참여했고, 방문 한국어교육은 589명의 '방문 한국어지도사'가 결혼이민자 4,054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밖에 한국생활 초기에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들은 가족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이나 병원진료·공공기관 이용 등을 위해 통·번역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26개소에 280명의 통번역 전담인력이 배정되어 9개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표 6-①-3| 2020년 언어권별 통번역 전문인력 현황

(2020.12.31. 기준, 단위 : 명)

계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네팔어
280	162	63	19	9	12	5	7	1	2

※ 출처 : 2020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보고서

4) 결혼이민자·귀회자의 22.3%는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언어문제를 지목함(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8)

표 6-①-4 통번역 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일상생활	의 료	법 률	교 육	기 타
2016년	397,258	67,617	12,709	23,094	115,409	178,429
2017년	398,071	67,072	13,294	27,205	115,438	175,062
2018년	437,474	77,837	14,844	31,440	129,758	183,595
2019년	473,364	90,210	16,864	32,764	138,708	194,818
2020년	430,976	100,239	13,385	24,859	122,735	169,758

※ 출처 : 2020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이와 함께 ’11년부터 ‘다누리콜센터’를 개설하여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등이 손쉽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2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결혼이민자 가족생활 지원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낯선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나 시부모 등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언어·문화차이로 인한 장애에 직면한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14년부터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맞춤형 지원 및 이혼, 별거 등 위기가족 사례관리를 위해 사례관리사 174명을 배치하여 심층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가족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년에는 전국 22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89,493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와 함께 자녀의 발달 단계별 부모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형태의 부모교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년에는 879명의 방문지도사가 4,046명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학습 및 생활지도, 정서 지원 등을 위한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6,367명에게 제공하였으며 300명의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를 통해 4,078명에게 언어발달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180명의 이중언어코치를 통해 12,374명에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상화작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다. 그 밖에 10년 이상 체류한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정착 장기화에 대응하여 정착 단계별 자립지원 패키지를 '16년 78개소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20년에는 196개소에서 운영하였다. 결혼이민자에게 미래설계, 일·가정·사회 역량 강화 컨설팅, 취업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 및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인재풀을 구축하여 이중언어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 각 분야에 참여·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구성하여 결혼이민자가 직접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자녀 세대, 특히 학령기 자녀 증가에 대응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196개소에서 추진하여 가족관계 개선과 사회성 발달, 진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등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어 습득과 가족관계의 안정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에서는 먼저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이 최근에 온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자조모임과 같은 자발적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조모임은 '20년 10,876명(연 인원)이 참여하여 결혼이민자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5]에 머물러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미취업 상태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 직장문화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취업훈련정보 제공, 일자리 발굴 및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에는 19,433명(연 인원)이 참가하였다. 이밖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와 적극 연계하여 직업훈련 과정 희망자 모집 및 연계,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5)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다누리콜센터 1577-1366) 운영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2 개정('13.8월)에 따라, 기존의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을 '14년 4월에 통합하여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의 번호로 원스톱서비스를 구현하였다.

법정 기관명	운영 기관명	전화명	대표번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다누리콜센터	다누리콜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중앙센터(서울) 1개소를 비롯하여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수원, 전북 전주, 경북 구미 6개소 지역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출신 상담원 89명을 포함한 총 99명이 전화·방문·내방·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연중 무휴), 12개 언어로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의 제공, 폭력피해 및 부부·가족

5)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비율이 32.1%, 200~300만원 미만이 26.1% 차지(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018년)

갈등 상담과 긴급 지원을 수행한다.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의 '20년도 총 상담 건수는 161,466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담 내용은 생활정보, 이혼문제·법률지원, 체류·국적·취업·노동, 부부·가족 갈등 상담, 폭력피해 순이었다.

|표 6-①-5|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연도별 상담실적(상담 방법)

(단위 :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89,887	110,516	116,039	124,401	128,779	132,115	134,849	161,46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68,524							
다누리콜센터	21,363							

※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표 6-①-6| 2020년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상담실적

○ 상담 방법별 현황

(단위 : 건)

계	전 화		방 문	출 장	번역, 사이버, 기타
	양자통화	3자통화			
161,466	121,803	35,032	1,385	379	2,867

※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이용자 출신국별 현황

(단위 : 건)

계	베트남	중국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161,466	48,051	29,756	5,450	11,377	9,295	17,291
우즈베키스탄	**태국**	**라오스**	**네팔**	**일본**	**한국**	**기타**
5,174	10,329	366	654	3,612	4,977	15,134

※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상담 내용별 현황

(1통화로 여러 건 상담 있음. 단위 : 건)

계	이혼문제 법률지원	부부·가족 갈등상담	체류·국적·취업·노동	폭력피해	생활정보	쉼터 안내	기타
178,452	22,100	18,962	17,771	14,261	101,407	3,554	397

※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표 6-①-7|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업 내용	대 상	주요 내용
한국어교육 (집합·방문)	(집합)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방문)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만 18세 이하)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적 한국어교육 실시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집합)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제공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향상교육 ※ 가족교육, 배우자·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다문화이해 교육
부모교육서비스 (방문)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역 등,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자녀의 양육 관련 교육·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자녀생활서비스 (방문)	만 3세~만12세의 다문화가족자녀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12세 초과하여도 포함)	생활지원서비스 제공(독서, 숙제 지도, 정서발달 지원 등)
개인·가족상담·사례관리 (센터 내방·방문·전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자존감 향상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담인력으로 양성하여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만 12세 이하 언어평가 및 언어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12세 초과하여도 포함)	다문화가족 자녀의 체계적인 언어발달 지원을 위하여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실시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일상생활 속에서 이주부모의 언어를 자연스레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인식 개선 교육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코칭 등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근거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07년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4개소의 운영 지원을 시작으로 ’20년 현재 전국 총 28개소(서울·경기 4개소, 전남·경북 3개소, 대구·전북 2개소)를 운영지원 하고 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는 당초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동법률 개정(’20.6.9)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입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쉼터에서는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표 6-①-8|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지원 현황

(단위 : 건)

연도	합계	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지원	수사·법적지원	자립	출국	가해자	동반아동 지원
2016년	49,133	13,429	11,002	8,722	2,693	3,743	47	1,031	8,466
2017년	52,320	14,416	12,794	8,109	2,955	2,728	78	1,072	10,168
2018년	77,652	17,164	22,092	10,777	3,606	7,113	79	1,111	15,710
2019년	69,004	18,803	16,146	3,490	10,572	3,839	77	905	15,172
2020년	62,695	19,140	12,325	7,670	3,405	2,295	49	767	17,044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0년부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14년 1개소, ’17년 1개소를 확대하여 ’20년 현재 총 3개소(서울 2개소, 충남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10년에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서울에 설치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6-①-9|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지원 현황

(단위 : 건)

연 도	계	심리정서·사회적응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사·법적지원	의료지원	자립지원	동반아동지원
2016년	715	201	52	28	189	38	207
2017년	1,303	521	99	51	174	80	378
2018년	2,980	958	860	70	225	137	730
2019년	6,282	1,499	1,269	208	423	194	2,689
2020년	9,712	1,970	1,589	129	459	142	5,423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표 6-①-10|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지원 현황

(단위 : 건)

연 도	합계	자활지원	직업훈련	의료지원	법률지원	동반아동	자립 및 사후관리
2016년	5,208	2,605	305	244	25	1,986	43
2017년	5,595	2,631	343	362	28	1,850	381
2018년	5,835	2,712	347	351	48	1,769	608
2019년	6,221	2,628	350	464	57	1,993	729
2020년	5,812	2,893	346	500	23	1,352	698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개정('18.6.13 시행)으로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 특화 상담소 운영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9년부터 신규로 이주여성 상담소 5개소(인천, 대구, 충북, 전남, 제주)를 설치하고 '20년에 4개소(서울, 강원, 충남, 전북)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6-①-11| 이주여성 상담소 상담실적

(단위 : 건)

연도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 폭력	이혼	부부갈등	성상담	가족문제	중독	기타
2019	5,332	985	170	85	3	7	963	449	5	151	42	2,472
2020	9,613	2,785	567	6	26	214	864	436	-	592	11	4,112

제 2 절

여성장애인 지원

1.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여성장애인의 문제와 욕구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7조를 근거하여 '06년부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제2항을 근거로 '10년부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사업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지원사업', 그리고 '여성장애인 특화교육지원사업'으로 구성하여 지원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을 우선으로 기초학습과 직업교육을 지원하였다. 소관부처가 다른 양 사업은 유사·중복 사업 방지를 위해 '15년에 통합 운영토록 결정되어 '16년부터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양 사업의 통합을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였으며, 역량강화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원 등의 세부 사업들을 통해 여성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장애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회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장애여성들에게 필요 욕구(또는 수요)에 따라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존감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표 6-②-1|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추진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수행기관	42개소	42개소	42개소
이 용 자	100천명	107천명	76천명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정액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절 차	주 체	내 용
신청·접수	**읍·면·동**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		
대상자 자격확인	**읍·면·동**	○ 등록장애정보 확인(행복e음을 통한 확인) ○ 지원대상 여부 확인(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
⇩		
결정 및 지급	**시·군·구**	○ 결정 ○ 개별 계좌 입금(e호조)

|그림 6-②-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절차

’15년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 범위를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하였고, 16년 12월부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항목에 추가하였고 온라인으로도 신청(’17. 11월~)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고, ’19년 11월부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표 6-②-2|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추진실적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인원	1,219	1,235	1,100

제3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결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경우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07년부터 ’11년까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이 없었던 반면, 최근 5년간 신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한 사람은 ’16, ’18년에 1명 등록·결정된 바 있다.

|표 6-③-1| 최근 5년간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결정 현황

(2020.12.31. 기준, 단위 : 명)

계	2014 이전	2016	2017	2018	2019	2020
240	238	1	-	1	-	-

※ 출처 : 여성가족부

2. 생활안정 지원 강화

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현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생활안정지원금(월지원금, 특별지원), 간병인 지원, 건강치료비 및 맞춤형 지원을 하고, 피해자 사망 시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그 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년 12월 31일 기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한 사람은 240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16명이다.

|표 6-③-2|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생존자 현황

(2020.12.31. 기준, 단위 : 명)

계	생 존			사 망
	소 계	국 내	국 외	
240	16	16	-	224

※ 출처 : 여성가족부

나.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확대

현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은 특별지원금과 월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특별지원금은 최초 등록 시 일정액(4천 300만원)을 지급하며, 월 지원금은 최저생계비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월 지원금은 '20년에 147만 4천원으로 '19년 140만 4천원보다 7만원(5.0%)이 증가하였다.

|표 6-③-3| 최근 5년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현황(1인당)

(2020.12.31.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특별지원금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월 지원금	1,260	1,298	1,337	1,404	1,474

※ 출처 : 여성가족부

다.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의 확대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이거나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병인 지원 대상자로 보며,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간병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을 확인한 후 간병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결정된 지급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과 달리 간병비 지급금액은 정부의 재정 사정과 실제 간병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있다.

'20년 간병비 예산은 1인당 단가는 월 151만 9천원으로 '19년 월 136만원보다 15만 9천원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11.7% 확대하였다.

|표 6-③-4| 최근 5년간 간병비 지급 현황(1인당)

(2020.12.31.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간병비	1,055	1,087	1,120	1,360	1,519

※ 출처 : 여성가족부

라. 건강치료 지원 및 맞춤형 지원

건강치료 지원 사업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부담 치료비와 약제비, 의약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년 건강치료 지원 예산은 1인당 연 1,032만원으로 '19년 982만 8천원보다 49만 2천원 확대하였고,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장기요양입원·치료비 지원 예산은 1인당 연 3,9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표 6-③-5| 최근 5년간 건강치료 지원 현황(1인당)

(2020.12.31.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	4,543	4,679	9,360	9,828	10,320

※ 출처 : 여성가족부

건강치료 지원 사업 외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정기 방문, 수시 연락하여 거주 실태 및 건강 상황, 불편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맞추어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년에는 총 예산 6,000만원을 지원하였다.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정책 만족도

가. 실태조사의 실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실태조사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매년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및 주거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년 10월 중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면접하는 방법으로 한다.

’20년 조사 대상자는 총 16명이다. ’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연령은 만 92세로 나타났다.

|표 6-③-6| 최근 5년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연령별 현황

(2020.12.31. 기준, 단위 : 세)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연령(만)	90.2	90.8	91.5	91.5	92

※ 출처 : 「2020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지원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보호자와 당사자가 모두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고 각각의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만족도는 5.0점 만점 중 3.6점으로 4.4점 수준인 ’19년 대비 약 0.8점 감소하였다.

|표 6-③-7| 최근 5년간 여성가족부 지원 전반에 대한 만족도

(2020.12.31. 기준, 단위 : 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만족도	3.8	3.9	4.2	4.4	3.6

※ 출처 : 「2020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 여성가족부

나. 피해자 지원 강화 방향

생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16명밖에 남지 않고 평균 연령이 92세로 고령화되었기에 여성가족부는 보다 세심하게 피해자 개인별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사례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피해자 자택을 직접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횟수를 늘려 기존의 신체적 치료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도 확대·제공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건강과 생활상태 체크,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활안정지원, 간병비, 건강치료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여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등 수행

현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적·세계적 이슈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여성인권·전시(戰時)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 운영 및 2020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수행하였다.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억·기념사업

여성가족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을 계기로 2020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계자, 청소년 및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서 개최하였다.



‘미래를 위한 기억’ 주제영상



청소년의 다짐



대통령 영상메세지

|**그림 6-③-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만화, 애니메이션 등 친근한 소재로 제작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전을 개최(’20.11.11.~’21.6.30.),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현장전시와 4개국어(한, 영, 일, 독) 및 배리어프리 도슨트를 제공하는 온라인VR전시를 통해 코로나19시대 전 국민과 해외 관람객들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사실과 여성인권 문제로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홍보 포스터



전시장 전경



온라인(VR) 전시

|**그림 6-③-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전시

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 및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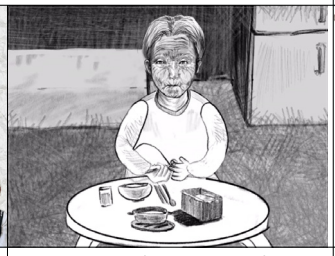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산재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을 통해 국내외 기관 및 개인·단체 소장자료와 관련 출간물을 수집 중에 있다.

또한 일본군·일본정부 문서 등 자료 번역, 학술콜로키움 개최, 연구서 발간('덧칠된 기록에서 찾은 이름들'), 연구소 웹진 운영, 인터렉티브 증언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디지털 아카이브('아카이브 814') 개관 및 자료센터를 구축하여 수집된 자료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여성가족부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이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작품공모전」을 진행한다. 2014년 이래 일곱 번째로 진행된 공모전은 미술·디자인, 음악·영상 2개 분야로 나누어 작품을 접수하고 온라인 시상식('20.11.30~12.9(10일간))을 통해 국무총리상, 사회부총리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등 총 28명에게 시상하였다.

2020년에는 총 893점의 공모작이 접수되었으며, 음악·영상분야 국무총리상은 영상 '방학숙제', 사회부총리상은 영상 '염원, 만약에 전쟁이 없었더라면'가 수상하였다. 미술·디자인분야 국무총리상은 만화 '나비', 사회부총리상은 손그림 '귀향'이 수상하였다. 여성가족부장관상으로는 미술 분야 14점과 음악 분야 10점으로 총 24편이 선정됐다.

음악·영상 부문		미술·디자인 부문	
			
총리상('아웅다웅')	부총리상(강지훈, 강성훈)	총리상(권소혜)	부총리상(박준표)

|**그림 6-③-3**| 2020년 학생·청소년 작품 공모전 수상작 현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에서 다년간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축적한 지역별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단체별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진전시회, 설치물전시 등 해외전시 준비작업, 지역 기림의 날 행사 및 국제 네트워크 회의, 피해자 관련 특별전시 및 온라인 다크투어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피해자 관련 창작판소리	사료전시 및 설명회	국제네트워크 구축 회의

|**그림 6-③-4**| 2020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민간단체 사업 지원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속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시 성폭력,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자와 관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국내,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보편 가치인 여성인권과 평화의 차원에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제 4 절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립 지원

가. 한부모가족 현황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의 변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가족 해체 등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은 매년 10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표 6-④-1| 이혼 건수, 조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혼 건수(천 건)		109.2	107.3	106.0	108.7	110.8	106.5
	증감(천 건)	-6.4	-1.8	-1.3	2.7	2.1	-4.3
	증감률(%)	-5.5	-1.7	-1.2	2.5	2.0	-3.9
조이혼율*		2.1	2.1	2.1	2.1	2.2	2.1
유배우 이혼율**		4.4	4.3	4.4	4.5	4.5	4.4

* 인구 1천 명당 건, ** 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1천 명당 건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표 6-④-2|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 천가구, %)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가구	19,111	19,838	20,168	20,500	20,891
한부모가구	1,608	1,540	1,533	1,539	1,529
비율(%)	8.4	7.8	7.6	7.5	7.3

※ 출처 : 통계청, “2015~2019 인구총조사”

※ 한부모가구 :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조손가구 제외)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219.6만원으로 전체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의 절반 수준이며, 순자산액은 8,559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자산의 1/4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가구 평균소득「2018 가계금융·복지조사」389만원, 전체가구 평균순자산「2018 가계금융·복지조사」3억 4,042만원

이에 여성가족부는 생계부양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주거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표 6-④-3| 2020년 정부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 분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국민기초 수급대상
			소 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계	세대	184,006	39,518	39,191	327	144,488
	인원	457,236	139,137	138,810	327	318,099
모자가족	세대	142,637	29,126	28,855	271	113,511
	인원	356,260	103,625	103,354	271	252,635
부자가족	세대	37,292	9,237	9,209	28	28,055
	인원	92,459	32,798	32,770	28	59,661
조손가족	세대	864	114	113	1	750
	인원	2,004	529	528	1	1,475
청소년모자가족	세대	2,845	856	829	27	1,989
	인원	5,738	1,775	1,748	27	3,963
청소년부자가족	세대	368	185	185	-	183
	인원	775	410	410	-	365

※ 출처 : 행복e음 복지정보통계시스템(DW) 저소득한부모 가족 현황 정형보고자료(2020. 12월말 기준)

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92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20년 3인 가족 기준 2,012,700원)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의 지원 연령과 금액, 대상 등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12년부터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등의 신규 급여를 도입, 추진하여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아동양육비는 ’07년까지 만 6세 미만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08년 만 8세, ’09년 만 10세, ’10년 만 12세, ’17년 만 13세에 이어 ’18년 만 14세 미만, ’19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였다. ’12년까지 8년 간 동결 지원되었던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13년부터 월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였으며 ’15년에는 월 10만원, ’17년 월 12만원, ’18년 월 13만원, ’19년부터는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중·고등학생에게 연 5만원의 학용품비 및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모·부가 양육하는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에게는 월 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6-④-4| 연도별 아동양육비 등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동양육비	70,112	67,367	66,584	74,829	32,259	133,277	135,817
추가아동양육비	2,487	2,451	2,422	2,465	2,145	2,076	1,821
학용품비	107,260	100,700	30,573	23,267	16,755	12,332	10,831
생계비	331	317	276	270	251	145	118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12년부터 국가의 복지급여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을 의무화하였다. 지원기준 연령 초과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 전체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연령초과(만 18세 이상, 취학 시 만 22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가구원을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4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이 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중인 경우 군복무 기간을 아동 연령에 가산하도록 하여 의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경우 채권 압류 등으로부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지급여 수급계좌의 이용 근거를 마련(’14.7.22.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복지기준 고시 개정(’18.12월)을 통해 ’19년부터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며, 지원 단가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다.

아울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지원, 청년 한부모 대상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21.4.21. 시행).

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기간 주거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을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07년 100개소에서 ’20년 124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년에는 개보수 38개소, 기자재 구입 21개소, 임차보증금 지원 3개소, 증개축 2개소에 대하여 시설기능보강을 지원하였다. ’10년에 시설 입소자의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치료 지원을 통해 가족생활의 안정과 조기 자립을 도모하고자 시설 입소자의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을 도입하였으며, ’20년에는 11,373건의 상담 및 치료 등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13년에는 자립준비금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향상으로 인한 퇴소를 유예하여 시설 입소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14년도에 미혼모자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듬해 미혼한부모가족 및 부자가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6년에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을 미혼한부모 및 부자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 확대하였다. ’14년 6개 시·도에 57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20년까지 7년간 지원한 결과, 2020년 말 현재 전국 13개 시·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에 189호로 확대 되었다.

|표 6-④-5| 연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23	122	125	123	124	124
모자가족 복지시설	48	48	48	47	47	47
부자가족 복지시설	4	4	4	4	3	3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59	59	62	61	64	65
일시지원시설	12	11	11	11	10	9

2. 한부모 자립 지원

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 일반적으로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 생계, 가사 부담 외에 학업 중단, 취업훈련 부족 등에 대한 어려움과 미혼으로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 부정적 환경으로 건강한 성장 저해와 빈곤의 대물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년부터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년 3인가구 2,322,346원)인 가구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양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학업단절 방지를 위해 연간 154만원 이내의 검정 고시비 또는 고교생 교육비,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자립 활동 시 월 10만원의 자립 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14.7.22. 시행).

자립촉진수당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만 지원대상이었으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까지 지원대상을 확대('18.1월 시행)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복지기준' 고시 개정('18.12월)을 통해 '19년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20년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21.4.21.시행).

전국 62개소의 미혼모자복지시설을 통해 주거지원 및 출산 등 의료지원, 일정기간 자녀양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가 미혼모·부자 가족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17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동 기관에서는 친자검사 및 의료지원과 분유·기저귀 등 현물지원, 자조모임 운영을 통한 정서적 지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표 6-④-6 | 2020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구분 \ 지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 수당
지원액	월 35만원	연 154만원 이내	실비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비고	-	-	-	학업 또는 취업활동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20년 3,213가구를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과 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수준 강화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15년 1월부터는 미혼모 가구가 생계 지원 등을 받고자 기초수급권자 자격을 신청할 경우, 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 상태인 미혼모 가구에 대하여는 직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를 제외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19년부터는 30세 미만 한부모가 기초수급권자 자격을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며, '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을 30세 이상 한부모까지 확대하였다.

나. 미혼모 등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강화

한부모가족은 사회의 오랜 편견과 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내 약 3만 여명*의 미혼모·부는 편견과 낙인으로, 일상에서 차별과 불편을 겪고 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미혼모·부(30,489명) 중 미혼모 22,065명(72.4%), 미혼부 8,424명(27.6%)
* 한부모가족이 차별을 경험한 비율 16% 내외('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2018년 처음으로 '한부모가족의 날(5. 10.)'을 제정하고, 한부모가 일상에서 겪는 차별·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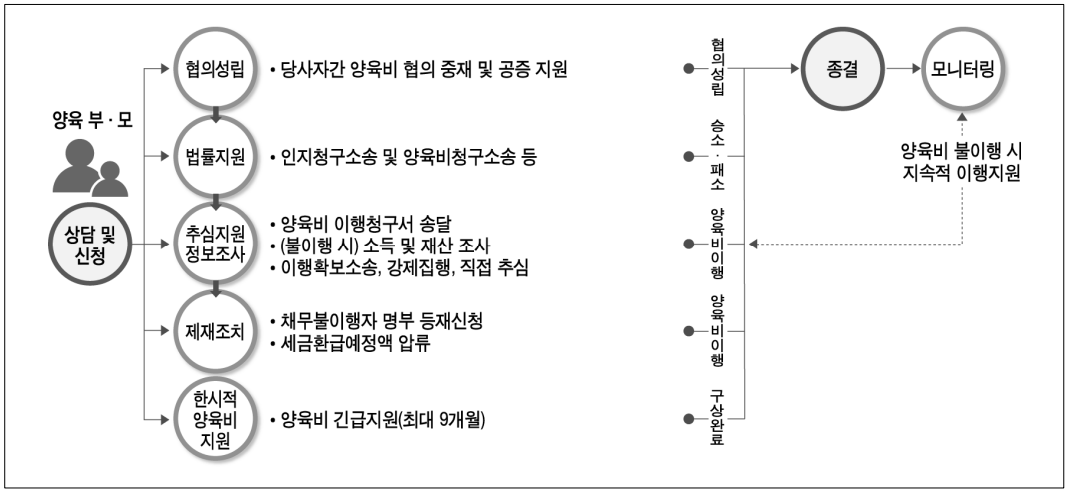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교육부와 협의하여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기관 확대 및 선택권 확대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낙인효과 없이(비밀보장) 충분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 사업담당 공무원 대상 일상 속 차별 및 인식개선 교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한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포용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3. 한부모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75.4%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양육비 채권)가 없었고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는 7.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법정으로 결정된 양육비 채권금액보다 낮아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안정적인 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이 많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 지원 조치 등 한부모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15년 3월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15년 3월 25일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지속적으로 양육비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덜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6-④-1| 양육비이행관리 서비스 지원 체계

|표 6-④-7|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양육비 상담·신청	• 양육비 문제에 대한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 •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한 신청서 접수
양육비 협의	• 당사자간 양육비 협의 중재 • 공정증서 작성 등 지원과 양육비이행지원 절차 안내
소득·재산 조사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소득·재산 파악
소송지원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지원 • 양육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조치
양육비 이행강제	•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채권 추심 지원 신청접수 •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 진행 및 추심
제재 조치 및 모니터링	•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의 세금환급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양육비채권자의 실지급상황 점검(모니터링) 후 미지급 상황 계속시 재추심 연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년 한 해 동안 전화·온라인·방문 등을 통해 3만 3,045건의 상담을 제공했고, 양육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거나 합의를 이끌어낸 2,428건 가운데 965건, 약 173억 원의 양육비가 실제로 이행됐으며, 양육비 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누적 양육비 이행금액 839억 원을 달성했다.

|표 6-④-8| 2020년 양육비 이행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양육비 이행	건수	110	56	128	117	85	122	165	92	50	12	21	7
	금액	1,891	980	1,951	2,019	1,472	1,733	2,681	1,650	1,066	754	523	589

또한 비양육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경우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실시하여 '20년 1년간 한부모가족 148가구, 245명의 자녀들에게 269백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하였다.

한편 자녀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양육비는 꼭 지급하여야 한다는 양육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 인식 개선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및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자체 공무원 및 한부모가족 접점기관 관계자에 직접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4. 북한이탈여성 지원

'99년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여성들의 상당수는 탈북 후 중국, 대만 등 제3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떠돌면서 감금, 폭행, 강제노동,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때 경험한 폭력으로 인해 북한이탈여성들은 신체적 질병 및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한국사회의 정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여성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표 6-④-9| 북한이탈여성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남 성	251	302	188	168	202	72
여 성	1,024	1,116	939	969	845	157
합 계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여성비율	80%	79%	83%	85%	80.7%	68.6%

※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여성가족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매년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성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증진을 위한 내용과 함께 우리 사회의 남녀관계 및 가족관계의 변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09년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한 후 '10년부터는 북한이탈남성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11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하나센터까지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다. '12년부터는 북한이탈청소년 관련 대안학교를 통해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평등 및 교육 감수성이 높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나원·하나센터·청소년학교의 대면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교육 횟수를 줄이고 교육 내실화를 위한 강의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리플릿,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표 6-④-10| 연도별 교육 운영 실적

구 분		계	하나원 본원 (여성)	하나원 분원 (남성)	하나센터 교육	청소년학교
2014년	횟수(회)	104	12	14	75	3
	인원(명)	1,733	1,017	263	293	160
2015년	횟수(회)	101	13	12	72	4
	인원(명)	1,476	896	209	303	68
2016년	횟수(회)	102	12	11	70	9
	인원(명)	1,824	920	191	263	450
2017년	횟수(회)	106	12	14	34	33
	인원(명)	2,025	980	207	233	464
2018년	횟수(회)	104	13	11	58	20
	인원(명)	1,599	809	116	198	476
2019년	횟수(회)	101	14	13	67	7
	인원(명)	1,692	881	157	354	300
2020년	횟수(회)	41	7	10	21	3
	인원(명)	473	190	107	132	44

국내로 입국된 북한이탈여성 중 20~30대 탈북여성들의 대다수가 제3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증언들을 볼 때, 이들의 피해 결과와 트라우마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치유와 상담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여성들이 탈북 이후 경험한

성폭력·가정폭력·인신매매 등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회복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여성 전담센터를 지정하여 심리치유 프로그램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북한이탈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하여 '13년 8개소에서 '14년 2개소가 추가되어 총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결합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문제를 잘 이해하고 상담 할 수 있도록 '12년부터 북한이탈여성 대상으로 체계적인 상담원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동료상담원을 양성하고 있다.

|표 6-④-11| 연도별 동료상담원 양성 교육 현황

연도	교육내용	교육수료인원(명)	교육시간(시간)
2014년	성폭력 동료상담원 교육	60	102
2015년	가정폭력 동료상담원 교육	60	100
2016년	가정폭력·성폭력 동료상담원 교육	73	100
2017년	성폭력 동료상담원 교육	28	100
2018년	가정폭력 동료상담원 교육	28	100
2019년	가정폭력동료상담원교육	24	100
2020년	가정폭력동료상담원교육	25	100

제5절

여성의 건강·안전 지원 강화

1.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가. 50인 미만 사업장 여성근로자 종사 현황

'20년 말 기준 전체사업장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14,111,690명 중 여성이 6,149,543명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여성이 47.8%를 차지하고 있어 50인 이상 사업장 39.2%에 비해 8.6%p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표 6-⑤-1| 사업장 규모별 여성근로자 점유율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근로자수	계	총계	12,655,202	12,958,825	13,432,497	13,864,138	14,111,690
		남	7,411,114 (58.6%)	7,527,620 (58.1%)	7,714,821 (57.4%)	7,874,174 (56.8%)	7,962,147 (56.4%)
		여	5,244,088 (41.4%)	5,431,205 (41.9%)	5,717,676 (42.6%)	5,989,964 (43.2%)	6,149,543 (43.6%)
	50인 미만	소계	6,406,469	6,574,727	6,850,525	7,078,884	7,217,219
		남	3,487,168 (54.4%)	3,543,675 (53.9%)	3,646,136 (53.2%)	3,711,110 (52.4%)	3,769,326 (52.2%)
		여	2,919,301 (45.6%)	3,031,052 (46.1%)	3,204,389 (46.8%)	3,367,774 (47.6%)	3,447,893 (47.8%)
	50인 이상	소계	6,248,733	6,384,098	6,581,972	6,785,254	6,894,471
		남	3,923,946 (62.8%)	3,983,945 (62.4%)	4,068,685 (61.8%)	4,163,064 (61.4%)	4,192,821 (60.8%)
		여	2,324,787 (37.2%)	2,400,153 (37.6%)	2,513,287 (38.2%)	2,622,190 (38.6%)	2,701,650 (39.2%)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각 연도 12월말 기준)

나.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여성근로자의 직업건강서비스 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11년부터 여성근로자 종사비율이 높고 사업장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공 기초직업건강서비스[6]를 제공하여 업무상질병예방 및 건강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전국에 23개소를 위탁운영 중에 있다.

|표 6-⑤-2|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23개소) 설치 현황

연 번	지 역	센터명	운영기관	설치년도
1	경기 시흥시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년
2	인천광역시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연세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	
3	광주광역시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4	대구광역시	대구 근로자건강센터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2012년
5	경남 창원시	경남 근로자건강센터	㈜터직업환경의학센터	
6	서울특별시	서울 근로자건강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년
7	경기 성남시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8	울산광역시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9	경기 부천시	부천 근로자건강센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충남 천안시	충남 근로자건강센터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1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 근로자건강센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2014년
12	경북 구미시	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	구미강동병원	
13	부산광역시	부산 근로자건강센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4	전남 여수시	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녹색병원	
15	대전광역시	대전 근로자건강센터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	

6) 의사, 간호사, 상담심리사 등 전문가를 통한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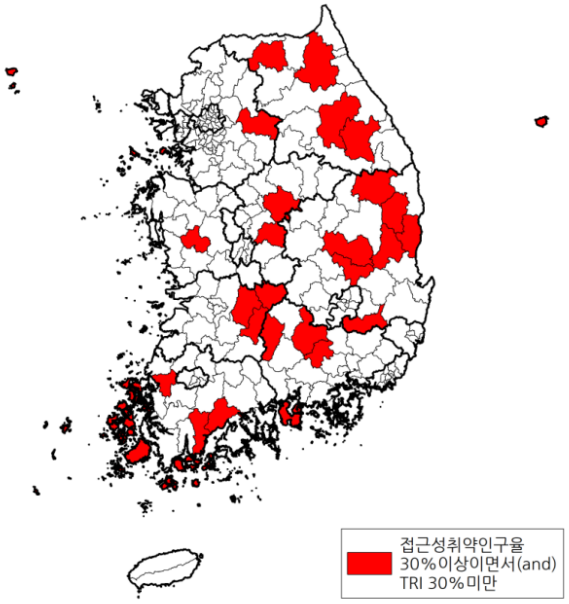
연 번	지 역	센터명	운영기관	설치년도
16	서울특별시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년
17	경북 경산시	경산 근로자건강센터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18	전북 전주시	전주 근로자건강센터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19	강원 원주시	강원 근로자건강센터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20	제주 제주시	제주 근로자건강센터	제주 한라병원	
21	경기 양주시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년
22	충북 청주시	충북 근로자건강센터	(사)대한산업보건협회	2020년
23	전남 영암군	전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또한 '20년 기준으로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한 여성근로자는 전체 이용근로자(66,020명)의 33.1%(21,835명)로 집계되었다.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감정노동, 고객응대, 돌봄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성관련 피해사고로 인한 직업트라우마 예방·관리를 위하여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전국 1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향후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여성 맞춤형 건강상담 컨텐츠 개발 등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가. 분만 취약지역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고자 분만 취약지역의 도출 기준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역 내 분만율(30% 미만)과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접근성(1시간 이내)을 고려하여 총 30개 분만 취약지를 도출하였다.



|그림 6-⑤-1| 2020년 분만취약지 현황

'20년도에는 분만산부인과 3개소 지역에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 지원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06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였고, '12년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근거 법령을 마련하였다. '13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서비스가격을 자율화하고, '15년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도입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높은 현장 수요에 비해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소득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20년에는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예외지원 대상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고, 해산급여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20.7.1.이후 시행).

* ('19) 이용자 136,364명, 제공인력 20,669명, 제공기관 997개소 →
 ('20) 이용자 114,195명, 제공인력 18,406명, 제공기관 1,054개소(코로나19로 이용자 감소)

|표 6-⑤-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조정

구 분	2009~2014년	2015년	2016~2018년	2019년	2020년
기본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외 지원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등 지원 가능	각 시도별 대상 및 소득기준 통일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분만취약지 산모)	기존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추가	기존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추가	기존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추가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들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이용자 실시간 만족도 평가 결과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19.3.5.일부터 공개하도록 하였다.

다. 산후조리원 이용자 권리 보호

’97년부터 자유업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이 감염·안전 사고 발생으로 이에 대한 국가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2006년 「모자보건법」상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산후조리원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전문인력·시설을 갖추어 신고토록 하고, 종사자 건강검진 및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감염(의심)자 발생 시 이송 및 이송보고 등의 준수의무를 두고 있다. ’15년에는 모자보건법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으며,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및 환불기준을 공개토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였다.

산후조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해 ’15년 10월에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16년에는 그 후속조치로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화 하였으며,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주기 단축(2년→1년) 및 건강진단 항목에 잠복결핵을 추가하였다. 이 밖에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토록 하였다. ’18년에는 산후조리실태조사를 통계청과 함께 시행하였다.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년 1월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질병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 등 근무 제한조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를 산후조리업자에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 모자보건법령을 개정·공포하여, ’20년 1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대상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 및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고,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종사자 교육에 활용하였다.

라. 여성(분만,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안전한 분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분만산부인과 40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으로 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9)19개소 → ('20)20개소로 확대 설치 운영하였다.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19)6개소 → ('20)10개소로 확대 지정·운영하고 지역센터별 여성장애인 건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여성장애인단체, 산부인과 학회 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산모교실, 건강클리닉, 당사자 교육(10개 센터, 연 758명), 의료인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19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장애 여성이 궁금해 하는 임신·출산·육아 정보 등을 Q&A 형태로 개발한 임신·출산 매뉴얼 "40주의 우주"를 발간하였으며, 42개국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 등 생애 전반의 건강에 대한 정보와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을 번역·출간하였다. '20년에는 장애 여성 90명의 실제 임신·출산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된 안내서로서 의료인과 보건전문가를 위한 '장애여성의 임신·출산가이드'를 번역·출간하였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청소년기, 갱년기, 노년기) 맞춤형 건강관리 동영상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2020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2021년 8월 인쇄
2021년 8월 발행

발 행 인 : 정 영 애
발 행 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152
FAX / 02-2100-6482

인 쇄 처 : 중앙기획
전화 / 02-736-2866~7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748-10